

# 젠더리뷰

## Gender Review

2020  
가을

### 기획특집

-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 조진경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김현아
-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 교육으로 인권의 길을 연다 | 변신원

### 이슈브리프

- 묻지마 폭행,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 김민정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 강아수
-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방안 | 오상광

제도변화

국가역할

아동학대

성평등

사회적 보호망

남성중심성

SNS

정통방법

# 디지털 성범죄

젠더  
여성혐오

아청법

디지털 성별 격차

여성인권

성 인권

사이버 공간

페미니즘 교육

미디어

성폭력치벌법

성인지 감수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NTENTS

2020 가을호 Vol. 58호

002 편집자의 글

## 기획특집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권강화

---

004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 조진경

017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김현아

026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 교육으로 인권의 길을 연다 | 변신원

## 이슈브리프

---

036 묻지마 폭행,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 김민정

043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 강이수

052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방안 | 오삼광

## 국제리뷰

---

062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 김민정

073 코로나19 최전선의 여성들과 돌봄 위기: 새롭고도 오래된 과제 | 심에리

083 물과 젠더: 개도국 현황과 SDG 6번과 5번의 달성 | 장은하

## 만나고 싶었습니다

---

092 경찰청 이성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국내·외 여성통신

---

108 해외

131 국내

##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

146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147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14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149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젠더리뷰 가을호 '기획특집'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권강화'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 성범죄 근절에 대한 고민을 다루었습니다.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 되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필자는 디지털 시대의 매체를 통한 다양한 현상을 보여 주며, 왜 노출되는가를 묻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십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호망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맺음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서는 인권강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온전한 제도가 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 교육으로 인권의 길을 연다'에서는 젠더폭력의 근본적 대안으로 교육이 갈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슈브리프에서는 최근 논의의 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묻지마 폭행,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응방안'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제리뷰에서는 '스웨덴의 페미니즘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로 외교정책에 대한 페미니즘 접근을 보여주었고, '코로나19 최전선의 여성들과 돌봄위기: 새롭고도 오래된 과제'는 WHO기준 2020년 9월 6일 현재 87만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남녀가 있는가?의 물음에 대하여 전 지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젠더: 개도국 현황과 SDG 6번과 5번의 달성'은 실제적이고, 전략적인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답론을 제시 하였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이성은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면담하여 경찰청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변화에 개입하고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여성통신 해외부문에서는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여성들의 삶,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고, 국내 동향에서는 주요 정부 부처, 위원회, 청에서 결정되거나 모색 중인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가을호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상과 방지, 법·제도적 방안, 교육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두의 고민을 담았고, 또한 디지털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며 나타난 여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 기획특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권강화

-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김현아 | 김현아 변호사 사무소 대표
-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 교육으로 인권의 길을 연다**  
변신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1. 들어가며<sup>1)</sup>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범죄행위를 일컫는데, 필자는 현재 한국사회가 이 범죄의 범위에 대해 매우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비밀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2)</sup> 네이버 지식백과<sup>3)</sup>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유포(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소비(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디지털 그루밍도<sup>4)</sup>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고 정리하고 있어 디

1)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제공,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과 지속 교육, 아동·청소년/인터넷성매매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사이버포래상담사업과 서울위기청소년 교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다.

2) <https://d4u.stop.or.kr/>

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4) 이는 온라인 채팅·모바일 메신저·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들은 우선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오프라인 만남,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후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보다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대표적 기관이나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범죄로 한정시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지원 경험을 통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상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오프라인 세계 즉, 현실세계로 확장되어 실제적인 성폭력, 성매매 행위로까지 발현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한정시킨다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현실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이나 성범죄자 처벌에 있어 분절적인 시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를 바라보게 되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정리된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현실 세계에 확장되어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 행위까지 포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자는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 II. 사례를 통해 본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sup>5)</sup>

### 1.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폭력/성매매

초등학생 아영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채팅 앱에 대해 듣게 되었다. 호기심에 채팅 앱을 내려 깔고 채팅방에 입장하자 수많은 쪽지들이 도착하였다.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에 쪽지들을 열어봤지만 쪽지의 대부분은 용돈제공, 조건만남 요구였다. 단순 대화를 원하는 쪽지에 답장을 보내면서 남성 A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A는 아영이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요구하였고, 별 생각없이 아영이는 아이디를 보내주었다. 그 후 A는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인사를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어났어? 학교 가야지 우리 공주님”, “잠꾸러기~ㅋㅋ”, 오후에는 “학교는 잘 다녀왔어?”, “오늘은 어떻게 보냈어?”라며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A는 아영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재학 중인 학교는 물론 관심사나 취향, 크고 작은 심리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렀고 A는 SNS를 통해 기프티콘과 문화상품권을 보내며 아영이의 환심을 샀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데다 부모님이 안 계셨던 아영이는 “예쁘다”, “보고 싶다”며 애정을 주는 A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그러던 중 A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남자친구가 있냐? 어디까지 가봤냐? 뽀뽀는 해봤냐?” 는 등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자 아영이는 대화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A는 끈질기게 아영이에게 쪽지를 보내고 포기하지 않았다. 대화가 끊어지고 다시 심심해진 아영이는 결국 A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되었다. A의 집요한 성적인 질문에 아영이는 마치 자신이 남자친구가 있고, 그 남자친구와

전송했던 파일 등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성범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2468&cid=43667&categoryId=43667>

5) 사례들은 심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사례들이며 각 사례들은 당사자들에게 활용동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날짜, 지역 등이 가공되거나 삭제하였음을 밝힌다.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대화를 이어갔다. A는 아영이에게 자신과 한번 만나 줄 것을 요청했다. 아영이는 성인 남성과 만나는 것이 겁이나 거절하였지만, A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외롭다”며 매달렸다. 아영이는 “나는 초등학생이다”라고 했지만, A는 “나는 초등학생 따먹는게 로망이다”며 즐기치게 매달리며 즐겼다. A는 자신의 차 안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아영이를 졸라댔고, 호기심과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주겠다’며 A와 만나기로 하였다. 처음 만난 날 A는 차 안에서 아영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아영이에게 애원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시도하고 헤어졌다. 그 후에도 A는 지속적으로 아영이가 좋아하는 딸기우유나 오징어 등을 사주고 무인모델로 데리고 가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용돈을 제공하였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영이는 이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A는 신고가 되었고, 경찰에 잡힌 후 A가 50대 남성으로 2명의 성인 아들이 있음이 밝혀졌다.

## 2. 다양한 유포 · 협박 사례<sup>6)</sup>

### 가. “나 컴퓨터 전공자인데 네가 누군지 알아”

메신저 A에서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진/영상 등을 주고받던 나영이에게 한 남성이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남성은 다짜고짜 나영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나 컴퓨터 전공자야. 너 개인정보를

털어서 이전에 너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음란한 대화나 사진, 영상 같은 거 다 해킹해서 퍼뜨릴 거야. 막고 싶으면 나랑 영상통화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남성의 지속적인 협박에 두려움을 느낀 나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나.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영이는 자주 사용하던 메신저에서 갑작스럽게 모르는 남성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남성은 다영이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상금으로 많은 돈을 보내려 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성기 사진을 보내주시고, 알몸이 보이도록 영상통화를 해주세요.” 다영이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혹해서,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성이 요구한 대로 따랐다. 그러나 남성은 사진과 영상 통화를 받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더해 메신저에 공개되어 있던 다영이의 위치 정보와 개인 정보를 확인하여 계속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다영이는 남성의 협박과 성적인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다. 그러자 남성은 메신저의 여러 계정을 구매하여 다영이를 끈질기게 협박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다영이는 남성의 요구로 찍었던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통화 내용이 퍼뜨려질 것 같다는 불안함과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6) <https://teen-it.kr/for-teen>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women do IT’에서 2020년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깨톡(<https://teen-it.kr/>)을 개발하였다. ‘깨톡’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온라인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착취의 위험성과 예방 안내, 앱 개발자들이 알아야 할 윤리와 앱 내 최소한의 안전·규제조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가이드이다.

#### 다. “오빠는 너를 이해해”

어느 날 어떤 남성이 SNS 친구 추가, 댓글 등을 통해 수영이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 남성은 수영이의 게시물들을 보고 수영이에게 “오빠가 담배 대신 사줄게” 하며 접근했다. 처음에는 수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다가온 남성은, “나도 청소년기에 너 같았다”, “동생 같아서 그래”라는 말을 하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남성은 수영이와 친해지자 점점 태도가 돌변하여,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 “만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만나면서 계속 성관계를 가지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남성의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당사자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신고당할 두려움을 느낀 수영이는 학교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해당 사건은 학교전담경찰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연계되었다.

#### 라. “제 계정이 해킹 당했어요”

어느 날 자영이는 깜짝 놀랐다. 자영이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한 계정이 SNS에 있었던 것이다. 그 계정에서는 신던 스타킹이나 팬티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자영이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성적인 계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본인인데 계정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오히려 계정 사용자는 계정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강요하며, 보내지 않으면 시에는 계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자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마. 일탈계, “내가 도와줄게”

차영이는 SNS에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벗은 몸 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용자가 차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벗은 몸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신고하고 있어. 너 계정도 신고할거야.” 경찰에 신고 당할까봐 두려워진 차영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후 ‘신고 당할 것 같다’라는 게시글을 새로 올렸다. 그러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했던 차영이는 댓글을 남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는 오히려 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한 달 동안 자신의 노예를 하라며 얼굴이 나온 몸 사진을 요구했다. 차영이는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또 자신의 선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라고 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는 변호사가 아니었으며 또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속은 것을 알게 된 차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바. “널 좋아한다면 너의 몸을 보여 줘”

“널 좋아해”, 하영이는 메신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에게 고백을 받았다. 그리고 둘은 사귀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남성은 고백이 받아들여지자마자 바로 ‘섹스’, ‘몸’ 등에 대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나누며 하영이와 직접 만나자고 졸랐다. 하영이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연인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된 하영이는 남성에게 몸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남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영이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너가 보낸 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릴거

야라고 협박하며, A가 만나는 걸 거절할 때마다 더 많은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협박 속에 남성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하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 사. “너 사진 합성할거야”

“나 여자야, 너랑 동갑이고.” 미영이는 랜덤채팅 앱에서 자신과 또래의 여자 친구를 만났다. 나이와 성별이 같아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미영이에게 카톡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미영이는 의심 없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런데 프로필 사진을 보내자마자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해 협박하기 시작했다. “너가 보내 준 사진을 다른 알몸 사진이랑 합성해서 인터넷에 퍼뜨릴거야. 이거 막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할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몸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합성되어 퍼뜨려질 것에 불안해진 미영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 3. 성착취 영상제작 강요의 구체적 형태<sup>7)</sup>

(전략) ..... 김OO은 라인 보이스트록을 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하자 내가 컴퓨터로 영화나 영상 CG처리 하는 일을 하는데 너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이전에 음란한 대화를 한 사람들과 본인과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을 찾아내어 저의 부모님과 주변사람들, 제가 아는 모두들에게 퍼트린다고 했고 인터넷에도 퍼트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겁이나 어쩔 수 없이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김OO은 저에게 옷을 벗으라 하며 핸드폰을 잘 볼 수 있도록 고정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고정할 데를 못 찾고 있자 빨리 안하나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양쪽 가슴에 2개, 성기에 집게 1개를 꽂고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입에 깊게 넣으라고 하며 얼굴을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얼굴은 안되요...”라고 말했지만 계속 강요하고 요도를 찾으라고 했으며, 잘 볼 수 있게 핸드폰 가까이에서 가서 완전히 벌려 성기에 있는 집게를 빼라고 하며 요도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요도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오줌 나오는 데라고 알려주며 계속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지만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간신히 찾았지만 거기에 면봉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아...” 라고 하며 아프다고 표현했지만 계속 강요를 하여 계속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요도에 면봉을 넣는 것을 성공하면 토하는 것은 봐주겠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에 면봉에 피가 묻어 이야기를 하자 “니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걸 왜 나한테 그래?”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였고, 면봉의 솜 부분이 떨어지려고 하자 하나 더 꺼내라고 해서 손이 너무 떨려 면봉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너 지금 던진거냐? 미쳤냐? 똑바로 해라”라고 하여 다시 면봉을 꺼내 계속 시도를 하던 중 항문에도 면봉을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생략)..... 화를 내며 빨리해라 라는 말과 욕을 반복하여 4개까지 넣었고 (생략)..... 볼펜을 (생략)..... 항문에 (생략)..... 저는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동안 김OO

7)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가 직접 써서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은 “xx 너 진짜 혼나봐야 정신차리냐?” “x된다는데 나 같으면 시키는 거 다 하겠다. 살고 싶으면 좋은 말로 할 때 해라”라며 끊임없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계속 시키는 대로 했지만.....(생략) 저는 계속 기침과 헛구역질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넣어, 빨리 넣어. 토 안해? 빨리하라고. xx x아 x되고 싶냐. 주변사람에게 알려겠다”라고 협박 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도 제가 토를 하지 못하자 온갖 욕설과 욕설을 하면서 영상통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특으로 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계를 쫓고 있는 저의 영상의 일부를 캡처 해서 보내며 “이거 올리겠다. 지금 인터넷 업로드 중이다. 잘 지내라. 한 이틀정도는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너 인터넷에서 x나 유명해질 거야”라며 웃으면서 이야기 했고.....(생략)

#### 4. 사진유포협박을 통한 성매매알선 강요

17살인 가영이는 학업 스트레스에 지쳐 채팅 앱을 통해 익명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한 남성A가 가영이에게 이상한 사진을 보냈다. 그것이 무엇인냐며 시작된 대화는 라인으로 옮겨 계속되었다. 가영이는 사진 속의 이상한 도구가 성적 행위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그 남성A와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하나하나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남성A와 밤새도록 대화를 하던 중, 남성A는 갑자기 너는 성적으로 무슨 성향이냐고 물었다. 당황한 가영이는 ‘나는 아직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대답했다. 남성A는 ‘요즘은 초등학교도 자기의 성향을 다 안다’며 가영이의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 보내기를 거절한 가영이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너와 대화를 나누는 나를 못믿는 거냐. 나는 이상한 사람

이 아니다. 얼굴만 빼고 보내면 되지 않느냐. 내 사진도 보낼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너도 내 사진을 갖고 있으니 괜찮지 않겠냐. 너무나 너를 보고싶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차단을 하겠다는 등 갖은 감언이설로 사진보낼 것을 강권하였다. 가영이는 대화가 중단될 것이 아쉽기도 하고, 긴 시간동안 친절하게 대화를 이끌어 준 남성A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얼굴만 보내지 않으면 별일 없지 않을까 싶어 자신의 몸사진을 보내주었다. 남성A는 그 순간부터 돌변하였다. 사진을 라인에 있는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부모나 학교에 알릴테니 나를 한번만 만나달라, 우리가 만나면 보는 앞에서 지워주겠다고 협박하여 1회 남성A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거기서 성폭행 당하였다. 그러나 가영이는 신고할 수 없었고, 남성A는 다시 지속적으로 사진을 가지고 ‘노예주인’ 관계로 만날 것을 강요하였다. 그 이후에도 사진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영이는 남성A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때마다 성폭행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주 늦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딸에게 엄마의 야단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그때마다 남성A는 가영이를 위로해주었고 가출을 권유하였다. 결국 가영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성공해서 엄마를 만나라는 유혹에 넘어가 재워줄 수 있다는 남성A의 말을 믿고 가출하였다. 가출한 후 가영이는 남성A의 집에 철저하게 고립, 감금되어 지속적인 성매수알선 강요 및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남성A는 생활비와 월세를 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강요하였고, 미성년자인 가영이가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자신의 통장에 성매수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가영이는 성매매 상황에서 성매수 남성B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신고할 수 없었던 가영이가 도움을 요청한 알선

자 남성A와 성매수 남성B 간의 다툼으로 경찰에 신고되면서 가영이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현장에 출두한 경찰은 가영이와 남성A가 짜고 성매수 남성B에게 '조건사기'를 쳤다고 의심, 경찰서로 이동 중 가영이는 남성A와 분리되지 못했다. 이에 남성A는 가영이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성매매는 가영이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협박하였다.

### Ⅲ. 십대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들

#### 1.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들<sup>8)</sup>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는 십대 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채팅 사이트,

〈표 1〉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매체

항목		내용
사이트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
	포털사이트	웹전단 배포
		지식인
		네이버·다음 쪽지, 메일, 댓글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	양톡 (채팅형 쪽지 발송)	
	영톡 (채팅형 쪽지 발송)	
	82톡 (채팅형 쪽지 발송)	
	양채팅 (채팅형 쪽지 발송)	
	일탈톡 (채팅형 쪽지 발송)	
	양팅 (채팅형 쪽지 발송)	
	낯선사람 랜덤채팅 (채팅형 쪽지 발송)	
	채팅몬 (채팅형 쪽지 발송)	
	헤이팅 (채팅형 쪽지 발송)	
	심팅 (채팅형 쪽지 발송)	
	꿀톡 (채팅형 쪽지 발송)	
	원나잇톡 (채팅형 쪽지 발송)	
	양챗 (채팅형 쪽지 발송)	
	다톡 (채팅형 쪽지 발송)	
	아자르 (영상형 홍보멘트 발송)	
	국민어장 (채팅형 쪽지 발송)	
	핑톡 (채팅형 쪽지 발송)	
	속삭임 (채팅형 쪽지 발송)	
	기타 (채팅형 홍보멘트 발송)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팅형 쪽지 발송)	
	숨사탕, 모씨, 밤비, 1km 즐톡톡 등 (게시판형 웹전단 게시)	
신생 (국민어장, 틴더, 채팅고, 블라챗, 페잉, 위커, 익명채팅(랜챗/랜덤채팅), 앙콩, 올톡		

8)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활동 내용

포털, SNS, 어플리케이션, 인터넷방송 등에서 성착취의 위험성과 사건 발생시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웹 전단, 채팅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조기 개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2. 신고 현황<sup>9)</sup>

침해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에서는 각종 SNS·채팅 어플리케이션·인터넷방송·사이트 등에서 성착취 의심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경찰청 등에 신고하고 있다.

### 가. 신고

구분	총계	내부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경찰청
건	762	241	447	74

### 나. 내부신고 세부내용

구분	총계	사이트			
		세이클럽	네이버	다음	카톡 오픈채팅
건	241	3	-	-	89

사이트			인터넷방송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21	-	44	57	27

\* 어플리케이션 내부신고 시 이용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내부신고를 진행함(국민, 원, 속, m, m)

### 다. 내부신고 처리결과

구분	총계	이용제한			
		세이클럽	다음	인터넷방송	트위터
건	241	-	-	-	1

계정 삭제			게시글 삭제				
세이클럽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다음	인스타그램	카톡 오픈채팅	인터넷방송
1	1	6	-	-	-	2	4

해당없음	내용확인 불가	미상*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세이클럽	네이버	다음
-	-	2	-	-

미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톡 오픈채팅	인터넷방송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20	-	87	53	27	37

\* 각 사이트의 신고 처리 기준이 다르고, 신고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세이클럽의 경우 모니터링한 불량 이용자를 메일로 직접 신고 후 처리결과를 안내받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는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계정 삭제 처리가 된 경우에만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네이버, 다음, 인터넷방송(유튜브, 아○카TV 등), 어플리케이션은 신고 처리결과를 따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 결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세부내용

구분	총계	사이트 (인터넷방송 포함)	어플리케이션
건	447	280	167

9)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침해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팀 활동 내용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신고 처리결과  
(인터넷방송 포함)<sup>10)</sup>

구분	총계	접속 차단		각하		
		국외	국내	미유통	중복 신고	요건 불비
건	280	82	1	41	44	3

처리 불가	해당 없음	내용 확인 불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자율심의 결정	처리중
-	17	64	2	1	25

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 결과

구분	총계	각하			이용자 이용 해지
		미유통	중복신고	요건불비	
건	167	-	11	2	71

이용자 이용 정지	내용 확인 불가	해당 없음	특정 검색 결과 확인 불가	처리중
-	-	81	-	2

사. 수사기관에 신고 현황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9년 4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챗'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 성범죄자를 고발하였다.

①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챗에서 발견한 영상판매 문구

주인님구해요 24세 여자 8km 2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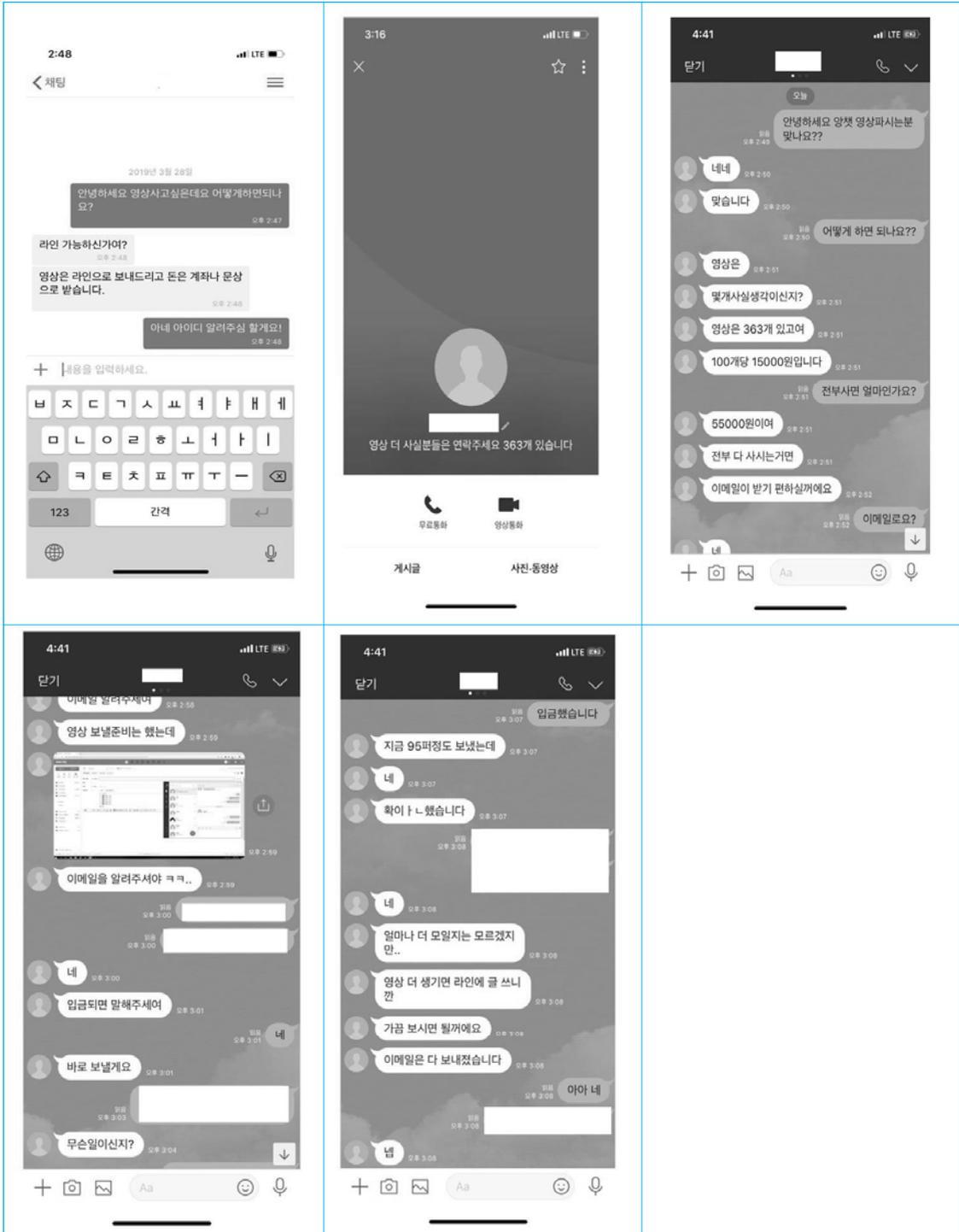
남자들끼리 밍고 중딩 고딩들꺼 영상 363개 100개당 1.5(만오천원) 전부 다 해서는 5.5(오만오천원)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주시면서 바로 라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x 다른건 다 가능 쿨거래 환영

메로 21세 여자 8km 2분 전

남자들끼리 밍고 중딩 고딩들꺼 영상 363개 100개당 1.5(만오천원) 전부 다 해서는 5.5(오만오천원)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주시면서 바로 라디(라인아이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x 다른건 다 가능 쿨거래 환영

10) 1) 접속차단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ISP) 등에게 국내 이용자가 해당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 요청  
 2) 각하 : 심의불가  
 (1) 미유통 :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진 삭제 및 폐쇄되는 등 현재 유통되지 않는 상태이거나, 신고접수 후 업데이트 등으로 URL이 변경되어 추적이 어려움.  
 (2) 중복신고 : 동일한 정보에 대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신고접수가 중복되어 각하 처리됨.  
 (3) 요건불비 :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  
 3) 이용자 이용해지 : 해당 어플리케이션 불량이용자의 이용을 해지 함(휴대폰 단말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재가입 및 재접속 불가능).  
 4) 이용자 이용정지 : 해당 어플리케이션 불량이용자의 이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함.  
 5) 해당없음 : 신고내용이 성매매 정황에 해당되지 않음.  
 6) 처리불가 : 해외서버로 인한 기술력 부족으로 처리 불가능함.  
 7) 내용확인불가 : 신고접수 확인시점에서 신고대상 정보가 이미 삭제되었거나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여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8) 특정 검색결과 확인 불가 : 검색결과 페이지의 여러 게시물 중에서 신고하려는 게시물이 특정되지 않아 민원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9)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판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는 청소년 유해표시, 광고선전 제한 등의 청소년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됨.  
 10) 자율심의결정: 일반 음란물이 아닌 피해자가 특정되는 디지털성범죄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조치함.

## ② 구입 과정 대화



- ③ 아첨법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제작과정부터 수사할 것을 요청함.
- ④ 구속기소 되었고, 2020년 3월말 1심에서 징역 1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범죄수익금 984만여원 추징 선고됨.
- ⑤ 2020년 2월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7월 까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76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닉네임, 주소 등 삭제, 아이디 변형).

#### IV. 십대여성들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필자는 이 글에서 십대여성들이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선 십대여성들이 겪었던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와 유입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십대여성들을 유인하는 각종 디지털 매체의 종류와 성범죄 유인 정황이 보이는 다양한 디지털

〈표 2〉 수사기관 신고 내용 사례

번호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	카톡	내용
1	e3l6tzo mj3				"트위터에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 유포,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7	Kt□p2	qw□01	qw△14 0		트위터, 텔레그램, 라인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및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텔레그램 방 접속 시 불법촬영 유출본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음.
11	alal□	no□un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프로필을 작성하였으며,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유포, 소지, 판매하는 텔레그램 방의 입장권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텔레그램 n번방 입장료 받고 팔던 사람임.
20	□qlq1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중이며, 트위터에서 홍보와 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 유포,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문의는 트위터 디엠이나 라인으로 보내 달라고 함.
33	ujWc□m G□7W			06△a	"06 알몸 사진, 동영상.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 영상대충(160장) 5천원" 트위터, 카톡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게시 및 영리목적으로 판매함.
46	gh0□89 28	q□17			트위터,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글을 작성함. 중고딩 영상 팜/샘플 인증 가능!/ 이벤트 기간만 가능함!!
53				오픈 채팅	1번째 □ 젖은 전복방 2번째 마르□ 샘플 3번째 □ 영상저장소 5번째 리미□디션 7번째 비발□계 중 볼 1약장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 소지, 유통하며 불법 토트, 사행성 도박 등에 가입 행위를 조장함. 현재까지 7번째 방을 옮겼으며, 개인정보가 필수적인 사행성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방의 주소를 주지 않겠다고 함.

매체에 대한 신고현황과 처리 결과,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디지털 매체 안에서의 성착취 영상 판매에 대해 알렸다. 많은 독자들은 이러한 필자의 자료배치를 보면서 벌써 필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다.”

필자가 현장에서 본 것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십대여성들이 그 세대에 맞는 성장과정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이유이다. 십대여성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디지털 세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있다. 현재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배제될 것이다. 공부를 잘해야 미래가 좋게 보장된다는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미래를 위해 저당잡힌 답답한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 숨도 쉴 수 없이 촘촘하게 짜여진 정해진 일정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알고 싶고, 겪고 싶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 눈도 맞추지 않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부모님들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친밀감과 소통을 그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얻고 싶어 한다. 어쩌면 모두 경쟁자일 뿐인 현실에 존재하는 친구들보다 이해관계로 전혀 엮이지 않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친절한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고 싶다. 현실에선 찌질한 루저같은 뿐이지만, 익명으로 아무나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그들은 누구도 무엇도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의 변화를 보면서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그렇게 나쁜 행위라는 것인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수많은 정보들은 성공한 여성배우나 여성 모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몸을 가졌는지 여성들에게 그 몸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무언가 기성세대에게는 용납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파격적인 행동은 결국 성범죄의 표적이 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십대여성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생각하지 말고, 느끼려하지 말고, 사이버 상에서 소통하지 말고, 너무 일찍 사랑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디지털 매체는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계들은 사용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고, 친구도 가정형편이 좋은 아이로 사귀게 하고 성인이 되어 새로운 보호자가 생길 때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부모가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오늘 현재 한국사회에서 십대여성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말이고, 탈시대적, 몰역사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일 뿐이다.

필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십대여성들은 건강하게 당당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놀랍도록 용감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었다.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의 주역으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십대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필자가 제안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십대여성과 십대남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디지털 세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세계에 맞는 새로운 규범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필자는 “십대여성은 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하면서 “무엇을 듣고 싶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십대여성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우리 십대여성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성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디지털 매체가 십대 여성들을 소위 ‘정상성’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디지털 세계가 현실세계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정해진 인류의 미래에서 자라나는 세대인 십대여성들의 디지털 세계로의 참여는 막아서도 막을 수도 없는 너무나 지당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혐오와 차별로 도배되어 있고, 성평등하지 않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나마 여성과 아동·청소년

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현실이 일어나면 안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질문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질문은 이미 프레임이다. 이 질문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십대 여성들을 그들의 세계에서 도태시키고 몰역사적으로 자라도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질문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십대(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보호망은 무엇인가?”이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김현아 김현아 변호사 사무소 대표

## I. 들어가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공백으로 인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들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개선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 II. 주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현황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 변경(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기존 법에서 사용되었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마침내

변경되었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과 당위성의 반영은 법률조항에도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형량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제11조).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규제하기 위해 광고·소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정형 상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을 통해 향후 국민들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처벌 강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벌금형이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이하로 상향되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정형 부분이 시정되었다.

#### 나.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강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 5.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약한 처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반영되어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 다. 소지죄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 5. 19.>

불법촬영물 유포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포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를 소지, 시청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는데, 2020. 5. 19. 개정으로 촬영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 라.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 처벌 신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불법 '촬영'물과는 달리 '편집'등의 경우는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정통망법상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어 왔다. 그러나 가해자가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면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제재 조치를 할 수 없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합성, 편집, 가공, 특히 딥페이크 피해도 확산되면서 성폭력처벌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이러한 편집물·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성폭력처벌법에 마련되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다.

#### 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신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은 촬영물을 이용한 가해자의 각종 협박에 시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죄의 가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기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만 처벌하고 있어서, 이와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신설되어 협박·강요에 대해서도 향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본조신설 2020. 5. 19.]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 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보다 원활한 환수에 기여하려는 것이다.<sup>1)</sup>

#### 4. 전기통신사업법

##### 가. 유통방지조치의무,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조항 신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 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 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인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 제청심판 사건에서, 동 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적불이익보다 크며 이러한 사적불이익에 대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비밀유지의무등을 부과하는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대처할 문제라고 보아, 동 아청법 조항에 의해 통신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109&lsId=&efYd=2020062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 나. 제재조치 신설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3의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5.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①항에서 3의4, 3

의5를 신설하여 위반시 사업의 폐업, 등록 취소,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계속 개선 보완하여야만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짓으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보의 거짓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법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법과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제5조의2)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 III. 개선 과제

#### 1. ‘성적 수치심’ 표현 삭제

그동안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의 삭제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이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폭력 처벌과 관련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수치심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로 인해 느끼는 마음’이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정서’를 의미한다. 이것이 수치심의 정의라면 이는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조항이 과거에 형법의 ‘정조의 죄’ 장에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성폭력 범죄가 여전히 순결과 정조의 문제로 여겨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입법 개선 방안으로,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의

해석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은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가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sup>2)</sup>

## 2. 온라인 그루밍 처벌 도입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하여 목적을 불문하고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추후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성 범죄를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성적인 행동 등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럴 고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고 이에 ‘길들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의도한 대로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를 과연 완전한 동의 또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sup>3)</sup>. 성인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는 ‘그루밍’은 성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그루밍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 기소, 그리고 엄격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즉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성적 목적의 유인행

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었다.<sup>4)</sup> 향후 국회에서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3. 삭제 명령 명문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가 촬영물 등을 무한 복사, 소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삭제 여부에 대해 영구적인 불안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촬영물 등의 사후 처리가 피해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치의무가 가해자에게 부과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에서 압수물 폐기는 「형사소송법」 제 130조에 따라 가능하나, 이와 더불어 판결에서 직접 가해자에게 삭제명령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가해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률에 삭제명령을 규정함으로써 그 후의 가해자의 재유포 행위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처벌도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부수처분으로 삭제명령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김현아(2017),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73-75 참조.

3) 윤정숙, 이태현, 김현숙(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9면

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0.6.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OXOX6Q1V1X1HOB1ZZF2X8Q7K6P0](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OXOX6Q1V1X1HOB1ZZF2X8Q7K6P0)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촬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가안)’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sup>5)</sup>.

#### 4. 촬영물 ‘이용’ 범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는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도입하였다. 생각건대 N번방 사건등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대표적인 가해행태가 협박, 강요행위였기 때문에 본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여겨지고, 본 조항의 도입 의미는 매우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강요외에도 사기, 공갈 등의 다양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러한 범죄 행위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과연 협박, 강요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마련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들에 새로운 처벌규정의 도입이나 전반적인 법정형이 상향되는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

요하다. 그 중 하나가 양형기준의 마련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중으로, 2020. 9. 19. 양형기준안을 발표한 후 차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청회등을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양형 기준표의 마련이 절실하고, 특히 피해가 무한 확대되고 그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된 엄중한 양형기준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IV. 나가며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들이 제, 개정되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개입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점차 진일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도 디지털 성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보듯이 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불법 영상물을 촬영,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함께 제작, 유포까지 하고 있고 오프라인의 범죄로도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관련 법과 제도들은 가해자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김현아외(2018),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90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 교육으로 인권의 길을 연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1. 들어가기

2018년 2월 청와대 앞에는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페미니즘 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등 여성단체가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과정에 성평등 내용 강화·교과서의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학교의 제도의 관행을 성평등하게 개선 ▲온·오프라인에서 젠더폭력 예방 ▲지역 교육청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마련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성 세워나가기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과 접촉하는 직군의 성평등 교육 필수 이수 ▲인권과 성평등 등이 ‘교육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1)</sup>

미투 운동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교육으로 본 것이다. 21만 3,219명이 참여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하여 답변에 나선 청와대는 “페미니즘 교육은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 인권 교육을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sup>2)</sup>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 제시와 국가수준의 답변의 실행에 대한 평가는 향후 과제로 두고 이런 청원이 이루어진 배경과 교육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2020년에도 역시 젠더이슈는 뜨거웠다. 이번에는 디지털 공간이었다. 당해년 초반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으로 속칭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역시 디지털을 매개로 이루어진 손정우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 그랬다. N번방 사건 등

1) 박정훈 기자(2018.2.27.). “페미니즘 교육 받았다면 ‘미투 운동’ 할 일 없어.” 오마이 뉴스

2) 청와대(2018.1.6.).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폭력은 최근 갑자기 발생한 신종 범죄가 아니므로 터져야 할 것이 터진 것이다.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진 ‘빨간 마후라 사건’이나 1999년, 2000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동영상 유출 사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00만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렸던 소라넷 사건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사건이었고 심지어 성차별적 문화가 극심했던 당시 사회에서 실존적 불안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거나 연예인 활동을 접어야 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여성의 성이 돈으로 교환되는 그리하여 거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현장을 목격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사건으로 생각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한계, 잘못된 사회적 대응이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 확장의 모태가 된 것이다.

휴대용 PC, 휴대전화 사용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악플이나 사이버 명예훼손 정도였던 디지털 폭력은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 인터넷 성매매, 불법 촬영물 유포 등으로 옮겨갔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위협, 학대적 언어, 폄하적 이미지의 95%가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상 폭력을 가하기 적합한 대상이 여성임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및 범죄는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여성의 낮은 지위,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유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여성 게이머는 보조

적 역할 수행 요구, 욕설, 모욕 등을 경험한다.<sup>3)</sup> 게임상 여성 캐릭터는 나이도 파워도 낮았으며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표현되었다. 전략 게임 속에서 능력이 낮은 캐릭터에게 감정이입 될 리 없으므로 단지 시각적으로 대상화된다. 당연한 결과로 성적으로 묘사된 여성캐릭터를 이용해 게임할 경우 여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저하된다.<sup>4)</sup>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과 성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 2. 왜 교육이 문제인가

모든 게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보면 2018년의 미투 사건 이후 시민의 성인 지 감수성이 향상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이 사적이거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치부되지 않는다. 둘째, 성착취에 피해를 본 피해자를 명백히 피해자로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의 담론을 확실히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해왔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영상물 유포가 확실하지 않지만, 유포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두려움에 시달리는 상황을 ‘불안 피해’로 이름 붙여 지원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룹이 많아지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가는

3) 맹옥재 · 김혁 · 우준희 · 허영진 · 이서영 · 최지원 · 이상욱 · 은진수 · 이경진 · 이준환 (2018). 온라인 게임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4) 이창섭 · 이현정(2018). "4차 산업사회에서 게임산업의 사회 및 문화적 쟁점." 한국게임학회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혐오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1) 디지털 성범죄를 놀이로 이해하는 사람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자 성폭력 사건이 그렇듯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악플과 협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 변화의 과정에 백래시와 혐오, 갈등이 부각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이제 겨우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피해를 벗어난 안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혐오 발언으로 대응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인 지 감수성의 확장이 전보다 더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고, 지나치게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1위 ‘가해자 처벌 강화’, 2위 ‘신속한 수사 와 가해자 검거’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꼽았다.<sup>6)</sup> 반면 처벌 현황을 보자.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음란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성범죄자 42명 중 48.9%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평균징역형량은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17년, 11개월)이었다.<sup>7)</sup>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음란물 동영상을 올렸고 이를 수입으로 삼은 손정우는 18개월 형을 받았다. 반면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은 거부했다.<sup>8)</sup> 성범죄를 대하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 지 감수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판단에 확신을 줄 수 있다.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이다. 그런데 설문에 응답한 판사 668명 중 가장 많은 211명(31.6%)이 기본 양형(가중·감경을 배제한 양형)으로 ‘3년형’을 꼽았다.<sup>9)</sup> 가해자 처벌 수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결국 판사들의 낮은 성인 지 감수성이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어떤가? N번방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으로 ① 경찰의 국제공조조사, ②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 ③ 양형기준 재조정 등을 요구하였다. 국회는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단지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축소·정리하고 관련 법개정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들과 고위 공무원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인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sup>10)</sup>

5) 신혜정 기자(2019.12.27). “동영상 유포 협박에 잠 못 자는 ‘불안 피해’ 여성 도와요.”, 한국일보

6)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7) 여성가족부(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 정책뉴스

8) 최선율(2020.7.7.). 손정우 판결에 외신도 비판...“대법관 안된다” 청원 30만(종합), 서울신문

9) 조운영·장예지 기자(2020.4.24.).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한겨레신문

10) 심윤지 기자(2020.3.14.).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나” 딥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 경향신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자 비서를 남자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이러한 주장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남자 자치단체장이 연령이 낮은 여자비서의 조합이 기존의 성역할 및 사회적 지위 등을 보여준다는 본질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팬스를 적용이라는 낮은 대안을 제시한다. 은근히 이래도 미투를 할 것이냐 하는 얇은 피를 부리는 것이다.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한번도 여성이 당선된 적 없으니 여기에서 여성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하면 자치단체장의 특권의식이 줄어들 것이라는 대안을 말하면 즉시 ‘어차피 여성은 나가도 당선 안 된다’는 편견에 찬 답변이 돌아온다. 성평등은 때에 따라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임에도 과거의 프레임을 정답처럼 들고 나온다. 법조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왜곡된 성인식은 일반인의 의식을 오히려 낙후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의 통계 결과가 있다. 2018년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미투’ 운동 관련 사회 전반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지지자가 88.6%에 이르렀고 성별 차이도 거의 없었다. 2020년 8월에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한다’에 91% (매우 지지 69.5%, 약간 지지 21.5%)가 동의했다. ‘본인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언행,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84.9%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폭력을 공론화한 후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매우 심하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약간 심하다’ 30%, ‘보통이다’ 10.6% 순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결과에도 불구하고 백래시, 혐오, 팬스를 등을 떠올리며 이와 같은 현상에 제동을 걸 것을 요구하는 발언들이 일상의 담론을 지배하는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91%의 사람들이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해자가 발언하기 용이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있는 91%의 시민들도 내재화된 성고정 관념에 대한 성찰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과거 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를 문제 삼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들으면 이에 설득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논리구조의 취약을 호소한다. 결국 교육을 통한 전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타겟집단을 고려한 맥락적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전국민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답인 것이다.

## 2) 성인지 교육 실태와 학교 현장

### 가.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효과와 한계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16.11.30.)으로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는 1999년부터 시작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풍부히 하며 성폭력을 젠더폭력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그간 여

11) 폭력예방통합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부정적 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젠더 지형을 변화시키고 2018년의 미투의 추진력을 이끌 수 있는 인식의 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컸음을 인정해야 한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투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번져갔다. 과거에는 관행이었던 업무상 상급자에 의한 성적 침해는 범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는 쉽게 조성된다. 명백한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미투 이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은 너무 컸다. 법과 제도, 사회 질서 전반에 자리 잡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두께는 너무 크다. 문제는 각각의 분절된 폭력예방교육이 아니라 성별화에서 비롯된 권력과 힘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산된 성역할 수행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공감하는 것,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 즉 젠더 트레이닝(gender training)<sup>12)</sup>이 필요한 것이다.

#### 나. 학교현장에서의 젠더 수행성

그렇다면 성평등 교육의 수행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해야 할 것인가. 성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성고정관념은 가족, 대중매체, 또래친구, 학교 등을 통해 습득된다. 이 중 국가에서는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 실시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차별하지 않는 인간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0년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성차별적 관행을 견어 내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여성부 신설로 성교육에 성평등이라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김수자(2019)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는 여전히 성차별적·성별화된 공간이며 젠더규범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곳이다. 학교는 교사의 태도, 생활지도, 교칙, 규정, 교육환경 등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젠더규범과 성역할을 내면화시킨다. 동일 논문에서 여자 중·고등학교 교훈과 남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를 비교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 9. 28.] / 기타 폭력예방교육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시 기	1999년	2004년	2010년('11.1월 시행)	2006년
도 입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12) 유엔기구나 OECD, 유럽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젠더폭력관련 교육훈련은 국제개발정책에 개입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젠더에 관한 '의식, 지식, 기술, 행동(사업)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평등 교육훈련(training for gender equality: UN WOMEN)'은 최근 기존의 성인지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함. 이는 1990년대 전후로, 여성인권과 성평등 실현이 국가와 세계발전의 주요 목표이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임. 여성/젠더폭력을 포함하여 보건, 인권 등 젠더트레이닝의 핵심 주제들과 관련된 기본개념과 그 방법론은 1970년대 이래 서구 선진국에서 발전한 경제발전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문화인류학, 교육학 등의 상호교차적 영향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 변신원·강선미 외(2018), 폭력예방통합교육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3) 김수자(2019).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표 1〉 여자/남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 비교

여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	남자 중·고등학교 교훈 사례
사랑-용서한다, 참는다, 도와준다, 희생한다, 참된 일꾼, 착한 딸, 어진 어머니, 거래의 발, 아름다운 女性, 경건한 여성이 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부덕을 높이자, 슬기롭고 알뜰한 참여성	꿈을 키우자, 땀을 흘리자, 참을 배우자, 개척, 협동, 애족, 하면 된다, 창조적인 사고, 자주적인 행동, 강인한 체력, 스스로 배우고, 몸소 행하며, 힘차게 앞서자, 자주 자립

위의 교훈 사례를 보면 여학교의 경우 수동화, 축소, 성적 대상이라는 ‘틀’에, 남학생의 경우 적극성, 확장, 자주라는 ‘비전’에 무게중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교사의 태도와 교과과정에도 이와 같은 인식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자는 ‘조신해야지’, ‘단정해야지’, ‘예뻐야지’와 같은 말에, 남자는 ‘씩씩해야지’, ‘용감해야지’, ‘대범해야지’와 같은 말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교 내 차별적 현상이 스쿨 미투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교과수업으로 성평등교육은 범교과학습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성평등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 운영체계, 교훈, 교사의 의식 전반이 지닌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3. 왜 교육이 대안인가

#### 1)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성교육 표준안을,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인권 교재를 개발하

는 등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성차별적 고정관념 강화, 가해자 중심 성폭력 서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 강조 등이 널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이미 2009년 유네스코(UNESCO)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을 통해 ‘젠더 편견에 따른 사회적 관행과 폭력, 젠더 불평등이 강화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아동·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자 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성 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성장도 강조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성교육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성적·사회적 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호존중,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성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교육을 운영하는 중이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14) 여성가족부(2019). 학교 성인권 교육 운영 안내서

〈표 2〉 학교 성 인권 영역별 교육내용

영역	내용
성 인권	성 인권은 성적 주체로서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 존중에 근거한 인권감수성을 높여 성적 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성평등	성 평등은 성별고정관념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성차별을 깨달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인지하며 대안을 생각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성 평등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관계와 소통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성인지적으로 점검하며 인간사회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관계와 소통의 영역에서 체험함으로써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성적인 위험	아동·청소년은 성적 주체로서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주변의 성문화와 환경을 점검하고 성적인 위험에서 안전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
체험활동	성적인 존재로서의 몸 이해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형 성교육내용으로 구성됨



〔그림 1〕 학교 성 인권 영역별 교육내용

성인권 교육의 교육만족도가 높으며,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체계 및 예산의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 2) 페미니즘 페다고지 방법론과 평등의 성찰

디지털 성폭력은 성를 매개로 한 성폭력으로 우

리 사회의 성폭력은 성차별 및 성적 침해를 공고화하는 비정상적 가부장적 권력이 그 중심에 있다. 이른바 장학선 사건이라 불리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비정상적, 가부장적 권력을 특권으로 유지하기 위해 카르텔을 만들고 주변세력을 착취한다. 이들은 성, 인권, 노동, 자본 모두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사업결과보고

사건은 이와 같은 착취 행태가 남성일반 뿐 아니라 청소년에까지 영향을 미쳐 성착취 대상을 '노예'로 부르며 그들의 고통을 유희화했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관점을 확대한다면 젠더로부터 출발하여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시키는데 관심을 더 많이 둔다.

페미니즘 페даго지는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비판적 페даго지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하되 젠더의 문제에 중심을 두어 젠더, 인종, 계급을 동일한 억압의 구조로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연대적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교육의 최종 목표로 '인간화(humanization)'를 강조한 점,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강조한 점, 그리고 의식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를 통해 비판의식을 일깨우는 점 등은 페미니즘 페даго지와 같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방법론이다. 이의 일환으로 탈 권위의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평등하게 맺어지도록 하고 이 양자는 모두 자신이 속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촉진자가 되는 것이다.<sup>16)</sup>

#### 4. 마무리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관계의 양상과 폭력의 양상이 모두 변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경험은 인간의 삶에 디지털의 개입을 급속도로 높여갈 것이다. 디지털은 인간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확장한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통해 우리의 디

지털 환경을 되돌아보면 오프라인에서의 약자에 대한 혐오와 성적 대상화가 유희와 자본으로 치환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교육이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일반인으로부터 시작해 법조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살필 수 있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차별 문제를 시정해 갈 수 있는 인지력 향상을 위한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온 폭력예방교육이 한국사회 젠더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와 폭력 민감성을 높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분절적이어서 비정상적인 권력으로서 가부장적 특권의식을 제대로 문제 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교육의 최종목표는 소수자의 입장, 다양한 층위에서의 타자화를 극복하고 인간화를 이루는 교육으로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궁극의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의 지향점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향후의 과제이다.

16) 배유경 (2018).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даго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 연구

• 참고문헌 •

- 김수자 (2019).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맹옥재, 김혁, 우준희, 허영진, 이서영, 최지원, 이상욱, 은진수, 이경진, 이준환 (2018). 온라인 게임내 성차별 실태 조사  
 및 제재 시스템 디자인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 박정훈 기자(2018.2.27.). “페미니즘 교육 받았다면 ‘미투 운동’ 할 일 없어”, 오마이 뉴스
- 배유경 (2018). 여성학/주의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전략 탐구, 페미니즘 연구
- 변신원, 강선미 외(2018).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신혜정 기자(2019.12.27.). “동영상 유포 협박에 잠 못 자는 ‘불안 피해’ 여성 도와요.”, 한국일보
- 심윤지 기자(2020.3.14.). “예술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 수 있지 않냐” 답페이크 처벌법 만든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현실  
 인식, 경향신문
- 여성가족부(2019). 학교 성인권 교육 운영 안내서
-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 정책뉴스
- 이창섭, 이현정(2018). “4차 산업사회에서 게임산업의 사회 및 문화적 쟁점”, 한국게임학회
- 조윤영·장예지 기자(2020.4.24.).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한겨레신문
- 청와대(2018.1.6.).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 최선율(2020.7.7.). 손정우 판결에 외신도 비판…“대법관 안된다” 청원 30만(종합), 서울신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9). 사업결과보고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이슈브리프

- **묻지마 폭행,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김민정 |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강이수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방안**  
오삼광 |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묻지마 폭행,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김민정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 I. '묻지마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지금껏 수사 기관과 범죄 관련 분야 지식인이 사건을 명명하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대로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해왔다. 그런데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직후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형사사법 관련 지식인과 권력의 권위에 대항하여 맞섰다. 여성의 피해를 '약한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이해하는 형사사법의 헤게모니적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 사건이 '여성이기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혐오'가 주원인임을 지적하였다. 여성들은 술 취한 이들의 까닭 모를 시비와 화풀이, '슴만튀' 등 모르는 이에 의한 성폭력의 경험을 떠올렸다. 남성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택시를 탔을 때, 혼자 있는 곳으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괜스레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척하고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꾸민 행동을

하는 자신들의 수행에 대해 발화하였다. 이 행위들이 여성으로서 체화된 두려움임을 알렸다.

그러나 형사사법 권력과 범죄학 관련 지식인은 여성들의 '여성혐오' 발화를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 또는 증오 감정으로 이해하여 '묻지마 범죄'와 여성혐오를 양립불가능한 문제처럼 규정하였다. 이후로 지금까지 묻지마 폭력을 포함한 길거리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묻지마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논쟁이 벌어진다. 사건의 사회적 원인으로서 여성혐오적 남성 연대 문화를 아무리 지적해봐도 이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단지 정신 질환자나 괴물 같은 가해자 개개인의 돌출행동 때문이라는 대답만 도돌이표처럼 돌아온다.

## II. '묻지마 범죄' 내 여성혐오

90년대 후반 '묻지마' 라는 용어 자체가 언론에서

처음 쓰인 이후, 언론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 방화’, ‘묻지마 범죄’ 등 “묻지마”로 이름 붙여왔다. ‘묻지마’와 폭력의 결합은 결과적으로 범죄 대상인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어디서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괴물’과 같은 가해자 개인만 부각되었다. 2012년 여름 모르는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 폭력이 1주일 내 2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묻지마 범죄’와 꾸준히 마주해 온 시민들은 이 범죄 유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곧 검찰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며 이 용어를 정책적으로 공식화하였다.

검찰이 학계에 ‘묻지마 범죄’ 연구를 맡기면서, 법학, 사회학, 범죄학계에 두루 연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심리학계에만 연구를 발주하였다는 점은 ‘묻지마 범죄’ 연구의 방향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을 가늠하게 한다. ‘묻지마 범죄’가 아닌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범죄의 사회적 맥락, 피해의 사회적 맥락, 젠더 권력, 계급 차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문제, 정신질환, 사이코패스 성향 등으로 범죄 원인을 설명하도록 연구가 설계되었다. 우리가 현재 지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관념이 ‘묻지마 범죄자=정신질환자 또는 사이코패스’라는 등식으로 구성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묻지마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이에 의해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를 설명하려 했지만, 가족과 단절된 하위계층의 정신질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방

식으로 연구된 편향적 개념이다(김민정, 2017). ‘묻지마 범죄’의 사례들은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정신질환자만이 포함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가해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되지 않으면, ‘묻지마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질환 혐오 정서에 기반을 두고 설계되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확산한 ‘묻지마 범죄’<sup>1)</sup>는 여성혐오 또한 내재하고 있다.

검찰과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성폭력이 배제된다(대검찰청, 2013). 강간을 포함하는 성폭력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이에 의해 아무런 잘못 없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범죄 피해의 전형이지만, 범죄에 관한 지식과 정책을 설계하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모르는 이에 의한 성폭력은 연구되고 설명될 만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강간이 힘과 권력, 지배를 확인하려는 행위이자 여성 전체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테러라는 사실은 1970년대부터 강조되어 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범죄학과 형사사법체계는 오랫동안 이를 가장의 소유물인 여성의 처녀성을 훔친 재산상의 범죄 혹은 가해자의 성욕, 짓궂은 장난, 어리석은 실수에 의한 우발적 사고로 다루어 왔다. ‘묻지마 범죄’를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젠더폭력의 유형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의 성별성을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 피

1)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접화된 여성혐오 vs. ‘묻지마 범죄’ 논란 이후 검경 및 학계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자이므로 여성혐오를 할 수 없고, 그러므로 ‘묻지마 범죄’라는 논리를 전개한 이후 조현병과 범죄를 연관 짓는 기사가 전년대비 20배 이상 증가하였다(김민정, 2017.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한국여성학, 33(3), 33-65 참조).

해자는 50% 정도이며, 여성 가해자는 약 5%이다 (대검찰청, 2013).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여성 비율 혹은 남성 비율이 아니다. ‘묻지마 범죄’가 지닌 여성혐오적 성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여자니까, 여자는 맞아도 되니까, 여자가 기본 나쁘게 했으니까’라는 가해자의 진술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검찰과 학계가 연구하고 발표한 ‘묻지마 범죄’에 포함된 사례들에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평소 여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경찰청, 2016; 「한겨레 21」, 2016.5.31.에서 재인용)”,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노인들은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죄송스러워서 범행 대상에서 제외했고 남자는 겁이 나서 제외하였으며, 약해 보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대검찰청, 2015)”, “계집년들은 사회의 압적인 존재다(대검찰청, 2015)”, “내가 돈이 없어 같이 살 여자가 없으니, 여자가 다 싫다(윤정숙 외, 2014)” 등의 가해자 진술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사건들에서 발견된다. ‘남자니까, 남자는 맞아도 되니까, 남자를 기다렸다’ 라는 진술이 목격되는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를 분석하고 이 개념을 공식화한 주류 범죄학과 형사사법권력은 그들이 남성중심성으로 인해 젠더권력 구조로서의 여성혐오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 분석은 사회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위치하는 정신질환자의 길거리 폭력만을 샘플링함으로써 이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꼬리자르기’하였다. 주취 폭력 중에서도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폭력만이 유독 ‘묻지마 범죄’에 분석에 포함되었다. 범행 직전 피해자와 가해자간 갈등이라는 명확한 범행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층의 정신질

환자인 경우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것이다. 우리가 ‘묻지마 범죄’ 혹은 ‘묻지마 폭력’이라고 지칭하는 길거리 폭력은 이렇듯 젠더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계급 구조의 문제를 탈각한 채 가해자 개인만을 문제 삼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 III. ‘사이코패스’와 ‘묻지마 범죄자’

사회 구조 및 문화의 맥락을 삭제한 채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이용하여 가해자 개인만을 문제시함으로써 여성혐오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가시화시키는 효과를 낳기 위해 가해자에게 손쉽게 붙이는 또 하나의 꼬리표는 ‘사이코패스’이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심각한 범죄에서 가해자가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으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 우리 사회는 가해자를 ‘사이코패스’라고 의심한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자신의 단기적 만족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기는 하지만, 잔인하거나 흉포한 범죄자가 반드시 사이코패스인 것은 아니다. 학자 중에는 법에 ‘걸리지’ 않은 사이코패스를 ‘성공한 사이코패스’로 칭하기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 굳이 형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타인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쉽게 쟁취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를 상상하며 정치인, 기업가들 중에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한다. ‘성공한’ 이들이 법의 그물망에 걸려들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고, 또한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만 사이코패스 검사를 시행하기에, 우리 머릿속에 ‘잔인한 범죄자=사이코패스’라는 등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연쇄살인범들은 여성을 주 범행대상으로 한다. 범죄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지만, 일반 시민이 사이코패스라고 인식하는 조두순 역시 여아를 성적으로 도구화하여 잔인하게 억압하였다. 1)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2)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3)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손쉽게 이용하는 특성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현되는 경우, 우리 사회는 이들을 비난하고 ‘건강한’ 사회로부터 잘라내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특성은 ‘묻지마 범죄자’와 ‘사이코패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건강’하다고 간주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여성을 몸통이로 객체화시키고(상대방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여성이 체화하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며(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남성의 성적 쾌락, 본능, 만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억압하고 이용하는(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손쉽게 이용하는), 혹은 이를 허용하는 이 사회는 우리가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다.

한 성이 다른 한 성의 섹슈얼리티를 강제적으로 취하고, 제멋대로 이용하고, 웃음거리로 삼는다. 그들은 그녀들도 원했다거나, 그녀들이 먼저 꼬셨다거나, 그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그녀들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피해자와 제3자를 조종한다. 참고로, 이러한 말들에서 보이는 ‘과도한 자존감’과 ‘능숙한 자기 합리화’, ‘타인 조종’ 또한 사이코패스의 주요 특성에 속한다. 이러한 주장은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형사사법기관에서 또는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때 하는 진술이다.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흔히 이용하는 클리셰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이 같은

주장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 양쪽의 입장을 듣는 공정한 판사, 이들을 수사하는 경찰, 이를 보도하는 언론, 이를 보고 듣고 소비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비슷한 생각을 한다. 같은 문화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 모두는 여성을 사고하고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회주류담론(예, 강남, 정치인, 일본, 성소수자 등에 관한 생각과 태도)을 공유한다. 소라넷, N번방, 불법촬영, 단톡방 성희롱 등 여성을 도구화하고, 이를 당연시하고, 이를 문제 삼는 이들을 문제 삼는다. 이 사회가 구성하는 남성성이란 우리가 평범하고 ‘친사회적’인 우리 자신과 구별하고 싶어 하는 사이코패스의 특성과 꼭 닮아있다. ‘묻지마 범죄’ 연구가 그랬듯이, 여성에게 이 사회는 사이코패스이자 ‘묻지마 범죄자’에 가깝다.

#### IV. 구분짓기와 남성성의 위계

우리가 떠올리는 매우 흉포한 범죄자인 사이코패스는 ‘묻지마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사회 내에서 하층 계급에 위치한 동시에 남성사회의 위계 내에서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찌질이’적 위치에 서 있다. 이들이 ‘일반’ 남성들보다 유독 더 여성을 싫어하는 것일까? 정신적/지적 결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 이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장애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행위라는 결과 사이에는, 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여성에 대한 범죄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한 요인이 존재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자’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이들의 사건 기록들을 보며 내가 알게 된 바는, 이들은 장애

로 인해 깊이 있는 사회적 교류가 매우 제한되었고, 당연하게도 학교, 군대 등 남성성을 훈육하고 체화시키는 기관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중도 탈락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른 시점 즈음에서 이들은 남성 동성사회로부터 더더욱 단절되어 있었다.

가족, 학교, 군대, 직장에서 문화를 공유하며 강화되는 남성 간의 연대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남성다움의 증명이란 대부분 ‘여자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자란 이리이러하다(예, 감정적이다, 약하다, 잘 빠진다, 수다스럽다, 수동적이다 등등)”라는 여성성을 먼저 만들어내야 하고, 그것과 반대되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본인이 ‘남성’임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남성 연대가 구성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타자화된 여성이며, 이 곳에서 타자화된 여성들은 성적으로 도구화되고 대상화된다. 남성연대 문화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 쾌락 및 만족을 위해 필요한 물건/동물로서 비유하고, 그와 같이 다루고, 여성이라는 존재에 공감하지 않기를 체화하면서 여성 일반에 대한 사이코패스적 감수성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남성연대에는 사실 남성들에게 인정받는 더 남자다운 남성이 존재한다. 이들은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고 리더십이 있으며 부유하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이들이 남들의 시선을 받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때리거나 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이 지닌 여성혐오가 덜해서가 아니라, 이를 공적인 장소에서 내놓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고급’ 남성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 ‘고급’ 남성성을 획득한 이들조차 젠더폭력을 흔히 저지른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사실 모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젠더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아는 관계 혹은 가까운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거나 때린 이들은 ‘너무 사랑해서’, ‘맘에 들어서’, ‘나를 거절해서’, ‘햇김에’, ‘술김에’ 등등으로 범행 이유를 포장할 줄 알고, 이는 ‘치정’이나 ‘우발적’이란 용어로 치환되며, 법정에서 그럴듯하게 수용된다.

그렇다면 길거리 여성 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사회에서 소외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향해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른다. 다른 계층의 남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쉽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여성이 거의 없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은 남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여성 타자화, 여성 도구화, 여성 대상화로 구성되는 남성성 ‘기초반’은 습득했지만, 남성 위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여 학교, 군대, 직장에서 배제되었기에, 남성성 ‘심화반’ 학습의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이들 범죄자들은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여성을 때리거나 강간하는 것이 남성 전반의 위신을 깎는다는 점을 학습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 “남자망신 다 시키네”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손쉽게 마음대로 다루도 된다는 믿음,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태도는 남성 사회로부터 소외된 남성 계층이 그들 자신을 소외시킨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으, 단 하나 남은 권력이다.

## V. 형사사법 체계와 학문의 남성중심성

젠더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범죄의 개인화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행위자와 연구자는 인권과 사회 상규, 사회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유독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양육강식의 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운운한다. 가해자가 ‘여성을 기다렸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지식과 권력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신체적 약자라 범행대상으로 ‘선택’되었다며 가해자와 그들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같은 가해자 중심성, 남성중심성은 범죄학의 발달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역사적으로 범죄 가해자, 이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형사사법체계 실무자, 이들을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전통적으로 범행 ‘대상’, ‘객체’로서만 취급받아왔다(Belknap, 2001). 범행의 대상인 객체는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며,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사회의 남성중심적 주류 문화를 내재화한 개인으로서의 연구자, 실무자들은 여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맞거나 죽어도 짝 여성을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폭행하고, 성적 도구로 삼아 짓밟는 이들 역시 남성중심적 주류 문화를 체화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없다. 이들은 한 성이 다른 한 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사회의 젠더체계를 문제 삼지 않으며, 왜 하필 여성인가에 대해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성혐오에 근거한 젠더폭력을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다.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중심적인 형사사법 체계와 범죄학 담론은 여성혐오의 문제를 ‘사이코패스’, ‘정신질환자’의 문제로 치환하여 여성혐오의 스펙트럼 우측 최극단만을 잘라내어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우리’와

구별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의 문제를 탈각시킨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학계와 언론은 “범죄를 명명할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다. 영미권의 백인남성중심적 주류 이론만을 검증하고, 여성들의 ‘여성혐오’ 발화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FBI의 혐오범죄 여부로 응답하는 서구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 연구가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강하게 내포한 편향적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식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둔갑하여 사회 내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강화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과학적 가설 및 이론의 문화적 태두리와 그 전제, 연구자의 위치까지 고민하는 ‘강한 객관성’이 그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들의 외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여다본다면, 범죄와 사회 구조, 가해와 피해에 대한 이해가 확장될 것이다.

## VI. ‘묻지마’ + ‘범죄’ 버리기

길거리에서 모르는 이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어김없이 ‘묻지마 범죄’ vs. ‘여성혐오 범죄’ 논쟁이 벌어진다. ‘묻지마 범죄’가 가치중립적이기는커녕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연구 윤리 및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비과학적 개념임을 감안할 때 언론과 학계에서 이 용어의 사용 및 적용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길거리 여성 폭력만을 여성혐오범죄로 부르는 경향을 보인다. 길거리 여성 폭력 발생의 주원인을 여성혐오로 분석하고 지적하는 용어이기는 하지

만 ‘묻지마 범죄’와 함께 논의되면서 이와 대치되는 개념인 듯 ‘여성혐오’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의미가 축소될 뿐 아니라 ‘묻지마 범죄’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수많은 젠더폭력(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가스라이팅, 성매매, 창녀 프레임, 피해자다움 강요 등등)을 여성혐오와 관계없는 것으로 사고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젠더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칭하며 그 원인으로서 사회구조로서의 젠더권력 차이, 여성혐오를 지적하는 개념인 만큼 여성을 멸시, 무시,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모두 “여자인가 별 수 없지” ↔ “여자인가 맞아도 싸.” ↔ “여자인가 맞아야 해.” 로 이어지는 여성혐오의 스펙트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혐오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낮은 이에 의한 길거리 폭력 범죄 내에 여성

혐오가 주원인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여성혐오가 주원인인 수많은 젠더폭력 내에 낮은 이에 의한 길거리 폭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성들의 지속적인 발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결과로서 변화의 모습이 더디게 체감될 지라도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쉽게 당하는 폭력,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그 폭력으로부터 두려워하며 시간과 돈 에너지, 신경을 쏟는 일상에 대해 계속 알려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검경과 법원, 범죄학자들은 심각성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 폄하하기도 하고, 알게 될까봐 두려워 피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만큼, 계속 이야기하고 소리 내면서 변화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민정(2017),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한국여성학, 33(3), 33-65.  
대검찰청(2013), 『묻지마 범죄 분석』, 서울: 대검찰청.  
\_\_\_\_\_ (2015), 『묻지마 범죄 분석』, 서울: 대검찰청.  
Belknap, Joanne(2001),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2nd ed.). Belmont, CA: Wadsworth.  
「한겨레 21」, 2016.5.31., “‘여성’이라는 죽을 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807.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1807.html), 검색일: 2017.5.8.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강이수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I.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다양한 예측이 이루어져 왔다. 급격한 디지털 기술 변동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블록체인, AR/VR등의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 디지털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긴밀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과 확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의 깊이와 속도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쉽게 실감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Covid-19)라는 팬데믹한 전염병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 교육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기업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를 소통하는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면서 급속하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일상화하였다. 이에 최

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정체되어 버린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제 디지털의 사용과 활용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미래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주요 디지털 기술이 현재와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영향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된 연구 주제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일자리의 미래 : 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AI와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노동은 물론 정신노동까지 대체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의한 일자리 상실과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World Economic Forum, 2016). 선진국들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2015~2020년 710만 개의 일자리 상실이 예견되며,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400만개의 일자리 상실과 14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여성은 300만개의 일자리 상실과 5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WEF, 2016:40). 이 같은 예측은 Frey & Osborne이 미국 내 현존하는 직업들 중 47%가 자동화에 의해 향후 10~20년 이내 소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올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후에도 일자리의 증감에 대해 다양한 학자와 기관의 예측이 이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예측은 단기적으로 여성들이 디지털화로 인한 자동화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권현지 외, 2017).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으며 오히려 디지털화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간의 기술적 대응 능력으로 일자리 규모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 Ashoka Germany, 2018). 예측은 단일한 방향이 아니고 여전히 불확실하며 논쟁적이다. 단지 공통된 논쟁의 기반은 앞으로 2,30년 일자리는 디지털 기술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개인은 디지털 기술 수준과 채택에 따라 다른 일자리의 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일자리의 증감이나 규모보다는 일자리의 질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개인들이 급격한 디지털 기술 변동 시대에 적응하고 주류에 진입하기 위해 얼마나 적절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디지털 시대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나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의 영역이 바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이다.

## II. 디지털 격차와 젠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자들은 지속적인 디지털 기술변동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규정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디지털 격차에 대한 개념은 '인터넷 이용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인터넷 이용에서 불리한 사람간의 격차', "현대 ICT 기술의 사용과 접근에 있어 경험과 불평등 접근성의 격차",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참여'와 '사용의 질'의 격차라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Kerras, H. J. L. Sánchez-Navarro, E. I. López-Becerra and María Dolores de-Miguel Gómez, 2020: 3).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디지털 격차는 일반적으로 첫째,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이용의 가능성 둘째, 집, 일터, 사무실에서 네트워크에 로그인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셋째, 네트워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에 대한 지식 넷째, 네트워크에 접근한 정보를 사용자의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 등을 포괄한다. 그런데 이 같은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개인 간의 격차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집단별로 다양한 불평등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기술사용 인구가 선진 개발국의 경우 80%인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50%, 저개발국은 20% 수준으로 국가별로 디지털 기술의 격차와 불평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Kerras, H. et als., 2020: 4).

디지털 성별 격차(Digital Gender Divide)는 바로 이와 같은 불평등의 유형 중 하나로 인터넷 사용의 참여뿐만 아니라 인터넷 연결의 사용과 밀도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격차를 지칭한다. 디지털 기술이 미래를 위한 핵심적 주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성별 격차는 성별 평등의 문제에도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별 격차에 대해서 UN과 같은 기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sup>1)</sup> 세계 경제에서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성별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도 있지만, 전 산업에 걸쳐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가 부상하면서 새롭게 성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22%에 불과해 타 산업 부문보다 인공지능 분야의 성별 격차는 3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Kamberidou, I. & Nancy Pascall, 2020 ; 6). 또한 2016년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받은 여성은 18%로 1984년 38%보다 하락하는 등 그동안의 다양성이나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배제는 상승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위기는 학교, 고등교육, 일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Kamberidou, I & Nancy Pascall, 2020: 13).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변동의 확장은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보다는 새로운 성별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가 디지털 기술에 크게

의존해 갈수록 디지털 성별 격차(Digital Gender Divide)의 문제는 여성의 성평등 성취를 위해 도전해야 하는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디지털 기술의 확장은 이제껏 추구해 온 젠더 평등에 대한 노력과 성취를 되돌려 성별 불평등을 다시금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Howcroft, Debra and Jill Rubery, 2019 ; Jill Rubery, 2019).

### III. 디지털 성별 격차의 층위와 지표화

#### 1. 디지털 성별 격차의 개념과 현황

디지털 성별 격차(Digital Gender Divide)에 대한 관심은 디지털 기술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젠더 평등을 위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내기 위해 탐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디지털 성별 격차는 1990년대부터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여성의 인터넷 사용이나 모바일 폰의 사용 등 현황 파악과 분석을 위해 사용해 온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디지털 성별 격차에 대해 보다 체계화된 접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 디지털 성별 격차에 대해서는 90년대부터 국제기구 차원에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위해 ICT의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실천계획에서는 '여성 ICT기술, 지식, 접근성 향상을 통해 권한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005년에 개최된 정보사회정상회의(WSSIS)에서는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ICT로의 접근과 활용,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위상이 남성에게 비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5년 12월 WSSIS 성과 이행 점검을 위한 유엔 총회에서는 ITU와 UN Women이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여성권한: WSSIS 결과 및 2030의제 이행' 라는 부대 세션에서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 to close Digital Gender Gap)'이 발표되기도 하였다(김태은, 전선민, 2016).

〈표 1〉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종합 (성별)

	일반국민	여성	남성	조사통계 출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100.0	99.0	101.0	디지털 정보화 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	100.0	91.3	108.8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100.0	96.2	103.8	
디지털 정보화 수준	100.0	95.1	104.9	
	전체	여성	남성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인터넷 이용률	91.8	89.6	93.9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조사보고서 참조.

(Kamberidou, I & Nancy Pascall, 2020).

그런데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에 비해 디지털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나 분석적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젠더 평등과 관련된 연구도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강이수, 2018). 일반적으로 디지털 격차의 개념과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최근 다양한 국제기구 차원의 보고서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제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디지털 사용 현황에 국가별, 성별 조사를 지속, 생산하고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UN이나 OECD의 각종 보고서는 대부분 ITU의 자료에 기반한 현황 분석을 하고 있다. ITU에 따르면 남녀 간의 디지털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는 인구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2억 5천만 명이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 해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비롯해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등을 간행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성별 실태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보고서들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접근, 역량, 활용 수준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는데, 2019년 성별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sup>2)</sup>

그런데 위의 자료에 기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는 성별로 볼 때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과 일자리의 영향을 예측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2018년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 일자리 전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에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오은진 외, 2018).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살펴 보면서 기술 및 숙련에 대한 지표로 기존의 일반적인 숙련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직업사전의 숙련 지표 기술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다음과 같은 지표로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디지털 정보화 활용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 인터넷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통계를 기초 자료로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필요 교육, 필요 경력, 작업 강도, 자료 기능, 사람기능, 사물기능, 균형감각, 응크림, 손사용, 말하기, 청각, 시각(오은진 외, 2018: 104-105) 등의 숙련 정도를 성별로 분석하고 있다.<sup>3)</sup> 이런 지표들은 숙련 및 기술 문제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별 격차를 분석하기에는 적절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술과 숙련 수준에서 디지털 성별 격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및 숙련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디지털 성별 격차의 층위와 지표

국제적 차원에서 디지털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층위로 구분해 분석, 검토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의 차원으로 디지털 기술에 성별로 얼마나 동등한 접근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기술의 문제로 여성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활용,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차원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사업 부문에서 여성이 얼마나 리더 또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는가의 차원이다(Barcena, Alicia, Prado, Montano & Perez, 2013: 16 ; 강이수, 2018: 148). 이에 최근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디지털 성별 격차를 젠더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지표화가 필요하고 이같은 지표가 젠더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Equals, UN university, 2019: 26). 이같은 지표화와 의미 분석은 디지털 성별 격차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① 디지털 접근성의 차원

디지털 성별격차의 첫 번째 층위는 접근성(Access)의 차원이다. 디지털 접근성은 디지털 참여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 교육, 고용 및 성별 불평등은 디지털 세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막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은 전화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광역 인터넷까지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기의 소유와 기기에 대한 통제 문제까지로 이해가 확대되고 있다(Equals, UN university, 2019: 26). Equals, UN university(2019)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성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ICT접근성의 차원도 기본적 접근성과 의미있는 접근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 접근성(Basic Access)은 컴퓨터의 사용 여부에 주목하며 주로 컴퓨터와 모바일 폰과 같은 기기의 사용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기기 중심적 개념화이기는 하지만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ITU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에서 디지털 성별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2013년 11%, 2017년에는 12%이다. 그런데 2018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APEC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 대

3)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직업정보(o\*net)의 숙련 지표 기술 통계를 사용해 기술의 문제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표 역시 적극적 학습, 적극적 경청하기, 복합 문제 해결, 협동, 비판적 사고, 장비 유지, 장비 선택, 설치, 가르치기, 판단과 의사결정 등으로 디지털 기술의 격차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인 지표들이다(오은진 외, 2018 :110).

〈표 2〉 디지털 성별 격차 : 접근성의 차원과 지표

구분	지표
기본적 접근성 (Basic Access)	-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의 비율 -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의 비율 -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개인의 비율 - 모바일 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비율
의미있는 접근성 (Meaningful Access)	- 디지털 금융 거래 - 디지털페이 거래 - 모바일 폰이나 인터넷 계좌 온라인 구매 -페이 빌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역량

자료: Equals, UN university(2019), pp. 26~27 자료에서 재구성

략 4~5%이고, 우리나라는 3%대로 인터넷 사용에서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OECD, APEC, 2019).

다음으로 의미있는 접근성(Meaningful Access)이란 개인의 활동, 기회,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 역량과 활용을 언급하며, 디지털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 접근성만으로는 디지털 부문에서의 여성의 세력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패턴이나 이용하는 콘텐츠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해 주로 기본적 접근성 차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미있는 접근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②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활용의 차원

디지털 성별 격차의 두 번째 층위는 기술(skill) 활용과 개발의 문제이다. 디지털 기술과 개발 부문에서의 성별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CT 이해도(literacy)를 넘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급속한 기술 변동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의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 일관된 규정

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OECD(2016)는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 사용을 위한 ICT 보충 기술’, ‘작업을 위한 ICT 생성 기술’, 기술 개발을 위한 ICT 특수 기술’로 범주화하기도 하고, UN(2019)의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초 기술부터 고급 기술까지의 점진적인 연속선으로 두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에 기반하여 디지털 기술을 구분하면 첫째, 디지털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초(basic) 기술 둘째, 효율적 디지털 시민으로서 ICT를 사용할 수 있는 중급(intermediate) 기술 셋째, ICT산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래밍 등 ICT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로 구분하기도 한다(Juhee Kang & Don Rodney Junio, UNU-CS, 2019).

디지털 기술 활용의 기초적(basic)기술 항목이나 지표는 파일과 폴더의 복사와 이동, 스프레드 시트에서 기본적인 산술 공식 사용하는 것, 새로운 기기를 장착하거나 연결시키는 능력, 소프트웨어 발견과 다운로드 및 저장하는 능력,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자적 프레젠테이션을 창출하는 능력 등이 해당된다. 즉, 컴퓨터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항목이다(Juhee Kang & Don Rodney Junio, UNU-CS, 2019 : 50).

중급(intermediate) 디지털 스킬은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문제기술 해결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문서, 그림, 표와 도표를 통합한 문서의 작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하는 고급 스프레드시트 기능 사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 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자료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현황을 추정하는 상태이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능력과 문제 해결 기술은 결국 온

라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생성,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와도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들은 소셜 미디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중요한 정보 자료인 위키피디아 제공자의 90%, 독자의 69%는 남성인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남성이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고급 기술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ITU의 2017년 49개국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3.5%, 남성의 7.8%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고급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 특히 고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Equals, UN university 2019: 58). 여성들은 디지털 활용과 개발을 위한 기술의 차원에서 기초적 기술 단계의 활용은 하고 있지만, 중급과 고급 기술은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격차도 큰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로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STEM교육에의 여성들의 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디지털 부문 리더십의 차원

디지털 성별 격차의 세 번째 차원은 ICT산업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리더십 문제이다. ICT산업에서의 리더십은 고용, 기업가정신, 정책결정이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우선 고용(Employment)의 측면은 디지털 산업 부문에서 일하면서 충원, 유지, 승진되는 문제이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개인 기업 설립에 참여, 비즈니스 훈련 접근성, 비즈니스 자본 접근성 등의 문제를 그리고 정책결정(Policymaking)은 기술 및 그와 연관된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과 위치에 참여하는 것 등

을 포함한다(Araba Sey, UNU-CS, 2019).

2018년 BCG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대학 졸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56%인데 비해 STEM 분야의 여성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36%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 취업 시장으로 들어가면 여성의 비중은 더 낮아지는데 STEM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은 25% 수준이다. 기업 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중은 더 낮아져 관리자급은 14%, 임원급은 9%에 불과하다(BCG, 2018). ICT산업에서의 이 같은 현상은 과학 학계 및 STEM 분야의 오랜 문제 중 하나로 '새는 파이프라인'(leaky pipe line) 현상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Jacob Clark Blickenstaff, 2005). 이같은 새는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여성의 수가 적으며 따라서 승진을 통해 리더십의 위치로 가는 여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혹은 기업가성의 측면은 기업 소유, 비즈니스 훈련 접근성, 비즈니스 자본 접근성, 창업 가능성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거의 없는 편이다(Araba Sey, UNU-CS, 2019: 100). 정책결정의 측면에서는 디지털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정부 기구와의 참여, ICT관련 기관과의 참여 등도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 IV. 맺음말

디지털 시대의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성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접근성, 기술 활용과 개발 그리고 리더십 차원에서의 현황이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젠더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연구와 보고서들은 잠재적인 대규모의 직업 변동과 불평등의 확대 그리고 성평등의 위기를 예견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술은 운명이 아니고 기술의 문제와 영향에 대해 제도적, 정책적 수준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술적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고, 최선의 가능한 방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성별 질서와 관계를 재형성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owcroft, Debra and Jill Rubery, 2019).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여성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난 10~20년간 STEM교육에서 중요한 추세적 변화가 있는데 첫째,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참여가 크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TEM전공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며, 둘째, 스템 분야 내에서도 상당한 성별 분리가 있어 여성들은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보다는 보건 의료분야의 자연과학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셋째,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STEM에서의 성별 격차는 성별 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Stoet & Geary, 2018). 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STEM 분야에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노동질서의 변화, 새로운 성별 질서의 관계 구

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및 ICT 분야에서 여성들의 적응과 지속적 고용을 어렵게 하는 노동문화의 개선과 임금노동과 돌봄을 포함한 무임노동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Jill Rubery, 2019). 디지털경제에서는 기존의 '이상적 노동자 규범'에 부가적인 요소가 더해지는데, 디지털 시대 이상적 노동자는 '아무런 부담도 없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노동할 수 있으며, 지속적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강이수, 2018 :156).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무임의 가사와 돌봄 노동, 부모 휴가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돌봄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재구성하여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노동조건에서의 특정한 변화 -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의 확대나 재택근무의 증대 - 가 성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탐구와 대응도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성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별 격차의 객관적인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기술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규범과 정책 및 제도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함께 해야 성별 격차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이수. 2018.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성별 격차 -여성노동의 쟁점과 현실”, 『페미니즘연구』, 제18권 1호.
- 권현지·강이수·권혜원·김서경·김석호. 2017.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김태은·전선민. 2016. “여성과 ICT : 지속가능발전목표 5(양성평등과 여성권익향상)의 이행”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8권 9호 통권 623호
- Ashoka Germany and McKinsey & Company. 2018. The skilling challenge : How to equip employees for the era of automation and digitization. McKinsey & Company.
- Araba Sey, UNU-CS, 2019. Gender Equality in ICT Industry Leadership in Talking Stock : Data and Evidence on Digital Access, Skills and Leadership. Equals, UN university.
- Howcroft, Debra and Rubery, Jill 2019. ‘Bias in, Bias Out: Gender Equality and the Future of Work Debate, *Labour & Industry: a journal of the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of work*, Volume 29.2, 2019, 213-227.
- Blickenstaff, J. C. 2005. “Women and Science Careers: Leaky Pipeline or Gender Filter?” *Gender and Education* 17: 369-386.
- (Jacob Clark Blickenstaff, 2005)
- Junio, Don Rodney, UNU-CS, 2019. “Gender Equality in ICT Access” in Talking Stock : Data and Evidence on Digital Access, Skills and Leadership. Equals, UN university.
- Juhee Kang & Don Rodney Junio, UNU-CS 2019. “Gender Equality in ICT Skills” in Talking Stock : Data and Evidence on Digital Access, Skills and Leadership. Equals, UN university.
- Kamberidou, Irene & Nancy Pascall, 2020. The Digital Skills Crisis : Engendering Technology-Empowering Women in Cyberspace, *European J. of Social Sciences Studies* vol.4, Issue 6/ 2020.
- Kerras, Hayet, Jorge Luis Sánchez-Navarro, Erasmo Isidro López-Becerra and María Dolores de-Miguel Gómez, 2020. The Impact of the Gender Digital Divide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Maghreb (April 2020) *Sustainability* 2020,12.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9. The future of women at work: Transitions in the age of automation. June 2019.
- OECD, APEC, 2019 The Role of Education and skills in bridging the Digital Gender Divide : Evidence from APEC Economies, OECD.
- Rubery, Jill 2019. A Gender Lens on the future of 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JAN. 22). 2019. <https://jia.sipa.columbia.edu/gender-lens-future-work>
- Roberts, Carry, Henry Parkes, Rachel Statham & Leslie Ramkin, 2019. The Future is ours : Women, Automation and Equality in the Digital Age, IPPR, (July)
- Stoet & Geary, 2018, “gender & STEM paradox” The Gender-equality paradox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education. *Psychological science*, 29(4), 581-593.
-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Industrial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방안

오삼광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고, 학대유형 역시 고도화,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주변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은폐가 쉽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대아동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과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이후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아동을 체벌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내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천안 9세 소년 가방 감금 사망사건과 창녕 여아아동학대사건 등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의 문제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채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아동학대를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경우 아동시기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따른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아동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 2.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다시 말해 적극적

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개념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학대의 개념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 폭력·학대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sup>2)</sup>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학대유형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복지법과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을 제2조 제3호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피하고 해당 유형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동시에 제2조 제4호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의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정의는 범죄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3)</sup>

### 3. 아동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

학대의 가장 기본적 행태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직접적 신체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행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가해진 체벌이나 가혹행위는 어떠한 상황이나 이유에서라도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다.<sup>4)</sup>

신체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이용하여 가해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인성발달과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직접적 학대와 간접적 학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언이나 아동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간접적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폭

1) 이상애·조현빈,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125면.  
 2) 동법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 제27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141면.  
 4) 조민상·장석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발생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제5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196면.  
 5) 이명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아동보호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아동보호학회, 2017, 106면.

력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의 아동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보여주거나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나 심리에 폭력 행위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편애로 인한 차별이나 분노의 해소를 위한 대상도 정서학대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발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부모나 주변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sup>6)</sup>

### (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인 또는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하며, 아동의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성적행위이다. 즉, 성인이 주도하여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성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성적 행위로 정의되어진다.<sup>7)</sup> 공식적인 범죄 데이터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적 학대 사건은 평소에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 주변에서 평상시에 피해아동과 자주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며, 대부분 성적 접촉과 관련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납치되거나 살해당하

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sup>8)</sup> 다른 학대에 비해 차지하는 건수가 적지만 성적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오랜 기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 (4) 방임과 유기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이나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sup>9)</sup> 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방임의 유형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임행위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식주의 제공이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아동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방임의 결과로는 이기적인 아동이 되거나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받지 못한 채 건강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유기는 형법<sup>10)</sup>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거나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에 위험을

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 121면.

7) 박중수, "아동 성 학대를 위한 목회상담학적 개입", 신학과 실천, 제42호, 한국실천신학회, 2014, 335면.

8) Michael C. Seto, 성도착증, 시그마프레스, 2016, 2면.

9) 주수길·홍연숙·황윤경·주명국, 아동복지론, 양성원, 2018, 196면.

10) 형법 제271조 (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방임과 유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 3.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총 17,782건이었으나 2018년 36,416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신고건수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응급아동 학대사례는 2014년 2,566건으로 전체 14.5%였지만, 2018년 1,187건으로 전체 3.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이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발견이 예전보다는 용이해졌고, 신고의무자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학대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응급아동 학대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사례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례유형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이 아닌 다양한 학대가 복합적으로 함께 어우러진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4년의 경우 중복학대 다음으로 방임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부터는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유형으로는 정서학대와 성학대가 약 3배 이상, 신체학대는 약 2배 이상 증가되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207건에서 2015년 9,348건, 2016년 15,048건, 2017년 17,177건, 2018년 18,919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계부, 계모, 양부, 양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90%이상 친부, 친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가정

〈표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계	전년대비 증가율
		응급아동 학대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014		2,566 (14.5)	12,459 (70.0)	15,025 (84.5)	93 (0.5)	2,664 (15.0)	17,782 (100.0)	-
2015		2,252 (11.7)	14,399 (75.0)	16,651 (86.7)	87 (0.5)	2,465 (12.8)	19,203 (100.0)	8.0
2016		2,796 (9.4)	23,082 (77.8)	25,878 (87.2)	189 (0.6)	3,604 (12.1)	29,671 (100.0)	54.5
2017		2,094 (6.1)	28,829 (84.4)	30,923 (90.5)	292 (0.9)	2,951 (8.6)	34,166 (100.0)	15.1
2018		1,187 (3.3)	32,345 (88.8)	33,532 (92.1)	420 (1.2)	2,464 (6.8)	36,416 (100.0)	6.6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01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정리함.

〈표 2〉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포함)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체학대		1,453 (14.5)	1,884 (16.1)	2,715 (14.5)	3,285 (14.7)	3,436 (14)
정서학대		1,582 (15.8)	2,046 (17.5)	3,588 (19.2)	4,728 (21.1)	5,862 (23.8)
성학대		308 (3.1)	428 (3.7)	493 (2.6)	692 (3.1)	910 (3.7)
방임		1,870 (18.6)	2,010 (17.2)	2,924 (15.6)	2,787 (12.5)	2,604 (10.6)
중 복 학 대	신체학대·정서학대	3,440 (34.3)	4,009 (34.2)	7,085 (37.9)	8,757 (39.2)	9,376 (38.1)
	신체학대·성학대	18 (0.2)	20 (0.2)	30 (0.2)	35 (0.2)	63 (0.3)
	신체학대·방임	191 (1.9)	167 (1.4)	268 (1.4)	211 (0.9)	254 (1)
	정서학대·성학대	39 (0.4)	65 (0.6)	97 (0.5)	165 (0.7)	422 (1.7)
	정서학대·방임	513 (5.1)	495 (4.2)	711 (3.8)	778 (3.5)	779 (3.2)
	성학대·방임	9 (0.1)	8 (0.1)	7 (0.0)	11 (0.0)	1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1 (0.5)	88 (0.5)	100 (0.5)	160 (0.7)	199 (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531 (5.3)	475 (4.1)	656 (3.5)	734 (3.3)	683 (2.8)
	신체학대·성학대·방임	2 (0.0)	1 (0.0)	1 (0.0)	0 (0.0)	1 (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7 (0.1)	2 (0.0)	5 (0.0)	6 (0.0)	3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3 (0.1)	17 (0.1)	20 (0.1)	18 (0.1)	11 (0.0)
	소계	4,814 (48)	5,347 (45.6)	8,980 (48)	10,875 (48.6)	11,792 (47.9)
계	10,027 (100)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24,604 (1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01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정리함.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자의 학대 원인을 분석하여 학대예방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은 전체 아동학대 10,027건 중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300건(3%)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경우 아동학대 11,715건 중 432건(3.7%)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아동학대는 18,700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601건(3.2%)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22,367건 중 843건(3.8%)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아동학대 24,604건 중 811건(3.3%)으로 나타났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은 아니지만 상당히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배에 가깝게 증가되었으며, 전체 아동학대범죄에서도 3% 이상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보육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으며, 이는 근무조건의 열악으로 이어져 결국 업무의 스트레스가 쌓여 아동에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오늘날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행위로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거

〈표 3〉 부모에 의한 학대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모	친부	4,531	5,368	8,295	9,562	10,747
	친모	3,211	3,475	5,923	6,824	7,337
	계부	189	236	394	401	480
	계모	242	237	362	341	297
	양부	17	17	37	28	36
	양모	17	15	37	21	22
	소계	8,207	9,348	15,048	17,177	18,919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01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재정리 함.

〈표 4〉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

	전체 아동학대	어린이집	점유율
2014	10,027	300	3
2015	11,715	432	3.7
2016	18,700	601	3.2
2017	22,367	843	3.8
2018	24,604	811	3.3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201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재정리 함.

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아동에게는 경미한 학대라도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성장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정이나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절실하다.

###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개선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을 국가나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여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에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며, 자녀의 체벌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여겨 아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아동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 및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한다면 아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국가나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감시망 강화

아동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와 폭넓은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에게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협력관계에 의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특정아동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상태에 따라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사회는 감시망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정방문제도를 확대·시행하는 체계의 구축과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나 의료계에도 공유하는 등의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부모의 아동학대 원인은 정신적, 사회문화적 환경,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대의 위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대자가 학대에 이르게 된 원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교

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부모로서 알지 못했던 정보를 제공 받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 (4) 보육교사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는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은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한다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5) 보육교직원의 책무 범위 확대

「영유아보육법」제1조에서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18조의2에 제1항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고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 보육교직원의 책무 범위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한하여 그 책임의무를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되어야 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도 제공해야 하는바, 단순히 보육교직원의 책무 범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한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확대된 책무의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시나 행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린이집 내에서 반드시 보육교직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의 범위를 넘어서 정서적 고통, 유기와 방임에까지 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의 제1항을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 왕따 등의 정서적 고통 또는 유기나 방임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 5. 나가며

우리사회는 미래의 희망이며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이후 아동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위주의 정

## 이슈브리프

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서 탈피하고, 부모나 보육교사 등 대상자에 대한 교육·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의 전환과 국가나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감시망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동학대의 예방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국제리뷰

-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김민정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코로나19 최전선의 여성들과 돌봄 위기: 새롭고도 오래된 과제**  
심예리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물과 젠더: 개도국 현황과 SDG 6번과 5번의 달성**  
장은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I. 서론

2014년 스웨덴 적녹연정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스웨덴 외교정책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스웨덴은 이를 통해 성평등과 모든 여성의 인권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세계를 향하여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표방은 200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 결의에 대한 강한 지지의 표명이며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Security, WPS)에 관한 유엔의 결의에 대한 적극적 옹호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전개는 스웨덴의 마고 발스트롬(Margot Wallström) 외무부 장관의 임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분쟁 중 성폭력에 관한 유엔 특별대사를 역임한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이다. 발스트롬은 세계 정치와 지속가능한 평화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며 국내 및 국제 안보에 있어서 여성의 세력화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왔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표명은 국익중심의 외교정책 수행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국익이 변한다면 오늘의 동맹국이 내일의 적국이 될 수도 있는 현실주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상당히 독특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정책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정책은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 속에서 이전의 주류 이론과 어떠한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 II.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내용

스웨덴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특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외교 노선이 전세계에서 최초는 아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도 친젠더적 규범과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의 결의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톤이 미국 국무장관 재임시절 ‘힐러리 독트린(Hillary Doctrine)’이라고 명명된 원칙 즉 ‘여성의 예측이 미국과 전세계에 대한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외교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히 페미니스트적 외교 노선이었다(Hudson and Leidl 2015). 영국의 전 외교대신이었던 윌리엄 헤이그도 분쟁 상태에 있는 지역 혹은 국가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규범 설립을 위한 영국의 노력을 강조했었고 호주의 외교부장관이었던 줄리 비숍 역시 국제 제도에 있어서 성주류화를 증진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노르웨이는 평화유지, 평화구축, 개발협력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모든 예들을 볼 때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표방은 한 국가 외교부장관의 공식적인 표방이라는 점에서 는 최초이나 많은 예들을 바탕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목표는 정부의 공식 행동계획(2019~2022)에 따르면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리고 젠더 평등에 기여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6가지로 요약된다(Swedish Foreign Service Action Plan <https://www.government.se/499195/contentassets/2b694599415943ebb466af0f838da1fc/the-swedish-foreign-service-action-plan-for-feminist-foreign-policy-20192022-including-direction-and-measures-for-2020.pdf>). 첫째는 인권의 완전한 보장이다. 스웨덴의 외교부는 모든 포럼과 모든 국제관계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 보장과 젠더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연합과 함께 젠더 평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19년 유럽연합 외무부장관 회의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이를 제안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스웨덴 외교부는 젠더 평등을 위한 협력과 전략적 교환을 동반하는 모든 동맹, 발의(initiative), 의견(platform)을 적극 지지한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상황 및 난민 여성 및 소녀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신매매 및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전 지구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유럽차원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여성과 소녀들의 심리적, 육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스웨덴 외교부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젠더기반의 모든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며 가정내 폭력 문제에도 관심을 촉구해왔다. 또한 분쟁 상황 및 분쟁 후 상황에서

성적, 젠더기반의 다양한 폭력 근절을 위해서 적절한 행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적 착취, 성희롱 등에 대해서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동반되도록 노력하며 관련 행위자들과 적절히 협력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분쟁 예방 및 해결 그리고 분쟁후 평화정착 과정에서의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 증진이다. 유엔의 WPS 의제의 실천에 적극 협조하며 행위자로서 여성과 소녀들의 세력화에 기여할 것이다. 젠더 관점을 분쟁 예방 및 극단화, 폭력적 급진화 등을 예방하는 과정에 편입하여서 여성의 관점에서 분쟁 예방 및 극단화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구들 예를 들어 유엔 평화정착기구(UN Peacebuilding Architecture), 세계 은행 등과 협력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무장과 핵확산방지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행위자들이 협상과 실천방안과 같은 중요 문서 작성에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스웨덴 정부의 WPS 어젠다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네 번째 목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정치참여 및 영향력 확대이다. 여성과 소녀들의 대표성 확대, 참여 증진, 영향력 확산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각 조직 내에서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 및 감시 기구에서 젠더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는 일과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서 여성과 소녀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이들의 의견이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에 의한 지배, 인권에 관한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 스웨덴 외교부는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주대륙과 동유럽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보고서 발간 및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종 미디어, 저널리스트, 문화관계자들, 온라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교육 및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다섯 번째 목표는 여성과 소녀들의 경제적 권리와 세력화이다. 여성과 소녀들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며 이에 장애가 되는 각종 차별적 입법, 사회적 규범 및 행동들을 철폐하고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 및 토지, 기술,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무역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여성들이 생산하고 여성들이 운영하며 여성들이 고용인이며 소비자인 분야에서 특히 무역정책을 성주류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섯 번째는 여성과 소녀들의 성적,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에 관한 권리 증진이다.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이러한 권리 증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럽연합과 유엔과 협력하고 각종 기금과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러한 분야를 지원하며 특히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6가지 목표를 위해서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외교의 두 영역에서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외교정책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국제적인 어젠다 세팅과 외교관계 정립의 원칙 영역이다. 국제적인 어젠다 세팅에서는 국제적으로 주요 문제를 논의할 때 젠더적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어젠다를 세팅하고 이렇게 설정한 어젠다를 통해서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새로 설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영역은 외교관계 정립 영역에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인권이라는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구의 발전을 위한 외교관계를 정립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외교정책은 국익에 바탕으로 두고 국익의 증진, 그것이 경제적 이익일 수도 있고 국가의 위신 극대화일 수도 있고 군사적 안보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지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이었다.

이를 위해서 스웨덴 외교부는 내부적으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추진을 위해서 몇가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고안하였다. 첫 번째는 결과기반의 운영이다. 즉 계획, 가버넌스, 자원의 배분, 정책 결과등을 강화하기 위한 결과 기반의 운영방식이다.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이다. 성주류화를 통해서 자원의 재배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과 템플릿과 같은 내부 문서 작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주류화 방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성주류 전략이며 다섯 번째는 충원과 임명에 있어서 성평등이다. 여섯 번째는 국제적인 지위의 임명에 있어서 성평등을 추구한다. 일곱 번째는 성희롱을 방지, 조사,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표 1〉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내용

구분	구체적 내용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영역	국제적인 어젠다 세팅 외교관계 정립의 원칙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목표	여성과 소녀들의 1. 완전한 인권 보장 2. 육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3. 분쟁의 예방, 해결, 분쟁후 평화정착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4.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정치참여 및 영향력 확대 5. 경제적 권리 및 세력화 6. 성적, 재생산관련 건강권리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수단	1. 결과기반의 운영 2. 성인지 예산 3. 가이드라인과 템플릿을 통해 체계적 문서 작성 4. 기금 운영의 성주류화 5. 충원과 임명에 있어서 성평등 6. 국제적 지위에의 임명에 있어서 성평등 7. 성희롱 방지 및 예방, 신속한 대응

### III. 페미니스 외교정책의 이론적 설명

#### 1. 국제 윤리의 실천으로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국제관계이론에 있어서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이다. 즉 다른 국가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자조(Self-help)를 위해서 국익을 추구하지만 다른 국가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가능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관점이다. 주류 국제정치 이론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재구성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젠더불평등이라는 시각은 조금도 없다. 기존의 윤리적 국제관계이론 혹은 규범적 국제관계 이론의 경우에도 정의에 기반한 국제관계의 재구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젠더 불평등, 권력화된 위계질서, 국제적 권력이 젠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윤리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젠더화된 차별, 불평등, 폭력과 여성의 저대표성, 주변화되고 소외된 집단의 사회적 소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외교정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까지 윤리적인 외교정책이라고 할 때에도 그 안에는 젠더불평등에 관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엔안보리 1325 결의가 채택되면서 어쩌면 최초로 윤리적인 외교정책 혹은 윤리적인 국제관계에 젠더개념이 포함되었다. 전통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국제적 행동과 상호작용이 원칙적으로 자조의 추구, 생존, 안보, 그리고 힘으로 정의되는 국익의 극대화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신현실주의자들은 개별국가의 국내적, 국제적 특성보다는 국제정치의 구조에 집중해왔다. 신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제질서의 무정부상태, 지구적 힘의 배분으로부터 나오는 제약들이 국제적 행위자들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무정부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외교 및 안보정책이 윤리적 고려 혹은 페미니즘과 같은 해방적 메시지를 설파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리적 국제관계이론에 대한 한쪽 극단의 평가가 현실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한쪽 극단의 평가는 국가주의적 평가이다. 국가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에서는 정치공동체와 코스모폴리탄적 책무 사이에서 국가는 시민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구성된 이익에 따라서 그것이 도덕의 이름이든 혹은 국민적 유대의 이름이든 간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내부인과 외부인을 차별하지 않는 코스모폴리탄주의는 동일한 도덕성을 국가의 경계내에,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적으로 이타적인 국가의 예는 별로 없다. 이타적인 국가보다는 차라리 국가는 자신의 국익과 안보의 필요를 타자에 대한 고려와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윤리적 외교정책과 국제적으로

좋은 행동 사이 중간쯤에 위치하게 된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부정의를 드러내고 젠더정의를 위한 투쟁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윤리 추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여성의 세력화와 보호를 연구하고 젠더화된 폭력과 불평등을 줄이고 여성이외의 다른 소외된 집단의 이야기와 경험을 드러냄으로서 한 국가가 자기 국경내에 있는 국민들만을 생각하지 않고 한 국가도 국제관계 행위자로서, 국제관계 구성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무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뿌리깊은 가부장적 구조와 젠더적 편견으로 구성된 국제관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제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이미 윤리적 국제관계이론이 외교정책과 안보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시도해왔고 좋은 국제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이러한 전개에 젠더관점을 포함시킴으로 좀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팀 던과 니콜라스 휠러는 1990년대 영국의 맥락에서 노동당 외교담당 서기였던 로빈 쿡(Robin Cook)의 외교정책을 연구했다(Dunne and Wheeler 2001). 이들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좋은 시민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편협한 상업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이전에 질서를 유지해야하고 더 나아가 인권과 이러한 이기적 이익들이 충돌될 때에는 이러한 이익들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내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하지만 인권과 충돌되는 어떠한 국가적 이익 추구도 포기해야됨을 역설함으로 상당히 윤리적인 국가관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질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해당 국가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 추구보다 앞서야하는 것은 타국의, 혹은 멀리 떨어져있는 국가의 국민의 인권 존중이라는 윤리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데이비드 찬들러에게서도 읽을 수 있는데 그는 “외교정책에서 국익추구가 최우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사람 즉 서구 국가들에게 별다른 경제적이나 지정학적 이익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윤리적 도덕적 책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 생각이 점차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했다(Chandler 2003). 찬들러는 윤리적 외교정책이 국가들에게 국내 정치적 필요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국제관계 형성의 시초라는 의견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국내와 국제적인 복종의 젠더적 관행과 형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좋은 국가(good states)’라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자는 외교 및 안보정책을 통해서 국경 넘어서 지구적 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피터 롤러는 국제주의적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 초점을 맞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좋은 국가라는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목표설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Lawler 2005, 441). 이러한 관점들로부터 이제까지 국제관계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좋은 국제 시민이 되는 것, 좋은 국가의 역할 등에 관해서 생각해봐야하며 이러한 관점은 지구적 정치에서 윤리 및 도덕을 중요한 행동의 동기로 받아들여야함을 역설한다.

## 2. 국가중심적 접근 방법의 대안으로서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한편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젠더 평등, 차별, 폭력 등의 문제를 외교정책과 외교정책 담론의 핵심에 두어야한다는 것을 역설해왔다. 이들은 국제관계의 분석단위로서 국가를 가장 적절한 단위로 생각해온 국가중심적 접근 방법을 비판했다. 국가 중심의 제도적 접근 방식은 페미니스트적 윤리적 어젠다를 국제관계에서 부적절한 주제로 인식해왔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국가 중심의 제도적 접근 방식이 가부장적 억압적 권력구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Kantola 2007, 270-83). 시민사회와 초국가주의는 지구적 정치에서 젠더화된 이분법, 권력 관계에 도전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윤리적 전환의 중요한 보루였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타국의 젠더관계를 왜곡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은폐하며 오히려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고 전세계적인 가부장적 질서가 형성되도록 해왔던 것을 페미니스트들은 지적하면서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국제적인 가부장 질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페미니스트 국제관계 이론은 이런 점에서 국가중심적 국제관계 연구를 지양하고 시민사회와 초국가주의적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일 것이다. 페미니스트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초국가적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 개별 시민들이 지구적 부정의에 대한 윤리적 문제제기에 큰 관심을 둔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중요성은 정치 엘리트와 시민사회의 풀뿌리 운동간의 연결에 관심을 두면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과 정치 엘리트가 관심 가지는 사항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규범적인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구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분쟁지역에서의 성폭력, 평화정착과정에서의 여성의 복종 등과 같이 윤리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지구적 부정의로 피해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문회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과 같은 문제를 다룸으로써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국가 간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신디아 인로는 폭력과 갈등에 억압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고 하면서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행해온 젠더화된 관행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하며 국내와 국외의 젠더화된 정의의 구성적 연계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Enloe 2017). 그러자면 당연히 국가주의적인 고려를 벗어나서 전세계적인 정의, 전세계적인 억압구조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국가중심주의로부터 코스모폴리탄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WPS (Women, Peace, Security) 어젠다에 대한 윤리적인 추동에 동의한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스웨덴은 UN안보리 1325 결의의 기본 내용인 젠더 정의, 평화, 안보 원칙을 외교정책의 기본 근간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이다. 같은 맥락에서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역시 WPS어젠다를 그들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적용해온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의 외교정책 관행과 담론으로부터 보다 포용적인 외교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왔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국제사회에 뿌리 깊은 가부장적 권력관계와 관행을 비판하면서 인간안보 담론으로 국제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페미니스트 국제관계이론은 국가 중심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외교정책의 산출을 결정하는 위계적인 권력구조와 젠더화된 경계는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국가제도의 공적 영역은 남성과 남성성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적인 것은 여성과는 관련이 없는 곳이며 여성성은 배제되는 곳이다. 국가페미니즘에는 이러한 것을 비판할 수 있는 변혁적 잠재력은 없다. 국가페미니즘은 이미 국가라는 젠더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의 변화만이 가능하지 국가 그자체, 이런 젠더화된 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해낼 힘은 없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국내문제와 외교문제에서 시민사회가 개입함으로써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개념을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전제로 생각한다.

### 3. 페미니스트 이론과 외교정책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관계연구에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새롭게 외교정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탈구조주의 페미니즘과 더불어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까지도 모두 포괄한다. 이것은 국제질서에서 젠더적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권력의 위계질서를 비판하고 젠더화된 구조를 비판한다. 이제까지의 주류 국제관계이론에서는 국가, 민족, 주권, 정체성을 주어진 독립체로 간주했는데 페미니스트 국제관계이론에서는 이러한 범주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젠더화된 관행과 권력관계내에서 프레임되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양극화된 젠더적 이분법은 주로 분쟁과 전쟁시에 분쟁과 안보위협에 직면했을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소집하는 방식으로서 나타난

다. 이러한 담론은 남성시민과 여성시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에게 부여된 젠더화된 의무는 전쟁시와 평화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외교정책에 페미니즘 관점을 부여하여 국가들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지점에 국제적인 성불평등, 가부장적 억압, 젠더화된 복종을 편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교정책으로 국제 사회의 뿌리깊은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예속에 얼마나 도전할 수 있을까? 대표성과 포함(inclusion)은 페미니스트 정치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이것은 공적 영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여성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초기 참정권 운동에서부터 나타났던 주제이다. 그러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서 여성의 저대표성은 놀라울 정도로 두드러진다. 지난 수십년간 상당히 의미있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제문제에 있어서 통계수치에 나타난 여성의 저대표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래서 1325 결의는 이 문제를 강조했다. 1325결의가 채택될 때부터 몇몇 국가에서는 페미니스트, 친여성적 규범을 외교정책에 포함시켰고 젠더정의와 성공적인 평화정책과정에서 주요한 문제로 대표성의 문제를 거론하여왔다. 스웨덴 정부는 분명히 외교정책의 3가지 중점 과제<sup>1)</sup>의 하나로서 대표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평화협상과정에 여성들이 충분히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여성들의 참여가 분쟁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보다 균형잡힌 권력 배분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2012년 분쟁 중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 가운데 여성은 2.5%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분쟁 중재 행위자 중에서는 9%밖에 되지 않았다(UN Women 2018).

#### IV.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현실적 한계

외교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선택과 양보 및 타협을 통해서 윤리적 정의 추구와 국익 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영국, 호주, 스웨덴의 외교정책들은 WPS 어젠다의 윤리적인 측면에 기반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기 수출국인데 사실상 이런 그 국가의 모습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들이 WPS 어젠다의 규범적인 이상이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인식하는 국익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친여성적 정책을 ‘소프트 혹은 스마트 외교’로

1) 다른 두 과제는 여성의 권리(Rights)와 자원의 재분배(Resources)이다. 2014년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처음 표방했을 때 그 과제는 3R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9년의 행동강령에는 6가지 목표로 그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었다.

프레임하는 것은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려는 일종의 우회전략이다(Wallström 2016). 캐나다의 경우에도 평화행동주의와 소프트 파워 외교를 다른 국가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하드 파워와 함께 추구한다(Wright 2018).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규범적인 측면과 국익추구 측면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외교정책에서 실용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구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실용주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국가가 윤리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윤리적이고 국제적으로 윤리적 책무를 강조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군대나 군비를 배격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윤리적인 고려와 국가의 군사적 안보문제 사이의 긴장을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2015년 스웨덴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외교적 갈등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스웨덴의 외무장관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가혹한 형사제도와 여성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비판하자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것을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외교단절까지도 검토한다고 위협하였다. 사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스웨덴의 중요한 무기 수입국으로서 스웨덴 기업들에게는 외교가 단절되면 안되는 중요한 국가였다. 결국 기업들의 반발에 직면한 스웨덴 정부는 총리의 사과로 이를 무마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윤리적 외교정책은 자칫 국가 이익과의 충돌이 올 수도 있고 이것은 국내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두 번째의 한계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은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젠더화된 이익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세력화를 위해서 자원의 재분배를 강조한다면 국경넘어 멀리 국가들에 있는 기득권 남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제적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으로 그 국가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세력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행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남성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자칫 국가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고 서구 국가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문화적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의 위계와 젠더화된 제도는 쉽사리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Chandler, David, 2003, "Rhetoric without Responsibility: The Attraction of Ethical Foreign Policy"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5(3)
- Chodorow, Nancy,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nne, Tim and Nicholas Wheeler, 2001, "Blair's Britain: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in Karen E. Smith and Margot Light eds. *Ethic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Enloe, Cynthia, 2017, *The Big Push: Exposing and Challenging the Persistence of Patriarchy*. Oxford: Myriad
- Hudson, Valerie and Patricia Leidl, 2015, *The Hillary Doctrine: Sex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ntola, Johanna, 2007, "The Gendered Reproduction of the St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9(2)
- Lawler, Peter, 2003, "The Good State: In Praise of "Classical" Internation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1(3)
- Ruddick, Sara, 1989, *Maternal Thinking: Towards a Politics of Peace*, Boston, MA.:Beacon Press
- Tronto, Joan C., 1994,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 Wallström, Margot, 2016, "Mediation: The Real Weapon for Peace" Huffington Post 29, January  
[https://www.huffpost.com/entry/mediation-the-real-weapon-for-peace\\_b\\_9092268](https://www.huffpost.com/entry/mediation-the-real-weapon-for-peace_b_9092268)(2020.8.23일 접속)
- Wright, Elana, 2018, "Trudeau Government Brings an Ambitious Feminist Vision to Canada's Foreign Policy, but no Budget to Bring It to Light"  
<https://www.cidse.org/2018/01/19/trudeau-government-brings-an-ambitious-feminist-vision-to-canada-s-foreign-policy-but-no-budget-to-bring-it-to-light/>(2020.8.29일 접속)
- Young, Iris Marion, 2003, "The Logic of Masculinist Protection: Reflections on the Current Security State" *Signs*, 29(1) Swedish Foreign Service Action Plan  
<https://www.government.se/499195/contentassets/2b694599415943ebb466af0f838da1fc/the-swedish-foreign-service-action-plan-for-feminist-foreign-policy-20192022-including-direction-and-measures-for-2020.pd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코로나19 최전선의 여성들과 돌봄 위기: 새롭고도 오래된 과제

심예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 코로나에 남녀가 어디 있는가?

성평등 의제에 있어 기념비적인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맞이한 2020년은 지난 사반세기의 성과를 충분히 되짚어볼 여유도 없이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진 일상 가운데 다시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성평등과 코로나19 위기”를 주제로 9월 3~4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여성가족부 주최 첫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상에도 여러 의견이 게재되었다. 그중에는 “코로나는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취약한 전염병인데 거기에 남녀가 어디 있나? 왜 여성 이야기만 하는가?”라는 취지의 의견도 꽤 눈에 띄었다.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각도에서 연구 결과와 현장의 경험들을 들려주었는데 귀를 막은 채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이들이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2020년 현재 코로나에 남녀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은 새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래된 질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 운동가들과 여성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질문들과 싸우며 이 사회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많은 젠더화된 규범과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테면 “국가는 전 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거기에 남녀가 어디 있는가? 노동시장은 효율성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곳인데 거기에 남녀가 어디 있는가? 인권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인데 거기에 남녀가 어디 있는가? 가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데 왜 국가가 개입하는가?” 등의 질문들이다. 여전히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은 낮고, 빈곤의 여성화가 심각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가정폭력 건수가 신고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수집되는 양적 데이터 외에도 소위 성 중립적(gender-neutral)이라고 여겨지는 제도들의 사실상 성 몰인지적 특성(gender-blindness)으로 인한 일상에서의 차별과

인식의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치는 충격 강도에서 과거의 스페인 독감 등을 뛰어넘는 비상사태임이 분명하다. WHO 공식 통계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전 세계 약 87만 명의 사망자와 2천 6백만여 명의 누적 확진자 수가 기록되었으며, 이 수는 실시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sup>1)</sup> 국내에서도 300여 명의 사망자와 2만 1천여 명의 누적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시키며 전 국민의 불필요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했다.<sup>2)</sup> 대다수의 유·초·중·고교 역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1학기에 이어 2학기마저 정상적인 개학이 연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장기간 지속된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이른바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조차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사태까지 초래했으며, 치료제나 백신 개발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각 부문 및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운동을 이어온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여성 운동가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새삼 부각되는 젠더 이슈가 “익숙하게” 다가오는 측면은 무엇일까? 이 짧은 글은 성평등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에서 어떠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특히 돌봄 경제를 중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코로나19 최전선과 여성의 임금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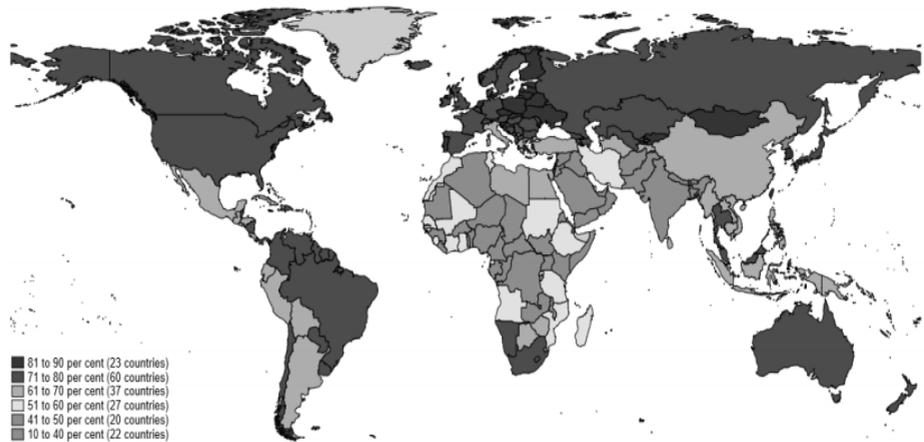
보건의로 종사자들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5월 WHO가 발표한 104개국 의료 인력의 성평등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의료 및 사회 부문에서 70%를 차지하고, 남성과 비교하면 더 적은 여성이 전일제 고용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약 28%의 의료 인력 성별임금격차가 집계되었다. 직종과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성별임금격차는 11%p이다. OECD 국가에서는 여의사 비율이 2000~2017년 13%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의사는 남성 비율이, 간호사는 여성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남성 의사 비율이 72%로 가장 높고, 여성 간호사 비율은 유럽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3)</sup> 2020년 ILO에서 발표한

1) <https://covid19.who.int/>

2) <http://ncov.mohw.go.kr/>

3) WHO 2019.

의료 및 사회복지(health and social work) 부문 여성 종사자 비율은 189개국 중 23개국이 81~90%, 60개국은 71~80%, 37개국은 61~70%, 27개국은 51~60%를 차지했다(그림 1).<sup>4)</sup> UN Women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성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는 이러한 성별 직업분리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 7,329명 중 71.8%가 여성 종사자였으며, 미국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자 9,282명 중 73%가 여성 종사자, 이탈리아에서는 감염된 보건의료인 20,797명 중 69%가 여성이었다.<sup>5)</sup> 이들은 실질적 감염 위험 외에도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등으로 인한 감정고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출처: ILO 2020.

**[그림 1]** 2020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 여성 종사자 비율

보건의료 부문 외에도 ILO는 일자리 상실과 근로시간 단축 측면에 있어 코로나19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고위험 부문을 지정했다.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부동산업·비즈니스 및 행정, 제조업, 도·소매 무역 등 4개 취약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은 2020년 전 세계 5억 2천 7백만 명이며, 이는 총 여성 고용률의 41%를 차지한다. 남성은 35%가 이 4개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제 규모별로 구분하면 고·중소득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여성의 경우 48.9%, 남성은 39%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며, 4개 취약 부문이 여성 고용률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여성 고용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4대 취약부문 여성 종사자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가사 노동 등 비공식 경제 종사자일수록 자기금융의존도가

4) ILO 2020.

5) <https://data.unwomen.org/features/covid-19-and-gender-what-do-we-know-what-do-we-need-know>

높아 장기간 수익이 없을 경우 영업 중단 위기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에 종사하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경우 고소득 국가의 경기침체에 따라 주문 및 거래 등이 지연되면서 보다 극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젠더가 인종, 국적, 연령, 이주 여부, 장애 여부, HIV 감염 여부 등 다양한 정체성과 교차할 때 성별 간 혹은 여성 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sup>6)</sup>

### 3. 또 하나의 코로나19 최전선, 돌봄 노동의 현장

보건의로 종사자들이 매일같이 땀 흘리고 있는 확진자 선별진료소와 의료센터 등의 현장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최전선이 있다면 그곳은 봉쇄조치 등의 이동제한으로 인해 대다수의 일상의 주 무대가 되어버린 가정, 곧 돌봄의 현장이다. 무임금 돌봄 노동(care work)은 가정 내 혹은 지역사회 타인의 웰빙과 건강을 지속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무보수 노동으로서 직접 돌봄과 가사노동 등의 간접 돌봄을 포함하며, 신체적·심리적·정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과 관계를 뜻한다.<sup>7)</sup> ILO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 매일 전 세계 164억 시간이 무임금 돌봄 노동에 할애되었으며, 이는 20억 명이 1일 기준 8시간을 무보수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예외없이 그중 3분의 2는 여성들의 몫이었다.<sup>8)</sup> 코로나19 발발 이후 봉쇄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 보육시설, 장애인 및 고령인구를 위한 공공시설이나 서비스가 중단되고 임금 가사노동자들을 찾는 것도 평소보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코로나19 위기는 한 편으로 돌봄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들의 가중된 돌봄 노동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의 보건의로 종사자들 역시 예외 없이 각자의 가족을 위한 양질의 돌봄을 보장받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택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거 형태나 형편에 따라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임금 노동과 돌봄·가사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다. UNESCO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200개국 유치원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 인구 90% 이상, 혹은 15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시적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해 역사상 최대의 학습 공백을 겪고 있다.<sup>9)</sup> 미취학 혹은 저학년 아동일수록 가정에서 홈스쿨링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UNFPA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폐쇄는 여아 및 여성의 무임

6) ILO 2020.

7) ILO 2018.

8) 64개국 생활시간조사에 기반한 예측치이며, 이는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66.9%에 해당한다(ILO 2018).

9) UNESCO 2020.

금 돌봄 노동을 가중시켰다.<sup>10)</sup> 또한 유럽의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2014년에 지난 12개월 간 65세 이상 조부모의 아이 돌봄 제공 행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모의 비율이 조부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UN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코로나19 위기를 뒤쫓아오는 그림자와 같은 또 하나의 팬데믹(a shadow pandemic)이라고 명명했다.<sup>12)</sup> 에볼라를 겪으며 이미 감염병 위기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봉쇄조치나 재택근무 등 이동의 제한은 특정 조건의 여성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ILO 역시 코로나19 발발 이후 많은 국가에서 가정폭력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택근무라는 근무 형태가 근로자들을 가정폭력 위협에 더욱 노출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재정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적 지원망과의 연결차단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가정폭력 외에도 재택근무와 관련해 온라인 상의 폭력과 성희롱, 정신건강과 웰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4.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 우선순위 재설정을 위한 기회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하면 돌봄 공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성평등 달성에 있어 위기가자 기회로 여겨진다. 이러한 뉴 노멀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페미니스트 학자들과 여성 운동가들에게는 한 편으로 익숙한 이슈이다. 먼저 여성 대표성에 대한 논의이다. IL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과학적 태스크포스팀에 여성이 평등하게 대표되기보다는 참여 전문가 중 최대 25% 정도만이 여성이라고 집계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얼마나 여성에게 주어진 공간이 제한적인가, 유리 천장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13)</sup> 이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상위 의사결정 지위에 있어 여성의 부재, 지속적인 성별임금격차, 가정 및 직장에서의 차별과 성희롱, 무임금 돌봄 노동 등으로 인한 여성의 이중부담 등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갑자기 나타났다가 보다는 그동안 늘 존재해 왔던 문제들이 코로나19

10) UNFPA 2020.

11) UN Women 2020a.

12) UN Women 2020b.

13) ILO 2020.

위기로 인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관리직과 여성 리더 비율은 지난 30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 국가원수직의 10% 미만만이 여성이며, 보건의로 부문에서는 20% 조직만이 이사직에서 동등한 남녀 비율을 이루고 있다. 유엔사 무총장 보고서 또한 전 부문에 걸쳐 경제 계획 및 긴급 대응 시 여성을 의사결정에 포함하지 않은 정책의 경우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며, 모든 코로나19 대응 설계 및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를 범분야 우선순위 중 하나로 상정하였다. 여성 개개인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의 대응 최전선에 있는 여성 조직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sup>14)</sup>

## 5. 돌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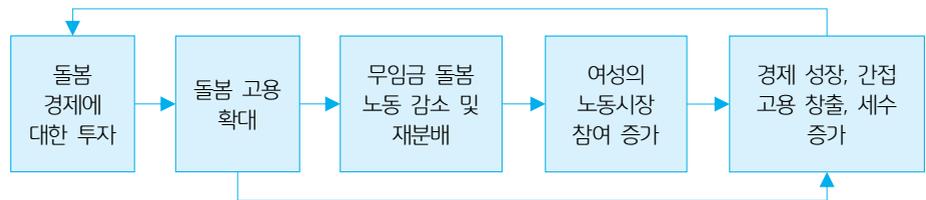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명백히 드러난 돌봄 위기에 있어서는 단기 및 장기적 대응으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UN Women에서 제시하는 단기적 지원 방안으로는 임금 및 무임금 돌봄 노동자들을 필수 인력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근무지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돌봄 제공자들에 한하여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든가 안전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추가 수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5월 기준 전 세계 87개국에서 비기여제(non-contributory) 현금 지원제도를 확대했다.<sup>15)</sup> 현금지원 자체가 돌봄 비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유자녀 가정이나 여성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UN Women은 이러한 지원제도는 가사 서비스 등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의로 종사자들이 현재 코로나19 대응 필수 인력으로 투입된 상황에서 이들에게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단기적으로 바로 시행 가능한 조치이다. 한국의 아동 수당 증가 사례가 이에 해당하며, 개발도상국 맥락에서는 위기 대응에 있어 식량, 식수, 위생 시설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더욱 많은 남성과 아버지들이 자녀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들의 재택근무 동안 이러한 무보수 책임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도구이다.

UN Women 보고서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여성이 그동안 늘 해왔던 무임금(unpaid) 혹은 저임금(poorly paid) 돌봄 및 가사 노동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추 역할

14) UN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2020.

15) UN Women 2020a.

(backbone of the COVID-19 response)을 하고 있다. 여성은 하루 평균 4.1 시간을 무임금 돌봄·가사 노동에 할애하는 반면, 남성은 같은 일을 위해 1.7시간을 사용한다. 보건 의료에 대한 여성의 무임금 노동의 기여도는 전 세계 GDP의 2.35%로 환산할 수 있다.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돌봄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GDP의 9%, 무려 11조 달러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이다.<sup>16)</sup> ILO는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돌봄 고용의 확대, 무임금 돌봄 노동의 감소와 재분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선순환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미 코로나19 위기에 훨씬 앞서 제시한 바 있다(그림 2). 그렇다면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장기적 대응 방안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ILO 2018.

[그림 2] 돌봄 경제 투자의 선순환

돌봄 경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코로나19 위기에 한참 앞서서 발전되어 왔으며,<sup>17)</sup> 대표적으로는 5R 접근법이 있다(표 1).<sup>18)</sup> 인간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나 주체로 살아가는 시점을 겪는다. 따라서 이 작업은 바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의 가치를 측정하는(“value the invaluable”) 작업으로 표현된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돌봄의 요구를 채우는 통합적인 돌봄 체제에 대한 논의와 수립을 각 정부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인정을 위해 유급 휴가 혹은 연금 제도를 논의해 볼 수 있으며, 식수·전기·교통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돌봄 노동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적정 가격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으로부터 사회로 무임금 돌봄 노동을 재분배하고 보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돌봄 노동자들과 수혜자들의 대표성 확대 방안을 우선시할 수 있다.

16) ILO 2018.

17) Williams 2018 등.

18) Recognize, Reduce, Redistribute, Reward, Representation

〈표 1〉 양질의 성평등한 돌봄 노동을 위한 5R 분석틀

주요 정책 분야	정책 권고	정책 이행 방안 (예시)
돌봄 정책 거시경제 정책	무임금 돌봄 노동 인정, 감소, 재분배 (Recognize, reduce, redistribu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형태의 돌봄 노동 측정 및 의사결정에 있어 무임금 돌봄 노동 고려</li> <li>• 양질의 돌봄 서비스 및 돌봄 관련 인프라에 투자</li> <li>• 모든 근로자를 위한 가족친화제도 이행</li> <li>• 성평등한 가정, 직장, 사회를 위한 정보와 교육 제공</li> <li>• 남녀 모두를 위한 휴직제도 (공적자금)</li> </ul>
사회보호 정책	돌봄 노동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Rew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돌봄 노동자들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달성</li> <li>• 여성과 남성 돌봄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li> <li>• 이주 돌봄 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li> </ul>
노동 정책	돌봄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 (Re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경제, 공공 분야 등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 리더십의 동등한 기회 및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보장</li> <li>• 돌봄 노동자 및 고용주의 결사의 자유 촉진</li> </ul>
이주 정책		

출처: ILO 2018.

## 6. 맺으며: 여성의 시간과 노동은 무한자원이 아니다

돌봄 경제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마련하자는 논의는 코로나19 위기에 앞서 이미 수많은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오고 주장해온 이슈이다.<sup>19)</sup> 경제적 생산 영역과 달리 사회적 재생산 혹은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은 “바닥없는 우물 (bottomless well)”, 즉, 무한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sup>20)</sup>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 양날의 검과도 같다.<sup>21)</sup> 무임금 돌봄 노동에 대한 1차 책임자는 당연히 여성이라는 사회 규범이 그대로 있는 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들에게 이중부담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sup>22)</sup> 글로벌 금융 위기의 젠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여성학자에 의하면 위기 상황은 사회적 규범, 즉 인간의 행동방식과 제도를 빚는 사회적 행위와 아이디어를 강화하는 한편, 규범의 전환을 가져올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sup>23)</sup> 주류 경제학에서의 가정과 달리 노동력은 스스로 생산되는 것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세대에 걸쳐,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재생산되어야 하는 자원이다. 영유아 자녀 돌봄, 취학 아동 교육, 부모 돌봄, 의식주 제공 등의 모든 과정은 인간의 웰빙 보장을 위한 투입과 산출이며, 모든 정책 부문에 있어

19) Seguino 2020 등.

20) Elson 2004.

21) Kabeer 2014.

22) Pearson 2014.

23) Elson 2010.

돌봄 경제는 국가와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돌봄 위기와 관련된 젠더 이슈는 성 몰인지적 사회 구조와 맞서 투쟁해온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과제이겠으나, 유례없는 강도와 파급력으로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있는 금번 코로나19 위기가 이를 더욱 절박한 이슈로 끌어올리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OECD 역시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환경파괴적인 투자행위와 활동을 지양하고 웰빙과 포괄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24)</sup> 그러나 사람중심의(people-centred) BBB 주요 부문으로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순 제로(net-zero)’ 배출, 기후 회복력 강화, 생물다양성 회복,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에는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재건을 위해 오늘도 예외 없이 희생되고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제2의 혹은 제3의 코로나19가 될 수도 있을 환경 및 기후 위기 관련 성별분리통계나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위기 이후 재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 노동은 또다시 비가시화 영역으로 주변화되기 쉽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돌봄을 글로벌 지속가능성과 사회 정의 이슈로 재정 의하고 장기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진정한 “build back better”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Elson, D. 2004. ‘Social Policy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tegrating ‘the Economic’ and ‘the Social’’, in Mkandawire, T. (ed.), *Social Policy in a Development Contex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2010. “Gender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developing countries: a framework for analysis”, *Gender and Development*, 18(2): 201-212.
- ILO 2018. *Care work and care jobs: For the future of decent work*.
- 2020. *The COVID-19 response: Getting gender equality right for a better future for women at work*.
- Kabeer, N. 2014. ‘The Rise of Female Breadwinner: Reconfigurations of Marriage, Motherhood and Masculinity in the Global Economy’, in S. Rai and G. Waylen (eds), *New Frontiers in Feminist Political Economy*.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 OECD 2020. *Building back better: A sustainable resilient recovery after COVID-19*.
- Pearson, R. 2014. ‘Gender, Globaliz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Labour: Bringing the State back in’, in S. Rai and G. Waylen (eds), *New Frontiers in Feminist Political Economy*.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 Seguino, S. 2020. “Engendering macroeconomic theory and policy”, *Feminist Economics*, 26(2): 27-61.

24) OECD 2020.

- UNESCO 2020. Building back equal: Girls back to school guide.
- UN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 UNFPA 2020. State of the World Population Report 2020.
- UN Women 2020a. COVID-19 and the care economy.
- 2020b.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WHO 2019. Gender equity in the health workforce: Analysis of 104 countries.
- UN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 UNFPA 2020. State of the World Population Report 2020.
- UN Women 2020a. COVID-19 and the care economy.
- 2020b.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 WHO 2019. Gender equity in the health workforce: Analysis of 104 countries.
- Williams, F. 2018. “Care: Intersections of scales, inequalities and crises”, Current Sociology Monograph, 66(4): 547-561.



# 물과 젠더: 개도국 현황과 SDG 6번과 5번의 달성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1. 들어가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번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10명 중 3명은 안전한 식수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고, 10명 중 6명은 안전한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수인성 질병과 위생과 관련한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다.<sup>1)</sup> SDG 6번 목표에서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수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물의 질과 접근성은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깨끗한 물과 위생에의 접근과 사용은 SDG내 17개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기초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SDG 6번 물과 위생 목표는 SDG 5번 성평등 목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빨래, 설거지, 요리, 청소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들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육아와 돌봄을 수행하는 데에도 몇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과 여성을 지원하는 국제단체들은 물 공급과 물의 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과 모성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구호 활동을 진행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는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강조하면서, 여아들의 물 접근성과 모성 보건에 있어서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지속가능발전포털 내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http://ncsd.go.kr/unsdgs?content=2#unsdgs6> (접속일 2020.9. 8.)

이러한 물과 젠더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0년 9월 4일,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에서는 “2020 물과 젠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sup>2)</sup> 동 포럼에서는 국내외 물과 젠더와 관련된 전문가들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물과 젠더와 관련한 심도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이 포럼에서 SDG 5번과 6번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는 발제자로 참여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이 발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2. 물과 젠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의 접근

개도국에서는 깨끗한 물에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유니세프(UNICEF)에서 실시한 1일 물을 길는 왕복 시간 조사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농촌 33분, 도시 25분, 아시아의 경우 농촌 21분, 도시 19분이 소요된다.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튀니지, 예멘의 경우 편도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sup>3)</sup>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환경에 사는 이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상수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물길는 일은 여성과 여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말라위의 경우, 여성들은 하루 54분, 남성들은 6분을 물 길는데 사용한다. 기니와 탄자니아의 여성들이 물 길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평균 20분이며 이는 남성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다.<sup>4)</sup> 말라위 농촌 여성의 시간 사용 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주당 13시간을 밥 짓고, 물길고, 빨래하는 등의 노동에 더 소비하는데, 그 중 물길기는 총 6시간, 빨감 구하기에는 총 2시간이나 소요된다.<sup>5)</sup> 개도국 여성과 여아들은 평균 매일 6킬로미터(일주일 에 15시간)를 걸어서 20리터의 물을 운반하고 있다.<sup>6)</sup>

2)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는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자연과학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로 설립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물 안보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http://unesco-iwssm.org/centerIntro/intro>) (접속일 2020.9. 8.)

3) “UNICEF: Collecting water is often a colossal waste of time for women and girls,” (29 August 2016)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collecting-water-often-colossal-waste-time-women-and-girls> (접속일 2020. 09. 03)

4) “UNICEF: Collecting water is often a colossal waste of time for women and girls,” (29 August 2016)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collecting-water-often-colossal-waste-time-women-and-girls> (접속일 2020. 09. 03)

5) “The time poverty trap: Rural women’s poverty of time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smallholder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October 23, 2014) <https://ifad-un.blogspot.com/2014/10/the-time-poverty-trap-rural-womens.html> (접속일 2020. 9.1.)

6) “How water impacts the lives of girls,” <https://plancanada.ca/infographic-how-water-impacts-the-lives-of-girls> (접속일 2020. 9. 3.)

개도국의 특히 농촌지역에서 물기는 것은 여성 중에서도 여아들의 몫인데, 이들이 물기는 시간 동안 다른 기회들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여아들은 물을 길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시간이 없다. 학교에 간다고 해도, 학교에 화장실이 없거나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들에게는 생리 중에 학교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거나 아예 자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등교육 이수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달성하였으나, 중등교육부터 여아의 등록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생리를 시작한 여학생들의 중퇴률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반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과 성별분리화장실이 학교와 집 근처에 확보된다면,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성별분리화장실이 있다면, 여학생들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물에 접근이 어려운 점은 생활공간으로부터 물공급원까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먼저 여성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물을 길는 작업 자체가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게 하고, 물의 무게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킨다. 물의 무게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Geere and Hunter 2010)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남아프리카 특정 지역 6개 마을 조사 결과, 여성들은 평균 19.5 kg 무게의 물을 가지고 337m의 거리를 운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 여성들의 69%는 목과 허리 통증, 38%의 여성들은 목 통증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eere, Hunter, and Jagals, 2010). 가뭄이 극심한 곳에서는 물을 길는데 하루가 꼬박 소요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sup>8)</sup>

아울러 물 기는 곳의 위치에 따라 여성과 여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물을 기는 곳이 외진 곳에 있거나, 이동하는 길이 한적하거나 숲속인 경우, 가로등이 없는 경우 등 여성과 여아들은 물 기는 중에 다양한 경로로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아래 <표 1>은 인도적지원에 있어서 젠더기반폭력(GBV)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물공급 위치가 사람들이 과도하게 붐비는 곳인지, 한적한 곳인지, 변화 상권 근처에 위치하는지 등을 체크하도록 조언하고 있다(GBV AoR 2019:252).

7) "How water impacts the lives of girls," <https://plancanada.ca/infographic-how-water-impacts-the-lives-of-girls> (접속일 2020. 9. 3.)

8) "Searching for Water in Ethiopia: A Day in the Life," (UNICEF,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40qZqVBUHUK#action=share> (접속일 2020. 9. 3.)

〈표 1〉 인도적지원 시 급수 지점과 급수시설에 대해 고려해야 할 질문

- Are there any water points which do not seem to be very popular, or not being used? Are they close to any other facilities which could affect access to the water points?
- Are there any water points which seem to be too popular? Where are they placed? What are the access routes to these water points?
- What are all of the most heavily used access routes from the shelter blocks to the water points? Are there any routes which do not seem to be used? How long and indirect do any alternative routes look?
- Is there lighting around the water points? Is there any visual evidence to show whether the water points are accessible during the night as well as during the day?
- Is there any evidence (e.g. old barbeque fires), of large social nightlife areas near the water points?
- Do the water points have shops or stalls nearby? Are the shops or stalls run by men or by women? Are the water points with shops or stalls more popular than the ones without shops or stalls?

출처: (GBV FoR 2019:252).

물접근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하지 않은 물의 질(quality)도 여성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먼저 건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오염된 물로 인해 콜레라, 트라코마(trachoma)와 같은 수인성 질병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만 특정 질환은 여성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트라코마는 결막염의 한 종류로서, 비위생적인 물·위생 환경에서 자주 감염되는데, 특히 3세 이하의 영유아 감염율이 높다. 따라서 요리, 빨래, 청소 등 대부분의 가사노동이 물과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영유아 돌봄의 책임이 있는 여성과 여아들의 감염률이 높은 전형적인 젠더적 질병이다 (The Carter Center, 2009). 아울러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물 부족 상황에서의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은 물은 모유 수유 중인 엄마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여성과 여아는 물길기는 물론 가정 내에서 돌봄 (caregiving)의 의무도 수행하게 되는데, 오염된 식수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여성과 여아들의 노동을 가중시킨다.9)

9) "The Water Burden: Girls and Women Lack Safe Water," <https://www.unicefusa.org/mission/survival/water/water-burden-girls-and-women-lack-safe-water> (접속일 2020. 9. 8.)

###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의 물과 젠더

2015년 수립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는 독자 목표 5번에서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 목표는 총 9개의 세부목표와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세부목표 구성을 살펴보면, 5.1은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5.2는 젠더기반폭력 근절, 5.3은 유해한 관습 근절, 5.4는 무보수 노동 및 돌봄 인정, 5.5는 여성 의사결정 및 리더십 증진, 5.6은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5. a 경제자원접근 강화, 5. b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확대 5.c 성평등 달성을 위한 법, 정책, 제도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표 2> 참고) 아울러 성평등은 SDG 내 17개 목표의 세부목표와 지표 차원에도 주류화(cross-cutting) 되어 있다

<표 2> SDG 5번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세부목표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부여
5.5	정치·경제·공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6	국제연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보건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물은 성평등 목표 5번 중에서도 세부목표 5.2, 5.4, 5.5, 5.6, 5.a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물을 걷는 급수 위치 선정, 거리 단축,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하여 물을 걷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세부목표 5.2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수질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건설을 통해 급수와 배수를 개선하는 것은,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또한 물을 걷는 활동을 남성과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세부목표 5.4 무보수 및 돌봄 노동의 인정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세부목표 5.6.과도 연계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의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세부목표 5.5의 측면에서, 마을과 도시의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여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들이 물을 걷는 동선 및 소요 시간 단축, 안전한 환경 조성, 여성들 자신 및 가족원의 건강 문제 등 관련된 제반 사항이 수자원 관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6번 물과 위생 목표에서는 세부목표 6.2에서 여성과 여아가 한 번 언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부목표나 지표 차원에서 성평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물 목표가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여성과 관련이 높은 목표임을 고려할 때, 6번 목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과 여아를 주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번의 세부목표 차원에서 여성과 여아를 고려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부목표 6.1과 6.2인 식수와 위생에서의 접근과 6.3인 수질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여성과 여아의 육아와 돌봄,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도 예방할 수 있다. 물과 관련된 생태계 보호인 세부목표 6.6과 물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인 세부목표 6.b를 위해서 여성과 여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표 3〉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세부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정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2030년까지 오염 저감,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과 배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전 세계에서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대폭 증진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사용 효율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과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확대한다.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 4. 물과 젠더를 위한 접근 방안

본고에서는 물과 여성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이 두 요소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물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까?

젠더와 개발 학자인 캐롤라인 모저(Caroline Moser)는 여성의 필요에는 실제적 젠더 요구(practical gender needs)와 전략적 젠더 요구(strategic gender needs)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적 젠더 요구란 여성들이 한 사회 내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성별 노동분업 내의 역할이나 지위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들이며, 특히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요구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식량 및 주거,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필요가 포함된다. 전략적 젠더 요구는 남성우월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구조와 규범을 타파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되는 요구들인데, 여기에는 남녀임금격차해소, 성별 노동분업 타파, 여성의 법적 소유권 획득 등과 같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충족되는 필요들을 가리킨다(Moser, 1993).

모저(Moser)의 틀로 본다면, 앞서 검토한 여성과 여아들의 물 접근성 향상과 수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여성들의 실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영역에 속한다. 현재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물과 관련된 실제적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운반이 용이한 물통 제공, 성별 분리 화장실 건축, 왕래가 빈번한 곳에 급수 시설, 우물, 가로등 설치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여성들의 실제적 요구를 채워 주는 일은 모두의 생존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적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하여도, 한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지속된다. 여성들은 현재 물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물과 식량관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권한은 매우 낮다. 이는 물과 관련된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로 인해 여성과 여아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아울러 수자원 관리 및 배분과 관련된 국가 물 고위결정직에 여성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UN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환경부나 자연관리, 에너지 분야의 장관직의 6%만이 여성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농업부나 토지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sup>10)</sup> 아울러 물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사일의 경우도 여성이 대부분의 농사일을 해도, 농지 소유는 남성만 허용되거나 아들에게만 증여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러한 점은 여성의 전략적 젠더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며, 여성들이 법,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 할 수 있고, 농촌 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자원에 접근하도록 소유권을 보장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10) "Women Spend 40 Billion Hours Collecting Water"

<http://www.ipsnews.net/2012/08/women-spend-40-billion-hours-collecting-water/> (접속일 2020. 9. 8.)

## 5. 맺으며

현재 전 지구 차원의 유례없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여 젠더와 물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염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손씻기와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돌봄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물과의 접촉도 예상되는 현실이다. 특히 상수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과 분쟁이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 거주 여성들의 경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확보를 위해 소모하는 시간과 노동의 강도는 날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수도가 잘 발달하고, 물부족과 물안보가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홍수, 산불,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물안보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글로벌차원의 환경담론과 개발담론이 만나 합의된 목표이며, SDGs 내 다양한 목표들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과 젠더를 연계시켜 풀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젠더 전문가와 물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 두 영역에서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와 담론을 SDGs의 틀 안에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SDGs의 철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고가 이를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 The Carter Center (2009), *Women and Trachoma: Achieving Gender Equity in the Implementation of SAFE*. Atlanta, GA
- GBV AoR (2019). *Handbook for Coordin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Emergencies*. Global Protection Cluster.  
[https://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wp-content/uploads/2019/06/report/handbook-for-coordinating-gender-based-violence-interventions-in-emergencies/Handbook\\_for\\_Coordinating\\_GBV\\_in\\_Emergencies\\_fin.01.pdf](https://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wp-content/uploads/2019/06/report/handbook-for-coordinating-gender-based-violence-interventions-in-emergencies/Handbook_for_Coordinating_GBV_in_Emergencies_fin.01.pdf) (접속일 2019. 9. 5).
- Geere, J.L., Hunter, P.R. & Jagals, P. (2010). "Domestic water carrying and its implications for health: a review and mixed methods pilot study in Limpopo Province, South Africa." *Environ Health* 9, 52.
- Huq A, Yunus M, Sohel SS, et al. (2010). "Simple sari cloth filtration of water is sustainable and continues to protect villagers from cholera in Matlab, Bangladesh." *mBio*. 1(1)
- Moser, Carolin (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Practice and Training*.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만나고 싶었습니다

- 경찰청

이성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성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면담 중인 이성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진행자** 🗣️ 바쁘신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최무현 교수입니다.

**기획팀** 🗣️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박사논문 쓰시고 현재 상지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 ●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과정과 담당업무 및 성과

**진행자** 🗣️ 경찰청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우위의 조직으로 알려진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과정에 초기부터 함께 하셨는데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신설과정과 수행업무,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개하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면 합니다.

**이성은** 🗣️ 경찰청은 2018년 3월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는 중앙부처에서 경찰청이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 ▶ 성평등위원회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설치 배경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현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에 설치되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조직 내 성평등 제고, 성평등 실현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3월,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부서 신설 권고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부서장을 성평등정책 전문가로 외부에서 임용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 기존 경찰들에 의해 부서가 신설될 경우, 남성중심적인 계급조직에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공채를 통해 성평등 정책 전문가인 제과 부서장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장뿐 아니라 팀장에 해당하는 5급 사무관도 전문가가 임용되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초기 세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팀은 기획, 또 한 팀은 운영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기획은 전문가인 5급 사무관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저와 같이 두 명의 전문가가 외부에서 채용되어 부서장인 과장과 기획팀 팀장이 된 거죠. 다른 부처의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과장이 기존의 공무원으로 배치된 곳도 있었는데 성평등정책 추진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아 정책 추진성과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관으로 3월 31일 임용되고 바로 ‘2018~2019년 경찰청 성평등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월 16일에 성평등위원회를 바로 출범시켰습니다.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출범까지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실시했습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지금까지 보면 성평등위원회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정기회의뿐 아니라 여러 차례 분과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거의 1년에 8~9회는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청이 성평등 추진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안 됐는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부서 내에서 수행되는 전문가-경찰 간의 거버넌스 실현인데, 우선 성평등 정책 전문가인 관리자가 정책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찰인 직원들은 다른 국·관의 경찰들이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능의 특성에 맞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또한 중요한 거버넌스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행결과를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이행점검을 합니다.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는 2년여 동안 눈에 보이는 몇몇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경찰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하는 주요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정식 직제가 되는 데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 소속기관에 ‘양성평등전문인력’ 채용

다른 부처하고 다르게 경찰 조직은 규모가 큰 전국조직이자 집행조직입니다. 국가 공무원의 대략 30%가 경찰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관서가 256개인 13만 명의 구성원인 큰 조직에서 신설 당시 본청의 5명 내외로 구성된 아주 작은 부서인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만으로는 13만 경찰이 추진할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즉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까지 전파되고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업무를 담당,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지방청 담당자의 채용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입사해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님께 23개 지방청과 부속기관에 성평등정책 전문인력을 임기제로라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 당시 과연 이게 실현될까 했는데, 다행히도 당시 청장님이 성평등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18개 지방청과 5개 소속기관의 양성평등전담인력을 일반 임기제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는 지방청에서 6급 일반 임기제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이 배치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경찰-시민-전문가로 구성된 트라이앵글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경찰청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저는 이걸 ‘경찰-시민-전문가 삼자로 구성된 트라이앵글

성평등 거버넌스'라고 표현합니다. 경찰청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전문가 그룹, 저 말고도 사실 5급 사무관 계장도 있고,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 6급 전문가도 있고, 전문경력관도 있거든요. 저희 부서는 8명 정원에 절반이 전문가고 나머지 절반은 경찰과 일반 행정직이에요. 부서 내에서의 거버넌스도 중요한 거죠. 전문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면 경찰인 운영계장은 조직의 특성을 잘 아니까 조직 특성에 기반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뤄나가는 거죠.

정리하자면, 저희는 성평등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방청의 양성평등정책담당자들이 결정된 사항을 일선의 경찰관서까지 전달하는 허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행점검하는 게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민간위원장과 경찰청 차관급에 해당하는 차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입니다. 10명의 민간위원이 있고 경찰위원은 당연직으로 경찰청 차장님과 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분이 왜 중요하나면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경찰 지휘부가 직접 알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 기관의 위원회와 다른 큰 특징이죠.

#### ▶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경찰청 기본계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정책이나 여성 대상 범죄에서 수사 시 2차 피해를 없게 한다거나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들이 기본계획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이행점검을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면 우리 과 업무 중심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있는 타과의 업무가 오히려 주가 되어 이행점검이 진행됩니다. 이행점검은 해당 사업 담당국의 국장님이나 사업 추진부서의 과장님들이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위원회 위원들은 개선안이나 보완할 사항들을 제시하거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논의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는 논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또 이 결과를 이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이행점검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과 운영이나 경찰 성평등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훈령도 제정했습니다. 이전에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었지만, 위원회 이외에도 저희 부서의 정책, 지방청의 역할 등 다양하잖아요. 올 7월에 저희 과 업무만이 아니라 경찰청 성평등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것이죠. 공무원들은 법, 규칙에

근거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 규칙에서는 성평등정책의 핵심인 교육이 지금까지 성인지 교육이라고 해서 다소 모호하게 다뤘었는데 ‘성평등 직무교육’으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체포술, 수사 기법 배우듯이 성평등도 똑같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 1시간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이 스스로 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정책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해서 각 기능별, 국·관별, 지방청별 성평등 목표 수립을 기본계획만이 아니라 훈령으로도 규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 성평등정책이라고 하면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만 하지 않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경찰 관련 정책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통경찰의 업무에는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교통사고 났을 때 피의자,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차별적이지 않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왜 여자가 나와서...’ 등등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공정한 사건처리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일자리 찾으러 왔다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성매매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 사건을 담당하는 외사국 소속 경찰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찰 성평등정책 추진 3년 차에 접어든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행**”입니다. 즉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대상 범죄부서만이 아니라 경찰청 모든 국·관이 성평등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0년 하반기에는 경찰청 18개 국·관이 그들의 주요 사업의 특성에 기초한 성평등 목표 수립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본청의 주요 몇몇 국·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8개 국·관 모든 기능, 18개 지방청 및 5개 소속기관 모두에서 각 기능 및 기관의 업무 특성에 기반한 성평등 목표 및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말씀 중에 인상깊게 들은 것이 경찰청의 성평등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삼자 트라이앵글 거버넌스 추진체계입니다. 본청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체계적으로, 외부에 있는 내부에서 성주류화에 대한 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해주면 지방청의 담당자들, 23개 소속기관 담당자들이 이것을 받아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집행해 주고, 성평등위원회가 이행점검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성은** ♣ 맞습니다.

## ● 경찰 성평등정책

**진행자**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청 성평등 기본계획을 야심차게 2024년까지 수립을 하셨어요. 제가 크게 보니까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경찰정책의 성주류화는 대외적으로 국민 대상으로 하는 성주류화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의 경우는 경찰 내부에서의 성주류화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들은 대외적인 성주류화와 관련된 것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찰조직 내부에서의 성주류화, 조직문화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성은** ♣ 저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답합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구성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조직생활을 임할 때 가능해 지는 것이고,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은 경찰업무 수행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 구성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경찰에 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 경찰청 홍보물에 대한 성차별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하는 거였어요. 성평등정책 중 하나인 성별영향평가가 2004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법제화되었는데 제가 경찰청에 와서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된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어려운 성별영향평가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기획계장과 저, 둘이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홍보물 성차별 사전점검제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홍보물에 집중했던 이유는 좀 전에 말했듯이 경찰은 정책 부처가 아니라 집행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는 정책을 만들어서 산하기관에 뿌린다면 경찰은 정책보다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이 더 중요한 기관이죠. 정책사업이 많지 않고, 따라서 관련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예산도 들여다보면, 교육을 위한 장비 구입비, 즉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 콘텐츠 생산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은 별로 없어요. 강사료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경찰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동의를 할 것 같지 않았어요. 단위사업도 거의 없고, 사업예산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들이 업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저 같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왔을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직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이 조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제안해야 뿌리내릴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홍보물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업무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줘야, 이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활용을 하고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 성차별 요소 사전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는데, 정말 호응이 좋았어요.

처음에 2018년도에 오자마자 저희 과는 예산도 없었고, 전문가도 지금은 4명이지만 그때는 저랑 계장 둘밖에 없었거든요. 막상 한다고는 했지만 두 명이 다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2018년에는 '시범운영'으로 큰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50건 정도 요청하겠지...' 했는데 100여 건을 한 거예요. 시범 운영한다고 공문으로 지침만 내렸는데도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이런 거, 시범운영 해볼 테니까 점검할 것 있으면 요청해라.' 정도였는데 막상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경험이 돼서 2019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컨설턴트단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해서 300건 정도 했어요. 배로 늘어난 거죠. 저희가 홍보물을 점검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요청이 많은지, 사전점검을 한다고 성과로 인정받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실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몇몇 정부 홍보물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찰도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전점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받으면 언론을 통한 공격, 국민들로부터 질타받는 것 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과정이 정책의 성주류화 실행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홍보물에 있는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점검하다 보면 내 삶에 대한 것도 다시 점검하게 되잖아요. 경찰은 3교대를 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업무와 아무 상관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경찰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최근엔 업무 추진에 한 과정으로 홍보물만이 아니라 규칙이나 지침, 교육자료 구성 시에도 '사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이 경찰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가고 있다는 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 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변화

경찰공무원 13만 명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 지금까지는 사후 징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올해부터는 예방과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내 성범죄 증가와 관련해 문제 제기된 신고율 증가와 관련해 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문제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근엔 미투 등의 사회변화로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인권 강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감수성이 높아지다 보니 조직 내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있다 해도 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꽤 있었던 거죠. 저희 부서가 생기고, 2018년, 2019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성 근무자 간담회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작은 지역에 경찰서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피해자 상담 지원을 본청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나 신변노출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조직은 큰데 여성 비율이 낮다 보니까 작은 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18~2019 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최소화,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기 위해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명시했습니다. 신고센터의 일원화로 최근 조직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은 “현재의 증가 추세,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어쩌면 기존에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곳에서 훨씬 더 많았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8월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했어요. 이런 대책은 일반적으로 감사나 인권 쪽에서 수립하던 업무였는데 이번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건 경찰청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수립된 종합대책의 핵심 메시지는 경찰의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행위자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문화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제시한 첫 번째 대책은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은폐, 방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예요. 이미 성범죄가 일어났거나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관리자가 이를 방조하거나 은폐했을 때 직무 고발 등의 엄정조치를 하겠다는 게 이번에 종합대책발표의 핵심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경찰 조직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조직은 위에 지휘부가 어떠한에 따라서 조직문화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급조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휘부 관리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0~2024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조직 내 성범죄 근절 및 예방이라는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세부과제의 추진부서는 조직 내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담당관, 행위자 처벌 등 징계를 주관하는 감사담당관 등의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취임한 김창룡 청장님께서 기존과는 다르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총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즉, 사건 발생 후 조사하고 처리하고 징계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발생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우리 부서에 업무를 지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특히 성평등위원회의를 중심으로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에 철저한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성범죄 관련 종합대책의 사업도 20여 가지가 넘어요. 이것도 각 기능별로 흩어져 있어요. 저희 과는 이번 종합대책에서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만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인사 조치는 인사과에서, 관련 징계는 감사, 외부 성범죄 조사는 감찰, 내부 성범죄는 인권조사에서 추진하는 등 7~8개 과가 추진합니다.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서도 저희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각 기능이 제대로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를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점검을 추진합니다.

### ▶ 경찰청장의 의지

현 김창룡 경찰청장님은 해화동 시위 때 '여성 대상 범죄근절추진단' 단장도 하였고, 당시 성평등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보시면서, 경찰이라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정화하고자 할 땐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 즉 경찰-시민 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선순환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믿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범죄 근절 대책도 만드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이게 더 중요하고, 여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청장님은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지휘부는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효과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성평등 추진 성과

조직 내 성평등 정착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남녀 통합모집입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11%

라는 것은 너무 낮은 비율이잖아요? 또 비율도 중요하지만, 채용에서 부터 통합모집이나 분리모집이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분리모집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훨씬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면서도 특별대우 받는 2등 시민 취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늘 체력기준 때문이거든요.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하니 많이 한다고 여경을 희화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힘쓴 것이 통합모집 추진이었어요. 지금은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모집에서 추진하고 있고, 2023년부터 순경 통합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력기준안도 종목제에서 순환제로 바뀌는데 종목제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팔굽혀펴기처럼 근력이 필요한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종목은 폐지하고 순환제로 시행하는데 경찰직무에 꼭 필요한 요건을 보는 것으로 이미 워싱턴이나 캐나다에서 순환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경찰청도 순환제 시행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결과에 맞춰서 2023년부터 통합모집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합모집은 여성 경찰 비율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여성 경찰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여성 경찰의 권익 신장을 위해 단순히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시민의 입장에서 여성 시민이 안전한 경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여성 경찰의 수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 경찰 11%는 너무 부족한 상태죠. OECD 평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상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 대상 범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성 경찰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시민의 관점에서 늘려달라는 거지, 단순히 대표성 측면에서 여성 경찰의 비율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모집을 한다고 해서, 여성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건 모를 일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처음 통합모집하고 체력기준을 동일기준으로 하면 여성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됩니다. 경찰에서 여성 경찰 비율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도 저는 2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조직이 성평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규 입직 남성 경찰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에서도 신입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해서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저희는 신입 경찰 면접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전체에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제가 질문했던 것들을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성주류화 관점에

어떻게 성평등 기본계획 등의 정책에 적용되었냐에 대한 질문에, 성별영향평가나 성 주류화처럼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 홍보물 성차별 점검과 같이 이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드셔서 적용하셨다는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용 가능한 업무에서 시작해서 조직문화 변화의 성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비중들이 커지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직문화의 변화도 경찰청이 위계에 의한 권위적인 조직이니까 리더십부터 바꾸려는 시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평등정책이 단순히 여성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여성 시민들이 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는 시각도 좋았습니다. ‘다양성 관리 접근(diversity management)’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성평등 직무교육 계획

**진행자** ♣ 관리자나 신입 남성 경찰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육도 이야기했고 관리자급 교육에 관해 이야기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경찰공무원들에게 관리자든 신입이든 성평등 교육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신지 그 부분만 말씀해주십시오.

**이성은** ♣ 이것도 제가 처음에 와서 놀랐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은 생각보다 직무교육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육체계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성평등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업무가 많아서 교육은 들어올 때 신입 교육, 경감·경정으로 승진할 때 승진에 관련된 교육, 총경 승진자 교육이 중심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교육들도 있지만, 직무에 치이다 보니 교육받기도 힘들고, 교육 역기도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기본교육은 이게 끝인 거죠. 처음에 와서 너무 고민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는데까지 해보야지 하면서 기본교육에 성평등 감수성 교육 시간을 확 늘렸어요. 신입 교육 10시간, 조기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들어와서 바로 제대로 교육을 시켜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입 교육 때 성평등 교육을 10시간 넣었고, 경감·경정 교육에도 1시간짜리 교육을 2시간으로 확대하고, 총경 교육에도 10시간을 넣은 거죠. 그리고 한 일이 성평등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과 표준교육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타 과의 도움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10시간짜리 신입 교육을 만들었는데 당시 양성평등교육원이랑 MOU를

땀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앙경찰학교의 경우에도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었  
고, 경찰이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만든 교안을 중심으로 교육안 제작에 참여  
한 전문가들이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교수요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했었죠. 워크숍을 통해서 이 강의안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때 청장님께  
제가 제안 드린 건 중앙경찰학교에 교수를 전문가로 뽑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진  
희망 사항이지만 앞으로 채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경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일반 직장교육으로 1시간씩 진행하는 성평등 직무교육,  
이것도 저희가 표준강의안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이 교육의 경우 전문강사  
66명을 구성했어요. 전문강사분들께 저희가 만든 표준교육안을 워크숍을 통해서 전달해  
균질한 강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내부 강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부 강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엔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던 내부 강사 뿐만 아니라 올해, ‘양성평등 강사 과정’이  
라고 해서 양성평등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어려운 분들 중심의 강사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찰직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표준교육안을 만들어서 전문강사와 내부  
강사 1:1로 교육을 추진했는데 조사 결과 내부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찰이라는 직무특성을 잘 아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해야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외부 전문가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경찰 조직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성평등만 얘기하면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사운영이나 교육 방향은 내부 강사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지휘부 교육의 중요성은 더 큽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청장  
님이 취임하시면 바로 모든 전국 지휘부를 모아놓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저희 성평등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교육으로. 전임청장님의 경우 이례적으로 2018년도 7월에  
취임하시고 8월에 워크숍이 진행됐었는데 전국 지휘부 600명을 다 모아놓고 다른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성평등 교육만 했어요. 오전, 오후 종일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요. 지휘부라고  
하면 보통 총경 이상으로, 경찰서장 이상부터 지방청장까지인데 경찰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하루종일 성평등 교육만 한 적은 없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 될 만큼 획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와중에도 7월에 본청  
지휘부들을 모아놓고 교육했거든요. ‘젠더 토크콘서트’라고 양평원에서 기획해서 이수정  
교수와 우석훈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때도 만족도는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조직의 지휘부가 8월에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월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개최하려 하고 준비 중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 구성된 66명의 전문강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준교육안을 가지고 사이버강좌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것을 사이버 콘텐츠로 만들어서 7월부터 사이버 강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 관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도 다시 새로 만든 교안을 가지고 사이버 강의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건 11월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처는 여가부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표준 교육안 사용이 다소 어렵기도 합니다. 경찰 직무특성을 고려한 수정, 보완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저희는 특히 일선 현업근무부서의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데 보통 밤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침에 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겠어요? 밤샘 근무로 피곤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용도 익숙하지 않은 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건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능하면 직무특성을 고려해서 교육내용을 만들고, 짧게, 1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교육자에 특화된 수요자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인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성 경찰이 입직 이후 나름대로 경력을 충실히 쌓아야 하는데, 실제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마땅한 여성 승진대상자가 없어서 승진을 못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흔히들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해서 유리천장, 유리벽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직급 간 차별인 유리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직무 경험이나 경력이 없어 승진대상 모집단에 못 들어가서 승진을 못 하는 것이 유리벽이거든요. 이러한 직종 간의 차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이성은** ♣ 본청이나 서울청, 주요 지방청의 계장으로 들어오는 경정급의 여성 비율이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여성 계장, 경정급들 간담회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과는 주로 승진과 관련해 논의하죠. 총경 승진자는 저희 부서가 생기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의 10%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대상만 되면 승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본청이든 지방청이든 소위 말해서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와야 해요.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조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모를

해요. 저희 과 경우에도 결원이 생기게 되면 전국적으로 직위 공모를 합니다. 내부공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위 공모를 하면, 응시할 것 아니에요? 여성 근무자 간담회에 가서도 여성 근무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니라 여성 비율이 적은 부서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여성이 적은 부서 공모에 지원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별로 안배하거든요. 승진비율을 기능, 직급, 성별 등으로... 승진하려면 남들 많이 가는 특정부서만 가지 말고, 여성 경찰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안국, 정보국, 외사국, 그런 과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시험이 있는 보안이나 수사국 등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폭을 넓히려는 것이죠. 여성 비율 확대 필요성 등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립하는 성평등 목표 수립에서 보안이나 정보국처럼 여성 비율이 낮으면 이 비율을 얼마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표달성을 하려고 해도 대상자 중 여성이 부족해서 비율을 못 맞추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여성 비율이 너무 낮은 국·관을 중심으로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수립할 기능별 성평등 목표의 1번 추진과제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조직 내 유리벽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 경찰의 경력상담까지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성은** ♣ 상담까지는 못하고 간담회를 하면 그것에 대한 방향성은 이야기하지요. 여성 근무자 간담회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이야기할 통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담회는 지방청 담당자들이 경찰관서 중심으로도 진행합니다. 저희 본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청 단위로도 주요업무로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얼마 안 되지만 비용도 꼭 내려 보내거든요. 근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본청 각 기능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성평등위원회에도 보고합니다. 건의사항을 단순하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 근무자 간담회가 친목 도모가 아닌 일종의 협의회, 상시화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 장시간 여러 가지 제목을 던졌는데 쪽 이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추가로 꼭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 제가 경찰을 만나서 강의를 하거나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

하는 부분은 '왜 성평등해야 하는가?'이고, 설명할 때 '시민, 국민이 만나는 첫 번째 국가가 경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공권력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로 상징되는 사람이 경찰이거든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전체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측면에서 많은 척도가 되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평등해야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늘 강조합니다.

경찰은 경찰이라는 직을 선택할 때 사명감, 이런 것이 기저에 깔려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좋은 사례, 잘한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조금만 간과하면 그 순간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에 성평등 이슈를 정착시키고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문가적인 견지에서도 '삼자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렸던 '경찰-시민-전문가' 이 3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직의 성평등,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긍정의 혜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정책 추진의 현실화'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기록·정리 : 기획실무팀

- 진행사회 : 최무현 상지대학교 교수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 독일, 코로나 위기 속 가정폭력 방지 위해 상담 지원 강화<sup>1)</sup>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로 독일 내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 라이프니츠경제조사연구소(RWT)와 뮌헨 공대(TUM) 연구팀이 18세에서 65세 사이 약 3,8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격리조치로 인해 가정에서 더 많은 신체폭력과 성폭력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매체 '메르쿠어(Merkur.de)'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엄격한 격리조치 기간 구타와 같은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격리 기간 집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발생률은 더 높았다. 격리 기간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응답자 중 7.5%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10.5%는 아동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 여성에 대한 신체폭력 발생률은 8.4%, 아동에 대한 폭력은 9.8%였다.
- 무엇보다 가정폭력에 영향을 끼친 것은 파트너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우였다. 이 경우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9.7%, 어린이에 대한 신체폭력 발생률은 14.3%에 이르렀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파트너의 우울과 불안이 코로나19로 어느 정도 악화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에르푸르트 대학(Universität Erfurt)에서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위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일자리 상실로 인한 가정 내 더 많은 싸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 첫째, ‘청소년 긴급 지원 메일(JugendNotmail)’ 지원을 확대했다.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이메일이나 그룹 채팅(jugendnotmail.de) 등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이뤄지며, 심리학자와 사회교육자 등 150여 명의 전문가가 자원봉사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긴급 지원 메일’은 우울증, 자해, 폭력, 따돌림, 학대 및 가족 문제 등 약 13가지 주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 상담 메일은 2001년부터 비영리협회 ‘jungundjetzt e.V.’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달 최대 1,00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 두 번째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화(116111)와 부모를 위한 상담 전화(0800 111 0550), 이주 배경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www.jmd4you.de)을 총괄하는 ‘Nummer gegen Kummer’ 상담 서비스가 확장된다. 이 전화상담 서비스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및 관련 교육자들을 위해 독일에서 신속하게 상담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화상담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등은 익명으로 자신의 문제와 걱정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담은 무료다. 독일 아동보호협회와 기타 지역복지기관과 연계된 이 상담 전화 서비스는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독일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AG)이 지원한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격리조치가 엄격하게 시행 2020년 3월에는 ‘Nummer gegen Kummer’ 상담 건수가 2020년 2월에 비해 21% 증가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채팅 상담도 26% 증가했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온라인 채팅과 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sofahopper.de’에 온라인 상담자와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 라이브 채팅을 통해 제공해왔던 상담을 당분간 저녁 시간 이후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여러 상담 기관에서도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임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아동복지청과 독립 상담 기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논의하기 위해 마인츠 사회교육학 연구소와 국제 교육 지원 협회, 힐데스하임(Hildesheim) 대학교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가족 상담에 관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설정 중이다. 이와 함께 보육원과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육자가 추가 교육을 받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NummergegenKummer (2020), <https://www.nummergegenkummer.de/> (접속일 : 2020.06.26.)  
JugendNotmail (2020), <https://www.jugendnotmail.de/> (접속일 : 2020.06.2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0.03.31.), “Kinder und Jugendliche vor Missbrauch und Gewalt schütz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und-jugendliche-vor-missbrauch-und-gewalt-schuetzen/154288> (접속일: 2020.06.24.)  
Merkur.de (202006.02.), “Studie: Mehr häusliche Gewalt in Quarantäne”, [https://www.merkur.de/welt/studie-haeusliche-gewalt-in-quarantaene-und-finanzieller-not-zr-13784385.html?fbclid=IwAR3n3E1KJldT34PliYILP17-e1GT8\\_ts4jC6J3BLhuSfzXrcCYwl9PmXuq4](https://www.merkur.de/welt/studie-haeusliche-gewalt-in-quarantaene-und-finanzieller-not-zr-13784385.html?fbclid=IwAR3n3E1KJldT34PliYILP17-e1GT8_ts4jC6J3BLhuSfzXrcCYwl9PmXuq4) (접속일: 2020.06.24.)

## 독일, 코로나 위기 속 아동보너스 지급 및 종일학교 · 어린이집 확대 등 가족 · 돌봄 지원 강화

-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독일 정부의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부터 정부의 정책은 크게 ‘가족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비영리단체(공익단체) 지원’에 집중된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경제회복, 일자리 확보 등 독일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부양책 마련 과정에서 가족과 아이돌봄이 지원의 핵심이며 가족 복지와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 아동보너스(Kinderbonus) 지급

- 독일 정부는 2020년 9월과 10월, ‘아동수당’(Kindergeld)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너스(Kinderbonus)’를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아동보너스 역시 소득에 상관없이 선지급된다. 다만 연 93,000유로(한화 약 1억 2,74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아동보너스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아동에게 9월에 200유로, 10월에 100유로 총 300유로가 지급된다. 아동보너스를 받을 아동 수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연방 정부는 아동보너스 지급을 위해 43억 유로(한화 약 5조 8,95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한번 지급되는 아동보너스와 달리 매달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월 204유로(약 26만 9천 원), 셋째 아이 월 210유로(약 27만 7천 원), 넷째 아이부터는 월 235유로(약 31만 4천 원)이다.
- 한편 아동보너스 지급과 함께 연방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 종일학교(Ganztagsschulen)/호르트(Hort) 지원 확대

-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종일 학교(Ganztagsschulen)’와 ‘호르트(Hort)’ 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미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생의 돌봄 교육을 위해 특별기금 20억 유로(한화 약 2조 7,419억 원)를 편성한 바 있지만, 2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0년과 2021년 지원 비용을 받은 주정부는 프로그램 후반 즈음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엇보다 학교의 디지털 학습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학교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 외에 집에서 가능한 이러닝(E-Learning)이 함께 이뤄지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및 학교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추가 지원

- 연방정부는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22년까지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 원)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709억 원)를 추가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뤄지는 보육시설 확장과 신축, 위생상황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9만 명의 아동이 어린이집 등을 통해 돌봄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비영리단체 및 기관 지원

- 비영리 단체 및 기관도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큰 위기에 다친 사회적 기업, 유스호스텔, 청소년 교육 시설 외에도 비영리 아동 및 청소년 숙박 시설과 국제 청소년 교환학생 운영 기관 등이 포함된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기관 지원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특별 재정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특히 독일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서 대출금으로 10억 유로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 최대 금액은 80만 유로(약 10억 9,676만 원)다. 그동안 비영리기관은 자금 및 수입 부족으로 대출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지원으로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구조는 독일 사회 및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영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결정할 조치라고 발표했다.

• 참고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7.01), "Fragen und Antworten zu m Kinderbon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finanzielle-unterstuetzung/faq-kinderbonus>(접속일: 2020.07.1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Ministerin Giffey: Corona-Konjunkturpaket ist ein großer familienpolitischer Erfolg und richtig starker Impuls",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ministerin-giffey--corona-konjunkturpaket-ist-ein-grosser-familienpolitischer-erfolg-und-richtig-starker-impuls/156208>(접속일: 2020.07.13.)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Corona-Konjunkturpaket enthält überlebenswichtige Kredit- und Überbrückungsprogramme für gemeinnützige Organisation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corona-konjunkturpaket-enthaelt-ueberlebenswichtige-kredit-und-ueberbrueckungsprogramme-fuer-gemeinnuetzige-organisationen/156250>(접속일: 2020.07.13.)

## 독일, 민간 및 공공 남녀동등 참여법 시행 이후 여성고위직 비율 소폭 증가

- 독일의 민간 및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할당제로 여성 이사진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과 크리스틴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일 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6년 1월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 시행 이후 2017년에 기업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이 25%에서 32.5%로 증가했고, 올해는 35.2%로 증가했다.
- ‘민간 및 공공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이사회 여성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30% 여성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성 이사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석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독일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와 이를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뉘는데, FüPoG 법안에 따른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 시행 이후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경영이사회’ 비율과 달리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독일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은 7.7%에 그쳤다. 이는 약 80%의 기업에 여성 이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라 상장기업은 여성할당제 목표 수치를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상장기업의 약 70%가 감독이사회 여성 비율 관련 성과를 0%로 보고했다.
- 독일 정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은 자발적으로 늘지 않으며, 할당제와 같이 강제조치만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여성 경영이사회 30%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여성 경영이사회 비율은 1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람브레이트 법무부 장관

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성 고위직 할당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할당제 시행을 독일의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에는 경영책임을 맡을 수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연방정부는 ‘민간 및 공공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에 따라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고 있다. 기업에 비해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이 높긴 하나, 여전히 주요 보직에 여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방 당국 내 장관직, 의회 최고비서직 등을 포함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34%다.
- 고위직보다 조금 낮은 관리직 직군의 여성 비율은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1% 떨어졌다. 23개 독일 연방 당국의 관리자 직군의 여성은 총 10,971명(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관리자의 46%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5%로 낮아졌다. 독일 연방 당국의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53%다.
-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정부 관련 감독위원회 구성에 보다 엄격한 할당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련 일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이 전문 위원회 역시 2016년 1월부터 여성 할당제 30%를 시행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여성 할당 비율을 50%로 높였다. 현재 연방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540개가 있으며, 이 중 239개 위원회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3명 또는 4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임명한 위원회의 경우 여성 비율은 현재 45.4%에 이른다.
-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매년 공공부문의 남녀 고위직 비율 실태를 파악하는 ‘독일 남녀 평등 지수(Gleichstellungs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독일 연방 당국에는 14개 연방정부 부처 외에도 대통령 사무실, 헌법재판소, 회계감사원, 연방총리공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3.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Statistisches Bundesamt(2020), “Gleichstellungsindex 2019 -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r-Dienst/Publikationen/\\_publikationen-innen-gleichstellungsindex.html%20](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r-Dienst/Publikationen/_publikationen-innen-gleichstellungsindex.html%20) (접속일:2020.8.19.)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자료(2020.06.10.), “Frauen in Führungspositionen: Freiwillig tut sich wenig - nur feste Vorgaben wirk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frauen-in-fuehrungspositionen---freiwillig-tut-sich-wenig---nur-feste-vorgaben-wirke/156474> (접속일:2020.08.19)

## 독일 여성, 대도시에서 여성대상 폭력에 대해 ‘불안’, ‘공포’ 시달리지만 정부 여성안전정책 부족

- 독일 대도시의 많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폭력을 경험하며 도시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기구인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독일 지부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시 안전’을 주제로 16세부터 71세 여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독일 대도시인 함부르크, 베를린, 쾰른, 뮌헨에서 여성들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여성들은 인터랙티브 지도(Interactive Map)에 자신이 안전하거나 반대로 안전하지 않은 경험한 곳을 표시했고, 지도에 표시된 총 1,267개의 장소 중 80%가 안전하지 않은 장소로 지목됐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중 25%는 도시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20%가 거리에서 신체적·언어적 폭력 또는 위협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안전하지 않아 부정적인 곳으로 표시된 장소 중 25%의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예를 들어 여성들은 공원에서 조깅할 때, 길거리에서 언어 성폭력, 스토킹,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경험하면서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가로등이 어두운 거리 등 낮보다 밤에 더 큰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고 표기된 곳 중 80% 정도가 밤이나 어두울 때 느끼는 불안감이 컸으며, 낮에 위협을 느낀 장소는 20% 정도였다. 이 외에도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마약하는 사람을 접했을 때, 대중교통을 기다리거나 이용할 때,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있을 때, 위험 상황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큰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들은 레스토랑이나 행사장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 플랜 인터내셔널은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인도 델리, 호주 시드니, 우간다 캄팔라, 페루 리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를 벌였으며, 결과는 독일과 비슷했다. 대부분 소녀와 여성이 도시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느낀다고 답했고, 총 21,000개 이상 장소에서 부정적으로 표기된 곳은 80% 이상이였다. 플랜 인터내셔널은 소녀와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4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함께 ‘소녀를 위한 안전 도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이집트, 인도, 페루, 우간다, 호주, 스페인 등 12개국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 마이케 로트거 플랜 인터내셔널 독일 지부 이사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소녀와 여성이 두려움 없이 도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 자료를 통해 “길을 더 밝게 만들고 공원을 재구성하는 등의 도시계획조치도 필요하지만, 소년 및 소녀를 대상으로 성 역할 관련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전히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괴롭히는 것이 괜찮다는 식의 고정관념과 차별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독일 정부의 눈에 띄는 여성안전정책은 없다. 다만 쾰른에서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웨이가드(WayGuard)’라는 휴대폰 앱을 운영하고 있다. 앱 사용자는 자신이 신뢰할만한 친구나 가족, 지인 등의 연락처를 등록해놓을 수 있고 집으로

귀가할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보여주고 전화나 채팅을 통해 연락할 수 있다. 귀가한 이후에도 이들에게 귀가 여부를 알리게 되어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앱 사용자 또는 앱 사용자와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사용자가 긴급전화를 걸 수 있으며, 앱 중앙센터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이나 응급, 의료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웨이การ์ด' 중앙센터에서 바로 경찰 또는 병원에 연결한다. '웨이การ์ด' 앱은 AXA 보험회사 쾰른지사와 쾰른 경찰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앱은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의 앱 등록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는 스위스에서 서비스를 오픈했다. '웨이การ์ด' 앱 외에 쾰른시는 폭력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보호센터 두 곳과 긴급전화(0221/376490)를 운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Plan International(2020.08.12.), "Frauen erleben in ihren Städten Angst, Belästigung und Gewalt", <https://www.plan.de/news/detail/frauen-erleben-in-ihren-staedten-angst-belaestigung-und-gewalt.html> (접속일: 2020.08.21.)  
 DW(2020.08.12.), "Women in Germany feel unsafe in large cities, study shows", <https://www.dw.com/en/women-in-germany-feel-unsafe-in-large-cities-study-shows/a-54541135> (접속일: 2020.08.21.)  
 stadt koeln(2020), "Sicher nach Hause", <https://www.stadt-koeln.de/leben-in-koeln/soziales/gleichstellung/sicher-nach-hause?kontrast=schwarz> (접속일: 2020.08.23.)

## 영국, 코로나19로 올해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공개 유예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야기<sup>2)</sup>

- 영국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임금격차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2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정책을 코로나19를 이유로 당분간 유예하기로 해 코로나19 이후 영국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영국 고등교육 관련 통계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HESA(the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가 6월 1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신입사원 초봉을 기준으로 대졸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남녀 임금 격차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2018년 대졸자 기준으로 남녀 평균 연봉은 2만 4천~2만 7천 파운드(한화 기준 3천 700만~4천 100만 원)이었다.
- 하지만 해당 연봉 구간별로 따져보면 고소득 구간에 포함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 작성: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높았다. 취업 15개월 안에 연봉 3만 파운드(4천 600만 원) 이상 버는 여성 대졸자는 2018년 전체 대졸자의 18%인데 반해 남성 비율은 28%로 여성보다 10% 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연봉 3만 9천 파운드(6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구간에 포함된 남성은 2018년 전체 대졸자의 6%인데 반해 여성 비율은 3%로 남성보다 두 배 낮았다.

-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영국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공개정책도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춰 섰다.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직원 250명 이상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을 실시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정부가 법에 따른 제재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나 올해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 리즈 트러스 여성평등부 장관은 3월 24일 언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올해 성별임금격차 공개는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양성평등 활동가인 샬럿 우드워스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기업의 법적 요구 조건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남녀평등 수준이 수십 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했다. 영국 국가세입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와 USL 교육연구소(UCL Institute of Education)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하는 엄마가 일하는 아빠보다 직장을 잃거나 퇴사할 가능성이 47%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서비스업과 소매업으로, 두 업종의 대부분 노동자가 여성이다. 해당 연구는 자녀가 있는 영국 3천 500가구를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평균 자녀 돌봄 노동 시간도 남성보다 2.3시간 더 많았다. 인터뷰에 참가한 여성들은 하루 평균 10.3시간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는 반면 남성들은 평균 8시간을 보냈다. 또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도 남성보다 1.7시간 더 많았다.

• 참고문헌 •

The Guardian(2020.06.18.), “Gender pay gap begins for students straight after university – report”,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jun/18/gender-pay-gap-begins-students-straight-after-university-graduate-data-report-uk>(접속일: 2020.06.09.)

HESA(2020.06.18.), “Higher Education Graduate Outcomes Statistics: UK, 2017/18 – Salary and location of leavers in employment”, <https://www.hesa.ac.uk/news/18-06-2020/sb257-higher-education-graduate-outcomes-statistics/salary>(접속일: 2020.06.09.)

Gov.UK(2020.03.24.), “Employers do not have to report gender pay gaps”, <https://www.gov.uk/government/news/employers-do-not-have-to-report-gender-pay-gaps> (접속일: 2020.06.09.)

The Guardian(2020.05.29.), “COVID-19 crisis could set women back decades, experts fea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29/covid-19-crisis-could-set-women-back-dec>

ades-experts-fear(접속일: 2020.06.09.)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20.05.27.), "Parents, especially mothers, paying heavy price for lockdown",  
<https://www.ifs.org.uk/publications/14861>(접속일: 2020.06.09.)

## 영국, 경제적 통제도 가정폭력으로 인정한 가정폭력법 하원 통과

- 2020년 7월 6일, 영국 하원은 신체적 폭력만 포함하는 전통적인 가정폭력의 정의를 넘어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통제까지 가정폭력으로 인정한 가정폭력 법안(Domestic Abuse Bill)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려면 앞으로 상원(House of Lords) 통과와 왕실 재가(Royal Assent) 절차가 남아 있다.
- 이번 법안의 핵심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 외에도 경제적 폭력(economic abuse), 강압과 통제, 교묘한 비신체적 폭력(manipulative non-physical abuse)까지 가정폭력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방안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법안은 지자체와 사법기관,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항을 감독하는 가정폭력 위원직을 신설하고, 가해자의 피해자 접촉 금지, 가해자 행동 교정 훈련 등을 강제하는 가정폭력 보호 공고(Domestic Abuse Protection Notice)와 가정폭력 보호 명령(Domestic Abuse Protection Order)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위한 안전한 쉼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신문 금지, 가정폭력 피의자 석방 조건으로 심리·생리검사(polygraph testing, 거짓말 탐지기) 실시 등 내용도 추가되었다.
- 영국 정부가 가정폭력법을 발의한 것은 가정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내무성이 2020년 3월 발간한 ‘가정폭력법안 주요 팩트시트(Domestic Abuse Bill 2020: Overarching factsheet)’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영국에서는 16~74세 연령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연간 240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3분의 2가 여성이다. 또한, 경찰에 신고된 범죄 10건 중 1건이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다”며 가정폭력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 내무성은 해당 보고서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660억 파운드(한화 약 98조 3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민자 여성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 민족을 돕는 단체 50곳과 이민자 인권 단체, 앰네스티 영국지부 등이 연합해 이끄는 캠페인인 ‘Step Up Migrant Women’은 영국 정부의 가정폭력법안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 가정폭력법안에 따르면,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석 달간 금전적 혜택을 포함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자 여성처럼 배우자 비자가 없거나 다른

종류 비자를 가진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이 빠져 있다.

- 흑인과 소수 인종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Southall Black Sisters의 대표 프라그나 파텔은 2020년 7월 6일 가디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 여성이 배제된 이번 법안이 던진 메시지는 이민자 여성의 삶이 가치가 없고, 2등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 참고문헌 ·

GOV.UK(2020.07.07.), “Domestic Abuse Bill passes House of Commons”, <https://homeofficemedia.blog.gov.uk/2020/07/07/7626/> (접속일 : 2020.07.15.)  
GOV.UK(2020.03.03.), “Domestic Abuse Bill 2020: overarching factshee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omestic-abuse-bill-2020-factsheets/domestic-abuse-bill-2020-overarching-factsheet> (접속일 : 2020.07.15.)  
The Guardian(2020.07.06.), “Migrant women deliberately left out of UK abuse bill, say campaigner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jul/06/uk-government-accused-endangering-lives-migrant-women-domestic-abuse-bill> (접속일 : 2020.07.15.)

## 영국, 임신부 및 18개월 미만 유아녀 여성재소자 보호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 정책 발표

- 영국 정부가 임신부 및 18개월 미만 아기와 함께 지내는 엄마 재소자 보호를 강화한다. 18개월 미만 아기와 엄마 재소자가 함께 지내는 교도소 내 특별 시설인 ‘Mother and Baby Units(MBU)’에 임신부 재소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신부×엄마 재소자를 돕는 상주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성 재소자를 위한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2020년 7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영국 전역의 여성 전용 교도소에 임신부와 엄마 재소자 전담 상주 전문가 배치, 임신부 재소자를 돌보는 교도관에게 추가 훈련 지원, 임신부와 엄마 재소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새 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구성 등이 법무부가 공개한 정책에 포함됐다.
- 영국에서는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수감 기간 중 출산하면 아기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MSU에서 지낼 수 있다. 또한, 여성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18개월 미만 아기가 있다면 아기를 교도소에 데려와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엄마 재소자가 원한다고 해서 교도소 밖에 있는 아기를 항상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마 재소자가 아기의 교도소 입소를 신청하면 입소 위원회(admissions board)가 회의를 열어 아기가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논의하고, 해당 교도소의 MSU 여유 공간 등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 영국 정부가 임신부 및 엄마 재소자 보호 정책을 추가로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해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발생한 아기 사망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여성 전용 교도소인 브론즈필드 교도소에서 임신부 재소자가 혼자 감방에서 출산하다가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영국 정부는 별도의 관심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임신부 재소자를 제대로 감독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언론 가디언지에 따르면,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영국을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여성 전용 교도소로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 557명을 수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일부 교도소를 민간 기업이 정부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하는데,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소덱소 법무 서비스(Sodexo Justice Services)라는 영국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시 영국 언론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민영화된 교도소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 영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부와 교도소 내 출산 현황을 영국 전역 교도소에서 전수 조사해 공식 통계를 만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정보가 교도소 별로 별도로 저장돼 분리돼 있어 전국 통계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도소 별로 흩어진 정보를 중앙 기관인 교정본부(Prison Service)가 한데 모아 필요 서비스를 예측하고, 임신부 및 엄마 재소자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GOV.UK(2020.07.31.), "Prison Life", <https://www.gov.uk/life-in-prison/pregnancy-and-childcare-in-prison> (접속일: 2020.08.25.)  
 GOV.UK(2020.07.31.), "Review of operational policy on pregnancy mother and baby units and maternal separ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view-of-operational-policy-on-pregnancy-mother-and-baby-units-and-maternal-separation>(접속일: 2020.08.25.)  
 The Guardian (2019.10.04.), "Baby dies in UK prison after inmate gives birth alone in cell",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04/baby-dies-in-uk-prison-after-inmate-gives-birth-alone-in-cell>(접속일: 2020.08.25.)

**캐나다,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제원조 예산 확대<sup>3)</sup>**

- 캐나다의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9일 캐나다 국제개발부(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여성의 안전한 피임, 낙태 서비스에 접근한 권리와 재생산 건강이 제약받고 있다면서 캐나다가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8,900,000(약 79억 원) 캐나다 달러의 국제원조 재원을 편성하여 여성들이 안전한 낙태와 재생산 건강 서비스(safe abortions and reproductive

3)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health service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한다. 이 자금 가운데 490만 달러(약 43억 6천만 원)는 37개국에 피임과 낙태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인 마리 스톱스 인터네셔널(Marie Stopes International)에 배정될 것이며, 2백만 달러(약 7억 8천만 원)가 UN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기금(United Nations trust fund on violence against women to help combat gender-based violence)으로 지출될 것이다. 이밖에 이 재원은 안전한 낙태, 피임, 낙태 후 케어,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의료 지원,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외진 곳에서 고립되어 사는 소녀들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쓰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추가적으로 2백만 달러를 세계 각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옹호하고 피임법을 확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인 Ipas에 지원할 것이라 한다. 국제개발부 장관은 이날 재원 편성의 목적을 밝히면서 “캐나다는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도 여성의 재생산 성 건강과 권리(SRHR: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의 증진에 여전히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재원 편성을 통해 증명할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 한편 캐나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안전한 낙태 서비스 접근권, 산후조리와 다른 재생산권 문제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 건강과 권리 행동 캐나다(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 Rights)의 로라 네이다트(Laura Neidhart)는 국제원조 재원 발표와 관련한 매체와의 뉴스인터뷰에서 의약품과 피임 용품의 조달 및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클리닉들 또한 대거 휴업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캐나다와 세계 각지에서의 여성의 재생산권 옹호 활동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제약이 단순히 공중보건 때문이 아님을 지적했다. 미국에서 성 건강과 권리 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아이오와, 오하이오, 알칸자스, 루이지애나, 테네시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빌미 삼아 다양한 수단으로 낙태를 금지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교묘하게 이용(manipulating the crisis)”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이라는 핑계로 여성들에게 안전한 낙태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이 여성들을 위협한 낙태 시술로 여성을 내모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네이다트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국에서도 트뤼도 행정부가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케어를 조명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 밝혔다.
- 플랜 인터내셔널 캐나다(Plan International Canada)가 2020년 6월 공개한 보고서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난민 소녀들이 현재 삼중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주(displacement),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어린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위험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분쟁지역, 고립지역,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 관련 서비스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사회서비스 자원이 세계 각지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미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증폭되어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편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국제원조 정책에서 페미니스트 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캐나다는 여성건강을 위한 국제원조에 1억 4천만 달러의 재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절반이 낙태와 재생산 건강 서비스 관련 예산이었다. 하지만 이에 비하면 올해 발표한 8백 9십만 달러는 너무나 축소된 규모이다. 비판자들은 여성의 재생산권 문제는 단순히 캐나다 정부가 이 분야에 관심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 참고문헌 •

- CTV News (2020.06.09.), "Feds commit \$8.9M in foreign aid for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mid COVID-19", <https://www.ctvnews.ca/politics/feds-commit-8-9m-in-foreign-aid-for-reproductive-health-services-amid-covid-19-1.4976634> (접속일 : 2020.06.19.)
- Newswire (2020.06.19.), "Refugee girls face a triple crisis with COVID-19.",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refugee-girls-face-a-triple-crisis-with-covid-19-860465828.html> (접속일: 2020.6.19.)
- Plan International Canada (2020.06.), "Close to Contagion: The Impacts of COVID-19 on displaced and refugee girls and young women", [https://plancanada.ca/file/planv4\\_files/covid-19-refugees-2.pdf](https://plancanada.ca/file/planv4_files/covid-19-refugees-2.pdf) (접속일 : 2020.6.19.)

## 캐나다 아이돌봄 연구단(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어린이집의 코로나 대응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캐나다는 2020년 3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공공부문을 비롯한 상당수 직장들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거나, 학교 및 돌봄기관이 운영을 중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적돌봄 중단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돌봄기관들 역시 타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아이돌봄 연구단(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이돌봄 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아이돌봄을 정상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6월 30일 공개하였다. 이 조사는 주정부 소관 기관들과 어린이집 연합 등 기관들이 지역의 아이돌봄 기관들을 섭외하여 5월 4일~5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아이돌봄 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4월 27일~5월 1일)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총 8,300개의 돌봄기관(어린이집 5,729개, 가정식 어린이집

(family child care homes) 2,571개)이 참여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캐나다 전역이 비슷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달랐음을 드러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캐나다 전역에서 72%의 어린이집이, 39%의 가정식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으나 그 비율은 주별로 상이했다. 노바스코시야주의 경우 100%에 가깝게 아이돌봄 기관들이 문을 닫았으나 알버타의 가정식 어린이집은 15%, 사스카툰의 어린이집들은 33%만이 해당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캐나다 전역에서 응답 기관의 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시간을 줄였다고 응답했으나 온타리오주 어린이집의 경우 72%가 오히려 운영시간을 늘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상 돌봄 체계를 운영하여 지정한 아이돌봄 기관들로 하여금 운영 시간을 늘리게 한 데서 기인한다.
- 코로나19 사태가 아동 돌봄기관에 미친 타격 또한 지역별로 상이했다. 2020년 5월 현재 응답한 어린이집의 64%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설을 다시 열 것이라고 답했으나 36%는 확실치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규모가 더 작은 가정식 어린이집들의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들의 68%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대답하였으며, 54%는 정부 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덜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또한 지역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알버타의 경우 57%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들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거의 끊겼으나 퀘벡과 뉴브런즈윅, 사스카툰 등의 지역에서는 응답 기관들의 50% 정도가 평소와 다른없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응답한 어린이집의 71%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들을 임시 해고한 상태라 밝혔다. 응답 기관들의 29% 만이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24%는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급에서 직원들이 해고된 상태였다. 한편 이렇게 임시 해고된 아이돌봄 인력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격차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해고 인력의 87%와 64%가 각각 주정부의 캐나다 긴급 재난 지원금(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과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혜택을 신청했지만, 가정식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인력들의 경우 37%만이 이러한 재정 프로그램에 지원한 상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돌봄 체계를 정상화함에 있어 아이돌봄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 그리고 어린이집과 가정식 어린이집 모두 시설을 재개장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 즉,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줄어드는 원생 수를 공통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임대비 지원, 임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회복에 충분하다고 답한 어린이집은 4%에 그쳤고, 응답 기관의 55%는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 참고문헌 •

Statistics Canada(2020.06.), "Impacts of COVID-19 on Canadians: Parenting During the Pandemic", <https://www150.statcan.gc.ca/n1/en/pub/11-627-m/11-627-m2020043-eng.pdf?st=8VE M8bMW> (접속일: 2020.7.20)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anadian Child Care Federation, Child care Now(2020.06.30.), "Canadian Child Care: Preliminary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childcarecanada.org/sites/default/files/Canadian-Child-Care-COVID19-Survey-Data-Report.pdf> (접속일: 2020.7.20.)

※ 상세 보고서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Canadian Child Care Federation, Child care Now(2020.06.04.), "THE PANDEMIC EXPERIENCE HAS CREATED AN UNCERTAIN FUTURE FOR CANADIAN CHILD CARE SERVICES", [https://www.childcarecanada.org/sites/default/files/The%20pandemic%20experience%20has%20created%20uncertain%20future%20for%20Canadian%20child%20care%20services\\_Highlight%20of%20a%20national%20survey\\_FINAL\\_CRRU.pdf](https://www.childcarecanada.org/sites/default/files/The%20pandemic%20experience%20has%20created%20uncertain%20future%20for%20Canadian%20child%20care%20services_Highlight%20of%20a%20national%20survey_FINAL_CRRU.pdf) (접속일: 2020.7.20.)

##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YWCA,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으로 돌봄경제의 회복 촉구해 정부 대응 주목

-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과의 국경은 봉쇄된 상태이지만 7월 마지막 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 비상사태 수위를 한 단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다시 열었고 식당과 커피숍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재영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캐나다 사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제 캐나다 사회의 화두는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최근 토론토대 경영대학원 「젠더와 경제 연구소」와 캐나다 YWCA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페미니스트 경제 회복 계획(A Feminist Economic Recovery Plan for Canada)"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돌봄 경제의 회복이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결정적임을 강조하면서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는 캐나다의 성별 돌봄노동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 우선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캐나다 여성들은 매일 남성들에 비해 평균 1.5시간 집안일을 더 해왔고 시골이나 저소득 지역에서 이러한 무급 돌봄노동 성별격차는 더욱 심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최대 다섯 배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교육과 돌봄 기관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여성에게 지워지는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이 더 심화되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머물면서 부모의 돌봄 노동 시간은 늘어났지만 늘어난 돌봄의 의무를 남여가 공평하게 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 보고서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경우 가정, 홈스쿨링, 일터에서 삼중의 돌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노동자,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간병인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은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도 했는데, 유색인종 여성(racialized women)의 경우 돌봄 의무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는 이러한 경향이 두 배 크게 나타났다. 요컨대 돌봄 의무는 성별화되어있지만 동시에 이는 또한 인종화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임시 해고 상태인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돌봄 의무 때문에 신속한 복귀가 힘들 것임을 지적하면서,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적절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 세대의 여성이 통째로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가계지출을 억제, 경제 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 해당 보고서는 국가의 생존과 안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에도 돌봄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캐나다 사회가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저평가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관해온 오랜 관습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배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5월 현재 캐나다 코로나19 사망 사례의 80% 이상이 노인 돌봄 시설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돌봄 시설에 대한 국가의 열악한 지원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노인 돌봄 시설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다수의 시설을 돌아다니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자들 자신과 노인들 모두를 전염병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심하게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퀘벡주의 경우 장기요양 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60%가 고질적인 저임금과 불안정적인 고용에 시달리는 파트타임 여성이며 몬트리올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20%가 돌봄 종사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돌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이민자 등으로서 확진자가 다수 나온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산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돌봄시설들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여부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가용한 캐나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영리 기관의 경우 비영리 돌봄 기관에 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60% 더 높고 여타의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45%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 이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주민,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의 여성 노동자들이 돌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대성을 드러냈으나, 코로나 사태 수습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비영리 장기요양 기관 확대, 이를 통한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없이는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회복 정책 수립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들이 영주권을 조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캐나다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해당 보고서는 돌봄경제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용률 증대, 성별 고용률 격차 해소, 빈곤율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퀘벡에서는 아이돌봄에 경제에 100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주 정부에는 104달러의, 연방정부에는 43달러의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캐나다 정부는 OECD 권고안을 따라 최소한 GDP의 1%를 보편적인 비영리 데이케어 확대 등의 아이 돌봄에 투자해야 함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많은 아이 돌봄기관들, 특히 비영리 기관들이 문을 닫아 안 그래도 심각한 아이 돌봄 시설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소 25억 달러의 직접 정부 지원이 아이 돌봄 기관 신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재정이 전국의 아이돌봄 기관에 균등하게 지원되고 이 과정을 감독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 또한 덧붙이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캐나다 경제 침체를 만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 Toronto Star(2020.07.28.), "Boosting marginalized groups key to 'feminist economic recovery,' report says", <https://www.thestar.com/business/2020/07/28/boosting-marginalized-groups-key-to-feminist-economic-recovery-report-says.html> (접속일: 2020.08.10.)
- The Institute for Gender and the Economy at University of Toronto's Rotman School of Management & YWCA Canada(2020.07.28.), "A Feminist Economic Recovery Plan for Canada: Making the economy work for everyon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f0cd2090f50a31a91b37ff7/t/5f205a15b1b7191d12282bf5/1595955746613/Feminist+Economy+Recovery+Plan+for+Canada.pdf> (접속일: 2020.08.10.)

## 캐나다 여성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심화에 대응해 가정폭력 지원정책 다양화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해자의 감시망을 피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만한 창의적인 방안들은 내놓고 있다.
- 우선 캐나다 여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WAGE)와 캐나다 여성 재단(Canadian Women's Foundation)은 "도움의 신호 (Signal For Help)"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지인이나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수신호를 홍보하고 있다. 가해자가 상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가정폭력 센터에 연락을 취하는 대신 지인과

의 영상통화나 공공장소에 노출된 상황에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되 엄지손가락을 주먹 안쪽으로 말아 쥐는 수신호를 취함으로써 구조 요청을 은밀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이 수신호를 어디서든 보게 된다면 이는 구조 요청이므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 중이다.

- 한편, 오타와주에서는 오타와 여성에 대한 폭력 종결 연대(The Ottawa Coalitio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OCTEVAW)를 중심으로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쉼터 연결, 상담을 문자나 온라인 채팅 서비스로 가능하게 하는 언세이프 옛 홈 오타와(Unsafe at Home Ottawa)라는 새로운 핫라인을 런칭하였다. 폭력 종결 연대에 의하면 오타와에서 기존 핫라인을 통한 구조 요청 건수는 코로나 비상사태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는 가정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요 창구인 학교, 직장이나 데이케어 등이 문을 닫고 가해자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 중심의 기존 핫라인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오타와의 관련 시민단체들과 주 정부는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 사태와 폭력 사태 이중의 위기에서 고립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시 감시 상태에서도 접근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핫라인, 즉, 문자 기반의 서비스로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핫라인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언세이프 옛 홈 오타와의 상담 서비스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며, 안전하게 가해자와 지내거나 혹은 가해자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추천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세이프 옛 홈 오타와가 기존의 핫라인과 다른 점은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이 메시지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열하더라도 신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와 채팅으로 나는 대화 또한 암호화되어 오직 상담자만이 데이터에 추후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 언세이프 옛 홈 오타와는 원래 오타와 주정부 재정으로 오타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이 서비스가 공영방송에 보도된 후 오타와 이외의 지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가 다른 주에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폭력 종결 연대는 언세이프 옛 홈 오타와 핫라인이 현재 영어와 불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곧 다른 언어 상담도 가능하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성소수자(LGBTQ2+) 커뮤니티와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 사태 동안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에 대한 두 그룹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오타와 이주여성 서비스센터는 폭력 종결 연대와 함께 캐나다 사정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 장벽까지 있는 이주여성과 난민 여성들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 "Signal For Help", <https://canadianwomen.org/signal-for-help/> (접속일: 2020.08.19.)  
 Unsafe at Home(2020), <https://unsafeathomeottawa.ca> (접속일: 2020.08.19.)  
 Kitchissippi Times(2020.08.05.). "Local text and online chat service supports women experiencing violence during COVID-19", <https://kitchissippi.com/2020/08/05/local-text-and-online-chat-service-supports-women-experiencing-violence-during-covid-19/> (접속일: 2020.08.19.)

## 스페인, 코로나19 이동제한에 따른 여성의 일·가정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시민단체 중심 온라인 청원 시작<sup>4)</sup>

- 2020년 3월 14일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령 시행을 공포한 이후, 스페인 국민은 몇 달간 약국이나 마트와 같이 꼭 필요한 불일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된 채 생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여성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늘어난 가사·돌봄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6월 초, 2015년부터 스페인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및 일·가정 양립 문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인 Yo No Renuncio(I do not resign, 역: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에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이동제한령으로 가중된 여성들의 일·가정 부담 해소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으로, 7월 초 기준 해당 청원에 20여만 명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 본 단체는 이번 청원 배경으로 이동제한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스페인 정부가 가족 관련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약 4백만 이상의 가정에서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청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의무 때문에 기존에 하던 본인의 일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는 여성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전국에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지 2주 정도 되었을 시점인 3월 중순에 Yo No Renuncio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600여 명의 여성 중 응답자의 70% 가량이 집 안에서 재택근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80% 가량이 재택근무와 육아 또는 가사일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Yo No Renuncio 단체 설립자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로라 바에나(Laura Baena)는 한 언론사를 통해 “코로나19,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실시된 이동제한령으로 우리는 곧 각자의 집안에 갇히게 됐다”면서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과 일·가정

4) 작성 : 팍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양립에 있어 진일보하려던 와중에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청원에서는 자택근무 보장 법제화,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불가피하게 부모 또는 양육자 모두가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자 고용 비용 환급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 지난 4월,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제한령 기간 중 사람들이 육아, 일, 집안일이라는 일상을 어떻게 유지해나가고 있는지를 유머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시트콤 “Diarios de la cuarentena (Quarantine Diaries, 역: 격리생활 다이어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15명의 스페인 유명 배우들이 실제 본인 집에서 카메라로 스스로 촬영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작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육아일 분담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 온라인 강의를 챙기고 매일 해결할 집안일 등을 해내는 등 스트레스가 쌓이는 하루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실질적인 일상을 담아내 화제가 된 바 있다.
- 스페인 정부는 지난 6월 21일, 3달여간 지속된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발표했으나,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제한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이번 청원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볼 만 하다.

• 참고문헌 •

Change.org(2020), “Exigimos medidas urgentes para conciliar y no renunciar #EstoNoEsConciliar,” [https://www.change.org/p/pedro-s%C3%A1nchez-exigimos-medidas-urgentes-para-conciliar-y-no-renunciar-durante-esta-crisis-estonoconciiliar?source\\_location=discover\\_feed](https://www.change.org/p/pedro-s%C3%A1nchez-exigimos-medidas-urgentes-para-conciliar-y-no-renunciar-durante-esta-crisis-estonoconciiliar?source_location=discover_feed) (접속일: 2020.07.09.)

The Guardian(2020.05.29.), “‘We are losers in this crisis’: research finds lockdowns reinforcing gender inequality,”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may/29/we-are-losers-in-this-crisis-research-finds-lockdowns-reinforcing-gender-inequality> (접속일: 2020.07.09.)

Reuters(2020.04.10.), “‘Quarantine Diaries’ sitcom makes fun of Spanish women’s coronavirus struggle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spain-sitcom-trfn/quarantine-diaries-sitcom-makes-fun-of-spanish-womens-coronavirus-struggles-idUSKCN21R33P> (접속일: 2020.07.09.)

University of Valencia(2020.03.04.), “Las mujeres con menores que teletrabajan soportan la mayor parte del estrés del confinamiento,” <https://www.uv.es/uvweb/socials/es/novedades/mujeres-menores-teletrabajan-soportan-mayor-parte-del-estres-del-confinamiento-1285923210882/Novetat.html?id=1286127953796> (접속일: 2020.07.09.)

## 이탈리아 보건부, 경구용 임신중절약 관련 규정 개정으로 복용허용 기간 연장 및 입원 불필요 명시<sup>5)</sup>

- 2020년 8월 초, 이탈리아 보건부 로베르토 스페란자(Roberto Speranza) 장관은 경구

5) 작성: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용 임신중절약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대확산으로 외출 및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경구용 임신중절약 제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보다 커지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대거 투입되면서 병원들이 임신중절 시술을 연기하거나 아예 중지했기 때문이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복용허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가톨릭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1978년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2009년에는 법적으로 임신 7주까지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을 허용했었다. 이번에 임신 9주까지로 그 복용 허용 기간을 다소 연장한 것이다. 실제로는 여성들이 임신 7주가 되기 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꼭 입원해서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처방 및 복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이탈리아 제도상으로는 임신 7주 이내에 병원에 3일간 입원해서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했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이탈리아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약을 복용하여 임신중절을 한 경우는 18%정도에 그쳤다. 당일 시술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 20개 지역 중 5개 지역 정도에서만 외래환자 접수 및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단체 및 여성의 낙태 선택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기존 입원 절차를 통한 임신중절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낙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이 임신중절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는 약 10명중 7명 정도의 이탈리아 내 산부인과 의사가 가톨릭 종교상의 신념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술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앞으로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외래환자로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약 30분 정도 병원에서 전반적인 상태를 검사받게 된다. 그리고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신중절약을 받아 귀가할 수 있게 된다. 이탈리아 보건부 측은 약 10여년간의 경구용 임신중절약 복용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입원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복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 인권관련 국제 비정부기구인 Human Rights Watch는 지난 5월부터 7월, 이탈리아 내 외과의사, 학계 전문가, 여성인권 운동가 등 17명, 그리고 임신중절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했던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탈리아 보건부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Human Rights Watch 측은 법적으로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임신중절을 거부하고, 여성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내에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하고 심지어는 이웃국가로 원정 시술을 가야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 이번 경구용 임신중절약 지침 개정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물론 적지 않다. 한 보수단체는

여성의 낙태권 반대를 주장하는 온라인 청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런 이슈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반발이 거센 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된 제도가 이행되면서, 앞으로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지켜볼만 하다.

• 참고문헌 •

- AP(2020.08.08.), "Italy approves outpatient use for abortion pill", <https://apnews.com/60df27cd985e778cd25a16926546012d> (접속일: 2020.08.22.)
- Independent (2020.08.14.), "Italy approving outpatient use for the abortion pill is finally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women's rights", <https://www.independent.co.uk/voices/italy-abortion-pill-women-rights-far-right-opposition-church-a9669506.html> (접속일: 2020.08.22.)
- Human Rights Watch(2020.07.30.), "Italy: Covid-19 Exacerbates Obstacles to Legal Abortion", <https://www.hrw.org/news/2020/07/30/italy-covid-19-exacerbates-obstacles-legal-abortion> (접속일: 2020.08.22.)



## [여성가족부]

### 중고생 10명 중 1명,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 경험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성적 위험을 심층 파악하기 위한 랜덤채팅업 내 대화분석,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인터넷을 통한 성적 유인 경험 조사 등이 새롭게 포함된 「2019 성매매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함
  - 전국 중고생(6,423명)의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 비율은 11.1%, 만남 유인 피해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음
  - 성인남녀(2,300명)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율은 88.5%로 2016년 83.9% 대비 4.6%p 증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15.]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7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76)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확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진입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중언어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 완화방안 강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25.]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9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9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 중 여성임원이 있는 기업 66.7%로 전년 대비 6.8%p 증가

- 여성가족부는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전체(2,148개)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 구성에서의 여성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비율은 33.5%(전년 대비 1.4%p 증가),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은 1,395명으로 전년 대비 196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5.1%)으로 나타남
  - 남성 근로자는 40명당 1명이, 여성 근로자 293명당 1명이 임원이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29.]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4)

### 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

- 여성가족부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6.30.]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5)

###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돌봄체계,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 조성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관련 조사결과, 학교와 유치원 등 온라인 개학에 따른 돌봄 공백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안전한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나타나는 취약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늘어난 가사와 돌봄을 주로 여성이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09.]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8)

### 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① 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③ 청년창업지원사업, ④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19)

###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에 대한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함.
    - 현재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진 외출 자제나 이동 제한 조치들로 인해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위협에 처해 있음이 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상담 증가 추이는 없지만 피해 및 상담신고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 요구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2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25)

###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

-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24](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24)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긴급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장 등 공공기관 내 발생한 사건 관련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긴급회의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3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30)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는 7월 28일(화)과 29일(수)에 서울시의 예방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24.]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4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43)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역대 최고치 달성

- 여성가족부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특히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힘.
  - 개별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비율 : 광역 84.6%, 기초 64.8%
  - 기초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 처음으로 40% 넘어서
  -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의 평균 : 광역('17)42.2% → ('19)44.9%, 기초('17)35.6% → ('19)40.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28.]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4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47)

###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17개 시도 여성정책국장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응, 성차별적 조직문화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3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5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50)

### 여성가족부, '성평등과 코로나19 위기' 주제로 온라인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최

- 여성가족부는 올해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성평등과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03.]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5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7152)

## 여성가족부,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여성가족부는 '19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효과적인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1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59)

##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대상의 여성 연령기준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②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③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④ 학군 사관 후보생(ROTC) 선발 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12.]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2)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수령 가능

- 여성가족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12.]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63)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법령과 사업 등 총 29,395건을 대상으로 8,088건의 개선계획 수립
  - 법령 및 주요정책 총 3,373건 개선, 개선 이행률 전년 대비 12.1%p 상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 개선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7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75)

### 양성평등주간 9월 첫주로 변경

- 여성가족부는 1898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19.11.26), 올해부터 양성평등주간을 종전 7월에서 9월로 변경되었다고 밝힘
  -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20.5.19. 개정, 20.11.20. 시행)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0)

###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 전년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원 편성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예산(1조 1,191억 원) 대비 5.3%(598억 원) 증가한 1조 1,789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7)

###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국제회의 첫 출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이틀간 ‘성평등과 코로나19 위기’를 주제로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개최
  - 이번 포럼은 올해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성평등과 여성·평화·안보 관련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앞으로 정례화하여 추진할 계획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8)

### 공무원·공공기관·군·경찰 등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5개년(18~22) 계획(17.11월 수립)의

2020년 상반기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총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2020년도 목표 조기 달성
-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기관 최초 여성 기관장 임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8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과 홍보물의 성차별 요소 점검**

- 고용노동부는 ‘제2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고용노동부 홍보물의 성차별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6.3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25](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25)

**고용노동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를 개최해 성희롱, 성차별 없애기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공유 등 조직 내 성평등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 마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1.]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29](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29)

**일·생활 균형 위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 1,492개소 (50.1%)에 도입**

- 고용노동부는 2020년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개소(50.1%)라고 설명하며,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2.]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33](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133)

##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위해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 연말까지 연장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워라벨 일자리장려금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6.]

###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139](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139)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07.]

###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150](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150)

##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예술인특고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단계적 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경력 단절 방지 위한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 제고 등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20.]

###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195](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195)

##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1,081명) 대비 34.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2년) 등 제도 개선 노력이 남성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 증가 등 제도 활성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밝힘.
  -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7,784명,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8.13.]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274](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274)

**위라밸일자리장려금, 코로나19대응 긴급자녀돌봄에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이 발표되면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위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8.31.]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324](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324)

**[보건복지부]**

**학대 위기아동 발굴 및 재학대 발견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과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6.24.]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5124](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5124)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정책운영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2020년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진행
  - 코로나19가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코로나19로 청년층이 결혼·임신을 미루고 저출산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청년에 대한 고용 충격, 돌봄의 어려움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끊임없는 경쟁에 몰린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 강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7.09.]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533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5338)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실시하고,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가기로 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7.20.]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547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5478)

“좋은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2차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한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돌봄의 위기’와 혁신적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7.23.]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555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5556)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대책 강화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힘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5.]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53](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53)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함
  -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 체계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6.]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6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66)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확정·발표
  -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920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9208)

[법무부]

최근 범죄인인도 불허결정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조치

- 법무부는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이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내린 ‘인도불허’ 결정에 대하여, 아동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이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의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하였다고 밝힘. [법무부 보도자료, 2020.07.09.]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I3NjA2JTJGYXJ0Y2xWaWw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12cmZzRW5kZGVtdHllM0QIMjZpc1ZpZXdlNaW5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12c3JjaFdyZCUzRCUyNg%3D%3D>

[교육부]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논의

- 교육부 등은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개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체계 마련과 시설·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에 총력
  -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아동보호 책무성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2020.07.29.]

• 참고문헌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37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s=moe&m=020402&opType=N>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함

-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 체계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8.26.]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6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166)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07.]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44>

### 국가인권위원회, 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과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적 책무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15.]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73>

###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가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동의를 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및 관련 피진정인들에게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08.]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ize=10&boardtypeid=24&boardid=760564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모색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일·생활균형분과위원회 시안) 주요내용 >

	현행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시안)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	▶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을 하는 취업자 전체로 확대
급여체계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50% 지원 ▶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	▶ 6개월까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계단식 방식으로 재설계 ▶ 소득 기준으로 급여 책정
사용방식	▶ 육아휴직기간 총 1년 중 1회 분할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재원	▶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계정 (일반회계 일부 전입)	▶ 실업급여계정과 분리 별도 회계 구성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일부 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07.17.]

####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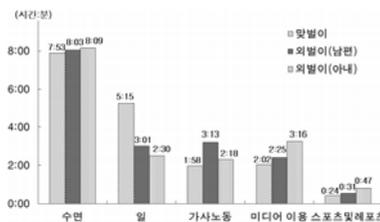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09>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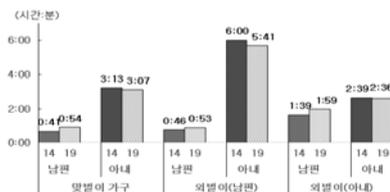
###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은 성인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등 주요 생활활동 시간을 비교 수록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함.
  - 가사노동 시간은 맞벌이/외벌이 가구 모두 5년 전보다 남편은 증가, 아내는 감소했으나, 아내 외벌이 가구의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3분 감소하는데 그침

< 맞벌이 및 외벌이 가구의 주요 행동 시간사용 >



< 가사노동시간 >



[통계청 보도자료, 2020.07.30.]

####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4161&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4161&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젠더리뷰」는 국내외 여성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기획 및 쟁점도출과 새로운 연구주제 및 정책개발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로서 연 4회(봄, 가을, 겨울) 발간하고 있습니다. 젠더리뷰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련 전문가나 일반대중과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원고를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여성·가족정책과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젠더리뷰가 더욱 알찬 계간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원고 내용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기획특집),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진단(이슈브리프), 국외 정보(국제리뷰), 정책 현장에 대한 조명(정책현장탐방) 등 부문별 원고

### 투고 요령 및 발간 예정일

원고지분량은 A4용지 7매(11pt, 줄간격 160, 좌우스페이스 30) 내외로 하되 10매를 초과할 수 없음(상시 투고 가능).

- 기획특집 원고 : 10매 내외(원고료 편당 30만 원)
- 이슈브리프, 국제리뷰 원고 : 7매 내외(원고료 편당 20만 원)

계간지 발간일이 3월, 6월, 9월, 12월 말임을 감안하여 발간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해당 월에 게재될 수 있음.

### 투고 관련 사항

- 기고자의 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음.
- 기고된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함.
- 게재되는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원고 제출 시 반드시 원고작성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원고 작성 시 참고문헌 등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 젠더리뷰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음.

### 원고 제출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발간 담당
- 전 화 : (02) 3156-7288
- E-mail : journal@kwidimail.re.kr

# 학술지 「여성연구」 2020년 제4호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여성정책관련 기초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의 여성문제 및 현안해결에 기여할 연구 동향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20년 제4호(통권 107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01 게재 논문 공모 내용

- 여성·가족문제 및 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함.)

## 02 여성연구 투고 요령

- 「여성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관리 시스템(<http://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 논문의 분량은 인쇄쪽수 20쪽 이내(요약, 참고문헌 포함)로 하되, 최대 B5 30쪽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상시안내정보 중 '학술지 원고작성요령' 참조([www.kwdi.re.kr](http://www.kwdi.re.kr)), 또는 위의 「여성연구」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논문유사도 종합검사결과서 제출(유사도 10% 미만을 '접수' 기준으로 함. 10%이상인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

## 03 투고 자격

- 여성·가족문제 및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 04 접수 마감일

- 2020년 10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발간 예정)

## 05 논문 관련 문의

- 전 화 : (02) 3156-7288
- E-mail : [journal@kwdimail.re.kr](mailto:journal@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자료, 기초연구자료, 학술지, 통계자료, 여성 관계자료 등 매년 30여 종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젠더리뷰', '여성연구'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여성정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각급 도서관 그리고 여성문제 연구자 등이 우리원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료구독회원으로 등록하시어 우리원 자료를 계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01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기관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 제공 단, 대외배포를 제한한 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제외(연/150,000원)
- 개인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연/100,000원)

## 02 회원 특전 및 유효기간

- 회원이 되시면 우리원의 여성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음.
- 회원에게는 우리원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회원가입 시 꼭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람).
- 회원에게는 우리원 자료 구입 시 우송료를 면제.

## 03 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지리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 회비납부  
우리은행 : 019-219842-01-006(예금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로번호 : 694403(MICR)

## 04 문의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담당
- 전 화 : (02) 3156-7283
- E-mail : kdata@kwidimail.re.kr

\*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판매' 서비스 안내

### ① 자료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의 저변 확대와 사회 일반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판매 대상 자료

- 본원에서 발간·제작한 연구보고서 자료(용역과제 제외)

### ③ 판매 방법

- 전화 주문 판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TEL. (02) 3156-7283
- E-mail 주문 판매 : [kdata@kwidimail.re.kr](mailto:kdata@kwidimail.re.kr)
- 자료 구독 회원가입 및 주문 판매 : 본원 홈페이지 참조([www.kwidi.re.kr](http://www.kwidi.re.kr))

### ④ 판매 대금 납부

- 온라인 입금(우리은행 019-219842-01-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